

# 한국사회과학연구

제38권 1호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목차

- 1 사회복지에서의 인권에 관한 일 고찰  
김헌진
- 19 민사소송법상의 소송능력에 관한 검토  
김상균
- 37 Twitter 상에서 교수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에 관한연구  
- 특히 GIS강좌를 중심으로 -  
김윤기
- 57 사례관리업무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인식에 관한 연구  
나동석
- 69 예술대학생 사회의식에 관한 연구  
구철희
- 89 사회복지실천에서 동기화면접의 적용과 함의  
장수미
- 121 지능형 에이전트 운영자의 형사책임  
이주희
- 137 국공립연구기관의 정부 R&D 투자성과 분석  
하민철
- 157 필지의 유형 및 특성에 관한 연구  
김영학



한국사회과학연구  
제38권 1호  
2016년 8월호

## 사회복지에서의 인권에 관한 일 고찰\*

청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 현 진

### 국 문 요 약

사회복지에는 인간 및 사회 본질의 많은 성격들이 내포되어 있다. 특히 인권은 인본주의적 성격과 연계하여 사회복지의 중요한 요인이 됨에도 불구하고, 인권과 사회복지와의 관계성은 제한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역사적 사건들을 통하여 인권은 발전되고 진화되어 왔으며, 궁극적으로 사회적 시민권의 이념에 부합되는 사회권의 발전을 도모하였다. 인간존엄이라는 인권의 궁극적 가치는 사회권의 가치와 더불어 유엔 헌장 및 세계인권선언에 표출되었으며, 우리나라의 헌법과 사회복지 관련 법률에도 투영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결정 및 이행과정에서 인권의 실제적인 실천이 인권의 가치를 보존할 수 있음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주제어: 사회복지, 인권, 시민권, 사회권

---

\* 이 논문은 2014-2016 학년도에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가 지원하는 학술연구조성비(특별연구과제-기본과제)에 의해 연구되었음.

# I. 서론

사회복지의 본질적 의미에는 인간 및 사회 체계 내부의 많은 성격들이 혼재되어 있다. 특히 사회복지의 큰 틀인 정책과 실천의 영역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에는 가치지향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가치들이 근본을 이루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가치들이 사회체계에 접목되었을 때 비로소 사회복지의 합리적인 수행이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인권은 인본주의적 성격과 연계하여 사회복지의 중요한 본질적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인권과 사회복지와의 관계성 상에서 깊이 있는 고찰은 제한적으로 수행되어 왔다.

사실 사회복지 연구에서 인권은 본질적 가치체계의 관점에서 고찰해 보려고 하는 연구의 대상이 아니었다. 주로 미시적 연구 대상을 위한 이론적 탐색의 수단으로 한정되어 왔다. 예를 들어 북한이탈자들의 인권 상황(홍규덕, 2002; 이화자, 2011), 사회복지사들이 경험하는 인권에 대한 문제나 인식(김현진, 2010), 또는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인권의식(김상미·남진열, 2014) 등 특정 연구대상의 상황적 탐색이나 경험을 탐색하는 수준에 머무는 경향이 있었다. 왜 인권이 사회복지의 중추적 가치가 되어야 하는지, 인권이라는 추상적 체계가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어느 수준의 가치 부여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인권이라는 용어의 개념적 수준은 상당히 광범위하며 때로는 추상적이기까지 하다. 하지만 이것이 사회복지학을 통해 전파하는 이념적 무게는 웅장하기만 하다. 그 웅장함은 인권의 가치가 사회복지와 접목하였을 때 인도주의적 가치로 거듭나며 사회복지의 가치로 승화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논리를 체계적으로 논의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학)적 차원에서 인권을 탐색해 보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고찰은 향후 인권이 사회복지의 실천 및 사회정책 차원에 적용되는 학문적 가치를 논의해 보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사회복지의 가치 탐색의 측면에서 인권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 인권을 이론적 측면에서 논의해 보고, 둘째, 우리나라에서 인권이 어떠한 법적 형태로 적용되고 있는지를 관찰해 보겠다.

## II. 이론적 고찰

### 1. 인권의 개념

인권(人權)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의미한다(이혜원, 2012:231). 우리나라의 인권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를 규정하는 법률인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인권을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고 정의 내리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법, 법제처). 이와 같이 인권의 사전적 의미는 명료해 보이지만 그 용어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결코 쉽지 않은 역사적 사건들을 통하여 부여되었다. 특히 18세기 후반 미국과 프랑스 사회를 흔든 계몽주의 사상은 개인주의에 입각한 인간 주체의 인식이라는 가치를 인류에게 이식시켰다. 중세 이전의 봉건적 자연법사상이 신(神)을 기반으로 기득권 세력의 對 국민 통치의 정당성을 부여하였다면, 계몽주의에 입각한 자연법사상은 이성(理性)에 기반을 둔 사회질서 체제를 옹호하면서 봉건적 공동체의 구속에서 벗어나 독자적이고 자유로운 이성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탄생시켰다(차선자, 2016: 37;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46847>).

이와 같이 시민계급에 토대를 둔 자연법사상은 절대세력의 권력이나 국가의 권력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부당한 것으로 여기는 천부인권(天賦人權)의 가치를 존중하게 되고, 이것은 1779년 버지니아 권리장전과 미국의 독립선언, 그리고 1898년 프랑스 혁명을 통하여 구체화된다. 특히 1789년 프랑스 혁명 당시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제1조에는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며 생존한다. 사회적 차별은 공동이익에 기초한 경우에 한해 행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6조에는 “법률은 보호하든가 처벌하든가 간에 만인에 대해서 평등해야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인간존엄의 의미를 구체화한다. 즉 일련의 역사적 사건을 통하여 개인의 권리에 근간한 정치공동체와 ‘인간의 권리(rights of man)’라는 개념을 명확히 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황준식, 2011:252-253; 차선자, 2016:37).

## 2. 사회복지와 인권

전술한 바와 같이 18세기에 보수 기득세력에 대한 투쟁을 통하여 쟁취한 시민세력의 성과는 자유권의 획득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수준에 머무르는 제약된 인권이었다(이혜원, 2012: 231). 하지만 이후 사회권의 등장과 함께 인권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한다. 즉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육체적이며 정신적인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권과 함께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주어진 사회적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 야함을 인식하기 시작한다. 사회적 권리의 범위는 건강권, 교육권, 주거권, 노동권 등 인간의 생존과 결부된 삶의 영역으로 확대됨으로써, 생존권으로의 발전을 도모하게 된다. 따라서 인간의 권리는 자유권과 더불어 사회권이 보장될 때 완성된다는 인권의 정의가 성립된 것이다(문진영, 2013:90).

이와 같이 사회권의 발전과 관련하여 복지국가의 탄생을 결부 시킨 학자가 마샬(T. H. Marshall)이다. 그는 복지국가의 성립을 ‘시민권(citizenship)의 역사적 발전’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면서 인간 권리의 발전과 복지국가의 발전은 상호연계 된다고 주장한다. 즉 18세기에는 사유재산권과 사회 구성원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공민권(civil rights)이 획득되었다면, 19세기에는 시민이 정치제도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정치권(political rights)의 쟁취가 가능 하였고, 20세기에는 인간의 사회적 욕구인 교육과 보건 그리고 소득을 보장 하는 사회권(social rights)이 확립됨으로써 사회적 시민권이 완성되었다는 것이다(문진영, 2013:100). 더 나아가 마샬은 사회적 시민권의 개념을 자본주의 체제에서 계급 간 불평등이 존재하며 이를 완화하기 위한 조건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국가의 시민이 주권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시민권은 모든 시민에게 부여되는 보편적 권리라는 것이다. 그리고 마샬은 사회복지 급여와 관련해서도 시민권과 연관지어 지적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조건을 동반하는 복지 급여의 선정은 시민권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즉 사회복지 급여의 선정과정에서도 시민의 지위에 부여되는 무조건적(unconditional) 권리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안숙영, 2011:13-14).

## 3. 인권의 성격

앞서 살펴보았듯이 인권은 수 세기를 거치면서 자유권과 더불어 사회권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이것이 우리사회에서 보장될 때 인권이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시민적이고 정치적 권리의 쟁취로서 자유권으로의 발달을 인권의 제1의 물결이라고 규정하

고, 사회권으로의 발달을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획득으로 정의 내리면서 제2의 물결로 규정짓기도 한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연대적 권리(solidarity)로의 진화를 언급하며 이것을 인권의 제3의 물결이라는 세대론적 관점으로 인권의 발전단계를 설명하기도 한다(평택대학교 편, 2008:32-37; 문진영, 2013:107).

인권이 자연법적 사상을 근본적으로 답습하고 있기 때문에 천부인권의 기반에서 보편성은 가장 중요한 인권의 성격이다. 이와 함께 단지 인간이 타고난 고유 권리로서의 인권이 아니라 인간 존엄은 영원히 유지된다는 항구성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인권을 논함에 있어서 불가침성과 불가분성은 매우 중요한 인권의 성격이다. 즉 외부의 어떠한 형태의 세력으로부터 인권은 보호되어야 함을 나타내는 것인데, 외부의 권력으로부터 침해될 당하지 않는다는 불가침성과 특정 개별인의 인권을 선별적으로 우선시 하면 안 된다는 불가분성(indivisibility)은 인권의 보편성과 항구성을 지지해 주는 인권의 매우 중요한 성격인 것이다(국가인권위원회 역, 2008:16-17; 한민족대백과사전 인터넷판).

인권의 개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규정지었을 때, 전술한 바와 같이 시민권의 논리로서 성격의 접근이 가능하다. 자유권의 성격을 공유하고 있는 공민권 및 정치권은 본질적으로 절차적인(procedural) 권리에 가깝다는 것이다. 즉 보편적인 인권으로서 제도화될 수 있는 권리들이다. 이에 반하여 사회권의 성격은 실질적(substantive)이라는 특징이 있다. 다시 말하면 사회권은 (물질적) 자원을 확보 및 동원하고 이것을 사회에 재분배하는 것을 핵심적 요소로 담고 있기 때문에 사회권 그 자체로서 자생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회권은 법제화의 과정을 거쳐서 구체적으로 제도화되었을 때 본연의 가치가 실현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안숙영, 2011:14-15; 문진영, 2013: 109).

### Ⅲ. 인권의 법제화

본 장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인권이 법제로 구체화 되었을 때 그 본연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는 속성을 받아들여 유엔의 관련 선언이나 규약과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관련 법제를 분석함으로써 인권의 가치가 어떠한 형태로 녹아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1. 유엔헌장

먼저 유엔헌장의 전문에는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 및 가치, 남녀 및 대소 각국의 평등권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며, 정의와 조약 및 기타 국제법의 연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에 대한 존중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조건을 확립하며, 더 많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촉진할 것을 결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유엔헌장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을 규정하는 조항을 통해서 “사람들의 평등권 및 자결의 원칙의 존중에 기초하여 국가 간의 우호관계를 발전시키며, 세계평화를 강화하기 위한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유엔헌장 제1장1조1항)”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차별에 관한 원칙도 표명하고 있는데,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또는 인도적 성격의 국제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인종·성별·언어 또는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고 장려함에 있어 국제적 협력을 달성한다(유엔헌장 제1장1조3항)”고 규정하고 있다(유엔헌장, 외교부 인터넷 사이트 [http://www.mofa.go.kr/trade/humanrights/foreignrights/index.jsp?menu=m\\_30\\_70\\_10](http://www.mofa.go.kr/trade/humanrights/foreignrights/index.jsp?menu=m_30_70_10)).

## 2. 세계인권선언

세계인권선언은 30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광의의 차원에서 인권의 개념을 포괄하고 있다. 전문에는 “인권 고유의 존엄성 및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이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어 “사람들이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반란에 호소하도록 강요받지 않으려면, 법의 지배에 의한 인권보호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제1조에서 제2조에는 인권에 대한 보편적 규정을 직시하면서 존엄성과 권리의 평등 그리고 천부적 자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2조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더 나아가 개인이 속한 국가 또는 영토가 독립국, 신탁통치지역, 비자치 지역이거나 또는 주권에 대한 여타의 제약을 받느냐에 관계없이, 그 국가 또는 영토의 정치적, 법적 또는 국제적 지위에 근거하여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세계인권선언, 외교부 인터넷 사이트 [http://www.mofa.go.kr/trade/humanrights/foreignrights/index.jsp?menu=m\\_30\\_70\\_10](http://www.mofa.go.kr/trade/humanrights/foreignrights/index.jsp?menu=m_30_70_10))



10; 유네스코 인터넷 사이트 <http://www.unesco.or.kr/hrtreaty/>).

제3조에서 제21조에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생명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 공정한 재판, 언론의 자유, 이전의 자유, 사생활·명예·신용에 대한 권리, 노예·고문·자의적인 체포로 부터의 자유, 국적권, 성인 남녀의 혼인권, 재산소유권, 사상·양심·종교·집회·결사의 권리, 참정권 등을 상기 조항을 통해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들의 내용은 공민권과 참정권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제22조에서 제27조에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 내용으로 사회보장의 수혜, 근로의 권리, 직업선택의 권리, 정당한 보수, 노조가입, 휴식과 여가, 모자보호, 교육, 자신의 존엄과 자유, 개인적인 발전에 불가결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등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제22조에는“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그리고 각국의 조직과 자원에 따라 자신의 존엄성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하여 불가결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또한 제23조에는 “모든 사람은 일, 직업의 자유로운 선택, 정당하고 유리한 노동 조건, 그리고 실업에 대한 보호의 권리를 가지며, 모든 사람은 아무런 차별 없이 동일한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노동을 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과 가족에게 인간의 존엄에 부합하는 생존을 보장하며, 필요한 경우에 다른 사회보장방법으로 보충되는 정당하고 유리한 보수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제26조를 통하여 보편적 교육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는 것이다. “교육은 최소한 초등 및 기초단계에서는 무상이어야 하며, 초등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교육을 통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추구하고자 한다(세계인권선언, 외교부 인터넷 사이트 [http://www.mofa.go.kr/trade/humanrights/foreignrights/index.jsp?menu=m\\_30\\_70\\_10](http://www.mofa.go.kr/trade/humanrights/foreignrights/index.jsp?menu=m_30_70_10);

유네스코 인터넷 사이트 <http://www.unesco.or.kr/hrtreaty/>).

이처럼 인권의 본질적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은 세계인권선언을 통해 구체적인 언어로 기술되어 있다. 이해원(2012)은 세계인권선언은 여덟 가지의 가치로 요약되어진다고 주장한다(p.234). 즉 생명, 자유, 평등, 정의, 연대책임, 사회적 책임, 점진적 변화, 평화, 비폭력, 인류와 자연의 관계로 가치부여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사항은 세계인권선언이 인권의 내용을 자유권과 사회권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마샬이 주장하는 사회적 시민권의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 3. 대한민국 헌법과 인권

우리나라 법률을 통하여 인권의 가치를 규정하는 대표적인 법률은 대한민국 헌법이다. 특히 헌법 제10조의 조항은 인권의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의 가치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법적 조항이다. 헌법 제 10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다(대한민국 헌법, 법제처). 상기 조항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논하고 있으며, 이러한 것이 헌법의 최고원리이며 헌법질서의 구조적 원리인 동시에, 기본권 차원의 이념적 출발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이념은 어떠한 권리이든 관련 기본권의 간접적 근거가 될 수 있다는 포괄적이며 본질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김주경, 2011: 139를 김현진, 2014에서 재인용).

또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에 기반을 둔다”와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법적 규정은 인권의 본질적 정신뿐만 아니라 보편적 사회복지의 가치를 제시함으로써 헌법 제10조와 함께 사회복지의 이념적 원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일반적으로 일컬어진다(남기민·홍성로, 2016). 그 중 의미 있는 법률조항은 “인간다운 생활”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4조1항이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헌법상의 명시는 인간다운 생활이라는 개념적 범위가 인권의 정신적 가치와 더불어 물질적인 최저생활보장이라는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규정하는 기본권이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 헌법 제 34조2항의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는 사회복지에 대응하는 실천적 법적 근거를 규정할 수 있는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김현진, 2014).

아래 표에는 대한민국 헌법에 내재되어 있는 인권 관련 법적 규정 중 사회복지와 연계되는 사회권의 헌법 내 법적 조항을 정리한 것이다. 제10조와 제11조에 규정하고 있는 인권의 기본권 차원의 법적 내용과는 별개로 헌법 제31조부터 제36조 사이에는 사회권의 내용들이 집약되어 있다. 이처럼 교육, 보건·복지, 노동, 주거·환경 등 세계인권선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권의 세부내용들이 우리나라 헌법에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중추가 되는 사회복지 관련 법률들의 인권에 대한 법률 조항을 분석해 보겠다.

<표 1> 헌법 조항에 의한 사회권의 법제화 현황

영역	헌법 관련 조항	주요 관련 법률/제도
교육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학교급식법, 학교보건법, 평생교육법, 국민체육진흥법
노동	제32조 노동을 할 권리 제33조 노동3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직업안정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근로자 직업훈련촉진법, 근로복지기본법
보건 복지	제34조1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4조2항 사회보장, 복지증진의 의무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기타 사회보험법 등
	제34조3항 여성의 복지와 권익향상	모부자복지법, 여성발전기본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복지법, 남녀고용평등법
	제34조4항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	노인복지법, 고령자고용촉진법, 청소년기본법, 아동청소년보호법
	제34조5항 장애 등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보호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6조2항 건강하게 살 권리	보건의료기본법, 공중보건의료법, 지역보건법, 약사법, 식품위생법, 국민건강증진법
주거 환경	제35조1항 정부의 환경보전의무	공해방지법,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제35조2항 정부의 주거개발정책의무	임대주택법

<자료: 문진영(2013), 『인권과 사회복지』, p.109에서 인용함.>

#### 4. 사회복지 법률과 인권

표 1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표적인 법률은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이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체도의 정책적 방향을 규정한 법률이며,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제시하는 사회복지의 정책적 방향을 사회복지 실천과정에서 실제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법률이기 때문에 두 법률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지침을 제공하는 법제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상기 두 법률에 담긴 인권 관련 법률 조항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아동, 노인, 장애인 분야의 사회복지 법률인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

인복지법에 내포되어 있는 인권 관련 법률 조항을 살펴봄으로써 인권의 개념들이 우리나라 사회복지 법률에는 어떠한 형태로 규정되어 있는지 탐색해 보겠다.

<표 2> 사회복지 법률과 인권

법규	인권 법률 조항
<p><b>사회보장기본법</b></p>	<p>제2조(기본 이념)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참여·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p> <p>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p> <p>제9조(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이하 "사회보장수급권"이라 한다)를 가진다.</p>
<p><b>사회복지사업법</b></p>	<p>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에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의2(기본이념) ③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사회복지에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p> <p>제4조(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증진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차별을 금지하며 인권을 옹호할 책임을 진다.</p> <p>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에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이 충분히 존중되는 방식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와 관련된 인권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p> <p>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긴급한 인권침해 상황에 놓인 경우 신속히 대응할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p> <p>제5조(인권존중 및 최대 봉사의 원칙) 이 법에 따라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사회복지에 필요로 하는</p>

법규	인권 법률 조항
	<p>사람을 위하여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 없이 최대한으로 봉사하여야 한다.</p>
<p><b>아동복지법</b></p>	<p>제2조(기본 이념)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p> <p>④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p> <p>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p>
<p><b>노인복지법</b></p>	<p>없음</p>
<p><b>장애인복지법</b></p>	<p>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기본이념)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에 있다.</p> <p>제4조(장애인의 권리) ①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다.</p> <p>②장애인은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p> <p>③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p>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개별 법률을 참고하여 필자가 작성하였음.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C%82%AC%ED%9A%8C%EB%B3%B5%EC%A7%80%EC%82%AC%EC%97%85%EB%B2%95#AJAX>  
>

노인복지법을 제외한 대부분의 법률들은 개별 조항들을 통해 인권의 내용들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그 이유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고 인권을 규정하고 있듯이, 인권의 관련 조항들을 이에 적용하여 우리 헌법과 국제인권조약 등에 입각한 법률 내용이 완성되었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먼저 사회보장기본법에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복지급여를 받을 권리, 즉 수급권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는 사회보장기본법의 성격에 준하여 인권의 속성 중 국민의 생존권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인권의 관련 내용이 법률에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법률은 사회복지사업법이다. 이와 같은 이유는 이 법이 사회복지의 실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법률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사회복지서비스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인권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법적 조치로 이해될 수 있다. 제1조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기 법률의 기본이념을 기술하고 있는 제1조2항의 3에는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인권의 보장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또한 제4조에 인권에 대응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차별을 금지하며 인권을 옹호할 책임을 진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이 충분히 존중되는 방식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와 관련된 인권교육을 강화하여야 하며,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긴급한 인권침해 상황에 놓인 경우 신속히 대응할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한편 제5조에는 사회복지 종사자가 서비스 제공시 취해야 할 자세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 종사자는 ‘인권존중 및 최대봉사의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때에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 없이 최대로 봉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 아동복지법에는 차별과 아동의 권리 보장에 입각한 내용들이 주로 언급되고 있다. 제2조에는 “아동은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라고 동 법률의 기본이념을 밝히고 있으며, 제4조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차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아동의 권리보장과 관련하여서는 제2조에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와 제4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넷째, 장애인복지법은 비교적 다양한 방면의 인권문제를 규정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제1조를 통하여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통합에 대한 법률규정은 제3조에도 명시되어 있는데,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룬다”고 기술함으로써 장애인복지법을 통해 인권과 사회통합의 관계를 주장한다는 흥미로움을 발견할 수 있다. 한편 제4조에는 장애인에 대한 인간존엄의 가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활동에 대한 참여권,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참여권 등을 명시함으로써 참여권에 대한 규정을 강조하고 있다.

## IV. 결 론

인권은 복합적인 역사적 사건을 통하여 이념적 발전을 이룩하여 왔으며, 인권의 개념 또한 결코 단순하지 않은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과 인간다운 생활의 영위를 본질로 하는 가치에서 생존권과 같은 사회권의 가치를 더불어 부여 받으면서 인권의 중요성은 사회체계에서 명백해지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일련의 사회적 대응으로서 인권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체계를 상당부분 공유하고 있다.

유엔헌장이나 세계인권선언을 통해서 부여받은 인권의 가치는 대한민국 헌법과 사

회복지 관련 법률에도 대부분 반영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사안은 단순히 인권의 가치가 법률에 투영되었다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실제적인 법률 이행의 과정에서 인권의 가치가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권은 규범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인권의 실체가 정책결정과정 및 정책이행과정을 통해 실천적 투영이 가능할 때 인권의 가치는 존중받을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국가인권위원회 역, 2008, 『사회복지와 인권』, 엘리자베스 라이커트 저, 인간과 복지
- 김상미·남진열, 2014, “후기청소년의 생활양식과 인권의식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 효과”, 『청소년복지연구』, 16(4), 173-193
- 김주경, 2011, “헌법상 건강권의 개념 및 그 내용”, 『헌법판례연구』, 12, 137-180
- 김현진, 2014, “건강권에 관한 일 고찰”, 『한국사회과학연구』, 36(1), 19-29
- 김현진, 2010, “사회복지사의 인권에 대한 의식 차이 분석”, 『한국지역사회복지학』, 34, 2010, 109-132
- 남기민·홍성로, 2016,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 문진영, 2013, “인권과 사회복지: 쟁점 분석”, 『비판사회정책』, 39, 83-116
-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편, 2008, 『사회복지와 인권』, 양서원
- 안숙영, 2011, “사회적 인권으로서의 복지: 복지공간에 대한 새로운 상상”, 『법과 사회』, 40, 9-38
- 이화진, 2011, “탈북여성의 이성 관계를 통해본 인권침해 구조와 대응: 탈북 및 정착과정을 중심으로”, 『평화연구』, 19(2), 367-404
- 이혜원, 2012, 『사회복지 이야기』, 인간과복지 차선자, 2016, 『젠더와 인권법』, 전남대학교출판부
- 홍규덕, 2002, “탈북여성 인권보호의 국제정치학 의미와 안 모색”, 『아시아여성연구』, 41, 3-52
- 황준식, 2011, “국내적 인권과 국제적 인권?: 인권 개념의 이중성에 대한 소고”, 『한양법학』, 35, 249-279

### <인터넷 사이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C%82%AC%ED%9A%8C%EB%B3%B5%EC%A7%80%EC%82%AC%EC%97%85%EB%B2%95#AJAX>

세계인권선언,

외교부

인터넷

사이트

[http://www.mofa.go.kr/trade/humanrights/foreignrights/index.jsp?menu=m\\_30\\_70\\_10](http://www.mofa.go.kr/trade/humanrights/foreignrights/index.jsp?menu=m_30_70_10)

유네스코 인터넷 사이트 <http://www.unesco.or.kr/hrtreaty/>

유엔헌장, 외교부 인터넷 사이트  
[http://www.mofa.go.kr/trade/humanrights/foreignrights/index.jsp?menu=m\\_30\\_70\\_10](http://www.mofa.go.kr/trade/humanrights/foreignrights/index.jsp?menu=m_30_70_10)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46847>

# A Study on the Human Right in Social Welfare

Hunjin Kim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Cheongju University

Despite of the importance in the policy and practice of social welfare, the human right has not yet been properly embodied in the academic arena of social welfare in Korea, During last decades, the terms and recognition of human rights have been in progress in the world. The context of the human rights has been expanded and concreted more in consideration of the changes of social environments. In particular, as social citizenship adopted in civil society, the ideological conception of social rights has been approached to the field of social welfare. This has been obviously occurred in Korea as well. The expanded version of human rights has been adopted in constitution and welfare legislations in Korea. In order to increase the value of the human right in Korean social welfare, it is important for Korean governments to implement the nature of human rights adequately in policy process.

Key Words: social welfare, human rights, social citizenship, social rights

논문투고일 : 2016. 07. 19

심사개시일 :

게재확정일 :



한국사회과학연구  
제38권 1호  
2016년 8월호

## 민사소송법상의 소송능력에 관한 검토\*

청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교수

김 상 균(金相均)\*\*

### 국 문 요 약

2017년 2월 4일 시행되는 개정 민사소송법은 현행 민법의 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에 관한 규정을 수정 또는 신설하였다. 개정법에 따르면 피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정한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에 관해서만 예외적으로 소송능력이 긍정되는 반면,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소송능력이 긍정되지만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관해서는 예외적으로 소송능력이 부정된다. 또한 개정법은 민법에서 친족회가 폐지된 것을 고려하여, 대리권 있는 후견인이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소송탈퇴를 할 때는 후견감독인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후견감독인이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받도록 하였다. 그리고 소송상의 특별대리인을 구별하여 기존의 특별대리인은 제한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으로 수정하고, 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신설하였고, 각 특별대리인의 신청권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소송무능력자인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또한 제한능력자 및 의사무능력자 아니라도 일정한 정신적·신체적 제약 때문에 필요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당사자의 진술을 도와주기 위해 당사자와 함께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 진술보조인제도를 신설하였다. 이처럼 개정 민사소송법은 현행 민법의 제한능력자의 행위능력과 연계되는\* 소송능력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민사소송에 있어서도 제한능력자의 잔존능력을 최대한 존중하는 입법적 조치를 취하였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소송능력, 행위능력, 성년후견제도, 한정후견제도, 특별대리인, 진술보조인

\* 이 논문은 2014-2016학년도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가 지원한 학술연구조성비(특별연구과제)에 의해 연구되었음.

\*\* 청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교수, 법학박사.

# I. 서론

소송능력이란 당사자로서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하거나 소송행위를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능력을 말한다. 민사소송은 사법상의 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절차로서, 사법이 거래상 행위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소송법에서도 당연히 분쟁해결능력을 인정해야 할 것이므로 소송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민법에서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사람에 대해서 민사소송법도 이에 대응하여 소송무능력자로 하고 있다. 이처럼 소송능력은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능력인 민법상의 행위능력에 대응하는 것으로, 따라서 민법상 행위무능력자는 소송법상 소송무능력자로 평가되었다.\*

그런데 민법의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종전의 행위무능력제도인 금치산자·한정치산자제도를 대체하는 성년후견인제도와 한정후견인제도가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민사소송법상의 소송무능력제도에도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는바, 2016년 2월 3일 법률 제13952호로 공포되고 2017년 2월 4일 시행되는 개정 민사소송법은 종전의 행위무능력제도에 대한 규정들을 수정하여 민법상 제한능력자로서 새로이 규정된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의 소송능력에 관한 보다 상세한 규정을 두게 되었다.

이에 본 논문은 현행 민사소송법상의 소송능력에 관한 규정들이 현행 민법의 제한능력제도를 반영한 개정 민사소송법에서 어떻게 수정되었고 그 주요내용이 무엇인지를 비교·검토하고자 한다.

## II. 민사소송법 개정 전의 상황

### 1. 민법상의 제한능력자

민법은 종전에 미성년자·한정치산자·금치산자를 행위무능력자로 인정하였다. 이에 대해 현행 민법은 미성년자를 행위무능력자로 취급하는 것은 종전과 동일하지만, 행위능력을 일률적으로 제한하였던 금치산자·한정치산자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금치산제

---

\* 김홍규·강태원, 「민사소송법(제3판)」, 삼영사, 2014, 209~210면; 이시윤, 「신민사소송법(제6증보판)」, 박영사, 2012, 148면.

도에 대응하는 피성년후견인제도를, 한정치산제도에 대응하는 피한정후견인제도를 받아들이고, 피성년후견인은 예외적으로만 행위능력을 인정하고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을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현행 민사소송법에서 금치산자는 소송능력이 인정되지 않지만 피성년후견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행위능력이 인정되는 데 그 경우 소송능력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또 한 한정치산자는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이 부정되지만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피한정후견인에게 원칙적으로 소송능력을 인정해야 하는지 등에 관해서는 후술하는 것처럼 논란이 있었다. 또한 현행 민법은 피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제도에 대한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를 민법 부칙에 담았지만, 금치산·한정치산이라는 용어를 단순히 성년후견·한정후견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 2. 민법상의 경과조치

(가) 2013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 민법은 그 부칙\*\* 제2조와 제3조에서 성년후견인제도와 한정후견인제도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경과조치를 두었다.

첫째, 시행일 당시 이미 금치산이나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제2조 제1항).

둘째, 시행일 전의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는 다음의 경우에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제2조 제2항).

- i)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개시된 경우
- ii)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임의후견인이 선임된 경우
- iii) 개정 민법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된 경우

셋째, 개정 민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을 인용한 경우에는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른 5년의 기간에 한정하여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

(나) 그러나 이러한 경과조치에도 불구하고 현행 민사소송법 제55조의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이라는 용어를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으로 단순히 대체하는 것만으로 민사소송법의 소송능력에 관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었다. 전술한

\* 김준호, 「민법강의(제21판)」, 법문사, 2015, 82면.

\*\* 2011. 3. 7. 법률 제10249호에 의한 민법 부칙을 말한다. 이하 동일하다.

것처럼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에게 행위능력을 부정하였던 구 민법과 달리 현행 민법은 제한능력자의 잔존능력을 최대한 존중하고자 하는 성년후견제도를 받아들인 점에서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고려한 소송능력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다) 또한 성년후견인제도는 민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선고를 받은 사람은 개정 전 민법의 행위능력의 제한을 그대로 받게 되므로 이들에 대하여는 소송능력에 관한 현행 민사소송법 제55조가 수정 없이 적용되지만, 이러한 경과조치는 민법 시행 후 5년간 잠정적이며 그 뒤의 장래효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기간의 제한의 면에서도 민사소송법의 개정이 시급히 요구되었던 것이다.

### 3. 소송능력에 관한 학설의 견해

#### (1) 서

현행 민법에 따른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도 현행 민사소송법은 구 민법상의 행위무능력자제도에 따른 금치산자·한정치산자의 소송능력만을 규정하고 있다(현행 민소법 제55조). 또한 현행 민법은 상설기관인 친족회를 폐지하고 임의기관인 후견감독인제도를 신설하였는데, 현행 민사소송법은 일정한 소송행위에 대해 친족회의 특별수권을 요구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현행 민소법 제56조).

이러한 점에서 현행 민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이라는 용어를, 민법 부칙에 의해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이라는 용어로 대체하는 것으로 민사소송법상의 소송능력에 관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인지 등에 관해서 다양한 견해가 주장되었던 것이다.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의 소송능력에 관해 제시된 견해들은 다음과 같다.

#### (2) 피성년후견인의 소송능력

민법 부칙 제3조에 따라 금치산자를 대체하는 피성년후견인에게 행위능력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소송능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견해들이

---

\* 김경욱, “2015년 민사소송법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쟁점”, 「민사소송」 제19권 제2호,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15. 11, 14면.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제9판)」, 박영사, 2015, 159면.

제시되었다.

제1설은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로 정한 범위 내의 행위와 일용품의 구입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법정대리인의 대리에 의해야만 한다고 한다.\*

제2설은 피성년후견인의 이익보호와 절차의 안정을 고려하여 소송능력을 부정하여야 한다고 한다.\*\*

제3설 민법 부칙 제3조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55조 제1문의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는 경우 피성년후견인은 반드시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어 소송능력이 부정된다고 한다.\*\*\*

이러한 다양한 견해의 대립 속에서 피성년후견인에게 소송능력을 인정할 것인지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입법으로 설정해 둘 필요가 있었다.

### (3) 피한정후견인의 소송능력

현행 민법에 의하면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을 가진다. 다만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정할 수 있는데, 그 한도 내에서는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이 부정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현행 민사소송법 제55조는 민법상의 행위능력자를 소송능력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행 민법의 피한정후견인에게는 소송능력을 인정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민법 제13조 제1항)에 대해서도 피한정후견인에게 소송능력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견해가 대립하였다.

제1설은 피한정후견인에게 원칙적으로 소송능력을 인정하면서 위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행위능력이 제한된다는 이유로 그 범위 내에서 소송능력을 상실한다고 본다.\*\*\*\*

제2설은 피한정후견인은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자이고 소송능력은 행위능력보다 고도의 신중과 판단력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인지에 관계없이 피한정후견인에게는 소송능력을 부정해야 한다고 본다.\*\*\*\*\*

제3설은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에 관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으면 소송능력을

\* 이시윤, 전게서(제9판), 159면; 김상훈, “성년후견제도의 도입과 민사소송법상의 소송능력 등”, 「강원법학」 제41권, 270~271면.

\*\* 정동윤·유병현, 「민사소송법(제4판)」, 법문사, 2014, 189면; 정선주, “행위능력제도의 변화에 따른 소송능력의 재검토”, 「민사소송」 제18권 제1호, 2014, 65면.

\*\*\* 김홍엽, 「민사소송법(제5판)」, 박영사, 2014, 161면.

\*\*\*\* 이시윤, 전게서, 159면.

\*\*\*\*\* 정동윤·유병현, 전게서, 190면; 정선주, 전게논문, 72면.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제4절은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에 관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피한정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는 민법 제959조의4에 의해 따로 정해진다는 것 등을 이유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와 무관하게 피한정후견인에게 언제나 소송능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이와 같이 여러 견해가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에 대해서 피한정후견인에게 소송능력을 인정할 것인지에 관해서도 명확한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 (4) 소결

민법 부칙의 경과규정에 불구하고 “금치산자”과 “한정치산”을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으로 대체하는 것만으로는 민사소송법상의 소송능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점, 소송능력에 관한 현행 민사소송법 제55조는 민법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라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는 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소송능력의 인정 여부 및 그 범위에 관한 다양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었던 점에서, 현행 민사소송법의 소송능력에 관한 규정을 시급히 개정할 필요성이 있었다.

### Ⅲ. 개정 민사소송법의 내용

이하에서는 현행 민사소송법과 개정 민사소송법의 규정 및 관련되는 민법의 규정을 함께 기술하도록 한다. 상술한 것처럼 민법 부칙 제3조에 따라 현행 민사소송법 제55조의 “금치산”, “한정치산”이라는 용어를 “성년후견”으로 대체하여 해석해야 하지만, 이러한 용어의 대체만으로는 민사소송법상의 소송능력에 관한 문제가 해결될 수 없고 또 현행법과 개정법의 내용을 명확히 비교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하에서 기술하는 현행 민사소송법의 내용은 중전의 행위무능력자제도를 기준으로 한다.

#### 1. 미성년자의 소송능력

---

\* 김홍엽, 전제서, 162면.

\*\* 윤진수·현소혜, 「2013년 개정 민법 해설」, 2013년도 법무부 연구용역보고서, 67면.

현행 민사소송법	개정 민사소송법
제55조(미성년자·한정치산자·금치산자의 소송능력)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5조(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 ①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 미성년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2. (이하 생략)

### (1) 현행 민사소송법의 내용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하지 못하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한도에서 미성년자의 소송능력은 부정된다(현행 민소법 제55조 본문).

다만 미성년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송능력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현행 민소법 제55조 단서). 따라서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에 관한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민법 제8조) 및 미성년자가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것이 허락된 경우(상법 제7조)에는 실제법상 허락받은 한도에서 행위능력이 인정되므로 소송법에서도 소송능력을 인정한다. 또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면 성년으로 간주되므로 소송능력이 인정되며(민법 제826조의2), 미성년자의 노동계약에 기인한 임금의 청구는 미성년자 스스로 독립하여 할 수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65조·제66조) 소송능력이 인정된다.\*

### (2) 개정 민사소송법의 내용

현행 민법상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이 부정되므로(민법 제5조), 개정 민사소송법에서도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소송행위를 대리해야 하는 것(개정 민소법 제55조 제1항)은 현행 민사소송법과 마찬가지로이다. 또한 미성년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송능력이 인정되는 것(개정 민소법 제55조 제1항 제1호)도 동일하다. 다만 후술하는 것처럼 현행 민법은 친족회를 폐지하고 후견감독인제도(민법 제950조)를 신설하였는바, 따라서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상대의 입양무효의 소를 제

\* 김홍규·강태원, 전거서, 211~212면; 이시윤, 전거서, 160면; 대법원 1981. 8. 25. 선고 80다3149 판결.

기함에는 친족회가 아닌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다.\*

## 2. 피성년후견인의 소송능력

현행 민사소송법	개정 민사소송법
제55조(미성년자·한정치산자·금치산자의 소송능력)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5조(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 ①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 (이하 생략) 2. 피성년후견인이 「민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 (1) 민법상의 피성년후견제도

① 의의- 피성년후견인이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를 말한다(민법 제9조 제1항). 그러므로 의사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도 심판을 받지 않는 한 피성년후견인이 아니다.\*\*

② 행위능력- 피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중국적·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0조 제1항).\*\*\* 즉, 피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행위무능력자이며, 설사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있었다라도 피성년후견인이 동의한 대로 법률행위를 할 것이라는 기대가 없는 점에서 역시 취소할 수 있다.\*\*\*\*

다만 i) 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동조 제2항), 또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동조 제3항). 또한 ii)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동

\* 이시윤, 전계서, 160면.

\*\* 양형우, 「민법의 세계(제8판)」, 피엔씨미디어, 2016, 77면. 한편 의사무능력자가 성년후견심판을 받지 않은 경우에 그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후술하는 것처럼 개정 민사소송법은 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제도(개정 민소법 제62조의2)를 두고 있다.

\*\*\* 김형석,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의 소송능력”, 「가족법연구」 제27권 제1호, 62면.

\*\*\*\* 김준호, 전계서, 93면.

조 제4항). 이러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거래는 많은 고려를 요구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이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한에서는 피성년후견인에게 불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성년후견인의 거래의 자유를 보장하지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이 위 i)과 ii)의 행위에 있어서는 피성년후견인은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으며 그 범위 내에서 성년후견인의 대리권과 취소권은 소멸한다.\*\* 따라서 이 한도에서 피성년후견인에게 예외적으로 행위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③ 법정대리인- 가정법원은 후견개시의 심판을 한 때 직권으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민법 제929조·제936조),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된다(제938조 제1항).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명을 둘 수 있으며(민법 제930조 제2항), 법인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다(동조 제3항).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지만(제10조 제1항·제140조), 피성년후견인이 ‘가정법원이 정한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 또는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제10조 제2항·제4항).\*\*\*

## (2) 현행 민사소송법의 내용

현행 민사소송법은 원칙적으로 미성년자·한정치산자·금치산자의 소송능력을 부정하고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예외적으로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송능력을 인정하고 있다(현행 민소법 제55조). 그 결과 금치산자의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 완전한 소송무능력자로 취급하고 있으며,\*\*\*\* 설혹 금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소송행위를 하더라도 그 소송행위는 무효인 것이다. 따라서 금치산자는 항상 법정대리인을 통하여서만 소송행위를 하여야 한다.\*\*\*\*\*

## (3) 개정 민사소송법의 내용

### 가. 서

현행 민법이 성년후견인 및 한정후견인제도를 도입하고 그 행위능력에 변화가 있는

\* 양형우, 전게서, 78면.

\*\* 이렇게 하여 현행 민법은 피성년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그의 잔존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성년후견제도가 탄력적 운영을 도모한다고 할 수 있다.; 윤진수·현소혜, 전게서, 60면.

\*\*\* 양형우, 전게서, 78면.

\*\*\*\* 김경욱, 전계논문, 17면.

\*\*\*\*\* 김상원·박우동·이시윤·이재성, 「주석 신민사소송법(I)」 제1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03, 326면.

것에 대응하여, 개정 민사소송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에 관하여 규정하고, 후술에서 보듯이 동조 제2항에서는 피한정후견인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조 제1항 단서에서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소송행위를 달리 규정하였다.

### 나. 피성년후견인의 소송능력

개정 민사소송법은 민법상의 피성년후견제도의 취지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피성년후견인의 소송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 ①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

개정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피성년후견인의 소송능력은 원칙적으로 부정된다(개정 민소법 제55조 제1항). 그러나 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에게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정한 경우(민법 제10조 제2항)에는 그 한도에서 피성년후견인은 단독으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개정 민소법 제1항 제2호). 따라서 피성년후견인은 예외적으로 소송능력이 긍정된다.

현행 민사소송법이 금치산자에게 완전히 소송능력을 부정하고 있는데 비해, 개정 민사소송법상 피성년후견인에게 일정 한도에서 소송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서 피성년후견인의 소송능력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개정한 이유로서는,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한 경우에는 후견등기에 의해 이것이 공시되어 소송절차의 혼란이 초래되지 않을 것이며, 또한 피성년후견인에게 일부라도 소송능력을 인정함으로써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법적 배려·인권 존중의 의미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민사소송법에서 피성년후견인에게 소송능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에 대해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나 극히 드물기 때문에 이 규정은 거의 선언적 의미를 가지는 것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하는 견해가 있다.\*

#### ② 일용품 구입 등의 법률행위

피성년후견인이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한 경우 성년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민법 제10조 제4항). 따라서 이 한도에서는 피성년후견인에게 행위능력이 인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된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행위에 관해서 개정 민사소송법은 피성년후견인에게 소송능력을

---

\* 김경욱, 전제논문, 17면.

인정하지 아니한다. 즉, 개정 민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제2호는 피성년후견인에게 예외적으로 소송능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민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일용품 구입 등’에 관해 소송능력을 부정하는 이유는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하다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아직 거래관계에서도 그 범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예를 들어 동네 가게에서 구입하는 식료품은 그 대가를 불문하고 일용품의 구입에 속하는 것인지,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으며, 특히 본안의 판단에 따라 소송능력의 존재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은 사후적으로 모든 소송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게 되어 부당하다는 것을 그 이유로 한다.\*

#### (4) 검토

현행 민사소송법상 금치산자는 완전한 소송무능력자이다. 이에 반해 개정 민사소송법상 피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소송무능력자이지만,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를 정한 경우 그 한도에서는 소송능력이 인정된다. 현행 민법이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을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한으로만 제한하고 그의 잔존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개정 민사소송법상으로는 종전의 금치산자에 대응하는 피성년후견인의 소송능력이 확대되게 되었다.

한편, 피한정후견인은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지만, 개정 민사소송법은 그 법률행위에 관한 소송능력을 피한정후견인에게 인정하지 않고 있다.\*\*\* 현행 민사소송법의 해석론에 있어서도,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지만(민법 제6조) 그에 관한 소송에서 법정대리인에 의해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범위를 탐색하는 것이 번잡하여 소송절차의 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에게 소송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 3. 피한정후견인의 소송능력

현행 민사소송법	개정 민사소송법
----------	----------

\* 배인구,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실무상 쟁점-피성년후견인 등의 행위능력과 소송능력을 중심으로-”, 민사실무연구회 발표문(미공간), 16면; 김경욱, 전계논문, 18면, 각주 17) 재인용.

\*\* 윤진수·현소혜, 전게서, 66면.

\*\*\* 따라서 개정 민사소송법은 피성년후견인의 소송능력에 관하여, 위 II. 3. (2)의 제1설의 견해 중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에만 소송능력을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강현중, 「민사소송법(제3전정판)」, 박영사, 1999, 154면; 정동윤·유병현, 「민사소송법」, 법문사, 2005, 182면.

<신설>	제55조(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 ② 피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 요한 행위에 관하여는 대리권 있는 한정후견 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	---

## (1) 민법상의 피한정후견제도

① 의의- 피한정후견인이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민법 제12조 제1항).

② 행위능력- 피성년후견인과 달리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총국적·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완전한 행위능력을 보유한다. 또한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피한정후견인은 단독으로 할 수 있다(동조 제4항 단서 참조).\*

그러나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의 심판을 할 때 일정한 법률행위에 대해서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정할 수 있으며(민법 제13조 제1항), 그 한도에서는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없는 피한정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될 수 있다(동조 제4항). 따라서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요하는 법률행위에 관해서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은 제한되는 것이다. 그리고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그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동조 제3항).

③ 법정대리인-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 때에는 한정후견인을 직권으로 선임하여야 한다(민법 제959조의2·제959조의3). 이러한 한정후견인은 동의를 필요한 행위에 대해 동의권을, 피한정후견인이 동의 없이 한 행위에 대해 취소권을 가진다.

한편, 가정법원은 일정한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한정후견인은 그 범위 내에서 피한정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된다(제959조의4).\*\* 이처럼 한정후견인이 법률상 당연히 피한정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경우에만 법정대리인이 되는 것이다.

\* 양형우, 전거서, 79면.

\*\* 김준호, 전거서, 96면; 김도훈, “성년후견제도 도입에 따른 민사소송법상 소송능력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제22권 제1호, 2014, 120면.

## (2) 현행 민사소송법의 내용

현행 민사소송법상 한정치산자는 원칙적으로 완전한 소송무능력자이고 소송행위는 법정대리인을 통하여서만 할 수 있다(현행 민소법 제55조 본문). 따라서 미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었다거나 목적을 정하여 처분이 허락된 재산에 관한 소송일 경우라도 한정치산자 자신이 하는 소송행위는 무효이다.\* 그러나 미성년자와 마찬가지로 한정치산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송능력이 인정된다(현행 민소법 제55조 단서).

## (3) 개정 민사소송법의 내용

### 가. 피한정후견인의 소송능력

현행 민법상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을 갖는 것에 대응하여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소송능력을 갖는다. 따라서 피한정후견인은 스스로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며 그 소송행위는 유효한 것이다(개정 민소법 제55조 제2항의 반대해석).

그러나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의 심판에서 일정한 법률행위에 대해서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정한 경우(민법 제13조 제1항)에는, 피한정후견인은 소송능력이 없으며 그에 관한 소송행위는 대리권 있는 한정후견인이 하여야만 한다(개정 민소법 제55조 제2항). 이와 같이 피한정후견인에게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관하여 예외적으로 소송능력을 부정할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의를 받도록 정한 행위’의 범위 내에서는 피한정후견인에게 행위능력이 없으므로 소송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

둘째, 만일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소송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i) 한정후견인의 동의 여부에 따라 피한정후견인의 소송능력 유무가 달라져 소송절차의 명확성과 안정성에 반하는 결과가 되며, ii)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피한정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소송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 나. 소송대리권이 있는 한정후견인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관해서는 피한정후견인이 단독으로 소송행위를

\* 김상원·박우동·이시윤·이재성, 전게서, 325면.

\*\* 김경욱, 전계논문, 21~22면.



할 수 없고, ‘대리권이 있는 한정후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개정 민소법 제55조 제2항).

현행 민법상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된다(민법 제938조 제1항). 이와 달리 상술한 것처럼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으로부터 대리권 수여의 심판을 받아야만 한다(제959조의4 제1항). 이처럼 한정후견인에게는 피한정후견인의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권만 있고 대리권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동의권만 있는 한정후견인에게 소송대리권을 무조건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 민사소송법은 ‘대리권 있는 한정후견인’에게만 소송대리권을 부여한 것이다.\*

#### (4) 검토

피한정후견인에게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을 인정한 민법 규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개정 민사소송법에서도 피한정후견인에게 원칙적으로 소송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점이 현행 민사소송법과 다르다. 이처럼 개정민사소송법은 종전의 한정치산자에 대응하는 피한정후견인의 소송능력을 확대한 것이다. 다만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해서는 피한정후견인의 소송능력은 부정되며, 대리권 있는 한정후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동의권만 있는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소송행위를 대리한다면, 그 소송행위는 무효라 할 것이다.

### 4. 후견감독인의 특별수권

현행 민사소송법	개정 민사소송법
제56조(법정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규정) ① 법정대리인이 상대방의 소제기 또는 상소에 관하여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친족회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받을 필요가 없다.	제56조(법정대리인의 소송행위에 관한 특별규정) ① 미성년후견인, 대리권 있는 성년후견인 또는 대리권 있는 한정후견인이 상대방의 소 또는 상소 제기에 관하여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후견감독인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받을 필요가 없다.
② 법정대리인이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認諾)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탈퇴를 하기 위하여서는 특별한 권한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법정대리인이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認諾) 또는 제80조에 따른 탈퇴를 하기 위해서는 후견감독인으로부터 특별한

\* 김경욱, 전계논문, 23면.

\*\* 이처럼 개정 민사소송법은 피한정후견인의 소송능력에 관하여, 위 II. 3. (3)의 제1설을 채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권한을 받아야 한다. 다만, 후견감독인이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받아야 한다.
--	---

## (1) 민법상의 후견감독인제도

종전에는 후견인의 감독기관으로 친족회가 있었지만 후견인과의 밀접한 관계 등으로 인해 후견인에 대한 감독이라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현행 민법은 이를 폐지하고 후견감독인(미성년후견감독인·성년후견감독인·한정후견감독인) 제도를 신설하였다(민법 제940조의2 이하).\* 그리하여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해 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제940조의3, 제940조의4, 제959조의5).\*\*\*

이처럼 후견감독인은 필요한 경우에 선임된다는 점에서 종전의 친족회가 필수적 기관인 것과 달리 임의적 기관에 해당한다.\*\*\*\* 임의적 기관으로 한 이유는, i) 후견업무에 대한 전문성·객관성을 갖춘 직업적 후견인이 가정법원에 의해 선임될 것이 예정되고 있으므로 감독의 필요성이 감소된다는 점, ii) 후견감독인의 보수가 피후견인의 재산으로부터 지급되어(제940조의7, 제955조) 피후견인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그 이유로 하고 있다.\*\*\*\*\*

그리고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950조 제5호).

## (2) 현행 민사소송법의 내용

일반적으로 법정대리인은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법정대리인이 특정 소송에서 특별한 권한을 받을 필요가 있느냐는 소송법상 특별

\* 윤진수·현소혜, 전게서, 107면; 백승흠, “성년후견제도의 시행과 과제”, 「법학연구」 제24권 제2호, 168면.

\*\* 여기에서 일정한 자란, 미성년후견감독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친족, 미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하며(민법 제940조의3 제1항), 성년후견감독인의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 친족, 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하며(제940조의4 제1항), 한정후견감독인의 경우에는 피한정후견인, 친족, 한정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제959조의5 제1항).

\*\*\* 한정후견감독인과 성년후견감독인에 관한 내용과 대체로 동일하지만(민법 제959조의3, 제959조의5), 가정법원에서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심판을 하는 범위에서 피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한정후견감독인은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이해상반행위가 있을 경우에 한정후견인에 대신하여 동의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민법 제959조의5 제2항 제2문); 백승흠, 전게논문, 175면.

\*\*\*\* 양형우, 전게서, 1869면.

\*\*\*\*\* 윤진수·현소혜, 전게서, 109면.

한 권한을 요구하는 규정(현행 민소법 제56조 제2항)과 민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다(현행 민소법 제51조).\*

첫째, 친권자가子を 대리하여 소송수행을 할 때에는 아무런 제약 없이 변호사의 선임행위 등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민법 제920조 참조).\*\*

둘째,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적극적 소송행위(소제기·상소제기 등)를 할 때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후견인이 상대방의 소제기·상소에 관하여 피고 또는 피상소인으로서 소극적 소송행위를 함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현행 민소법 제56조 제1항). 이러한 소극적 소송행위에 대해서 만일 친족회가 동의를 거절하거나 이를 지연하는 경우에는 소송무능력자의 상대방인 원고(또는 상소인)로서는 소송을 진행할 수 없게 되어 불이익하게 되기 때문에, 친족회의 특별수권을 요하지 않게 한 것이다. 즉, 무능력자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후견인이 적극적으로 제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대방이 제소한 소송에 응소하는 경우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다.\*\*\*

셋째, 후견인이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소송탈퇴를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권한을 받아야 한다(현행 민소법 제56조 제2항). 이처럼 후견인이 소의 취하 등과 같이 소송을 종료시키는 중요한 소송행위를 함에 있어서 친족회로부터 특별수권을 받도록 한 이유는 피후견인의 소송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다만 부모가子の 법정대리인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권의 범위에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소 취하 등의 행위를 할 때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을 필요가 없다.\*\*\*\*\*

### (3) 개정 민사소송법의 내용

#### 가. 서

상술한 것처럼 친족회가 후견인에 대해 실질적인 감독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 현행 민법은 친족회를 폐지하고(민법 제960조 이하 삭제), 후견감독인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여 가정법원이 필요한 경우 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개정 민사소송법에서도 친족회에 관한 규정을 후견감독인으로 수정하고, 후견감독인이 임의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 김홍규·강태원, 전게서, 226면.

\*\* 이시윤, 전게서, 171면.

\*\*\* 김상원·박우동·이시윤·이재성, 전게서, 329면.

\*\*\*\* 김상원·박우동·이시윤·이재성, 전게서, 329면.

\*\*\*\*\* 대법원 1974. 10. 27. 선고, 74다1216 판결.

## 나. 특별수권이 필요 없는 경우

현행 민사소송법에서 후견인이 소극적 소송행위를 할 때 친족회의 특별수권이 필요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개정 민사소송법에서도 제한능력자의 후견인이 상대방의 소 또는 상소제기에 관한 소극적 소송행위를 할 때는 후견감독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개정 민소법 제56조 제1항). 후견감독인이 후견인의 소극적 소송행위에 대해서 동의를 거절하거나 동의를 지연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될 원고측의 소송진행의 장애를 방지할 필요성은 현행법과 마찬가지로이기 때문에 후견감독인이 동의를 요하지 않게 한 것이다.\*

한편 여기에서 소극적 소송행위를 하는 후견인은 미성년후견인, 대리권 있는 성년후견인, 대리권 있는 한정후견인만을 포함한다. 현행 민법상 미성년후견인은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된다(민법 제928조). 이와 달리 성년후견인과 한정후견인은 소송대리권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민법 제938조 제2항·제3항·제4항, 제959조의4), 이 점을 고려하여 소송대리권이 있는 후견인만이 그 적용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 다. 특별수권이 필요한 경우

### ①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

현행 민사소송법과 마찬가지로 후견인이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소송탈퇴와 같은 소송종료 효과를 가져 오는 중요한 소송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후견감독인으로부터 이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받아야 한다(개정 민소법 제56조 제2항).

상술한 것처럼 이때의 후견인은 미성년후견인, 대리권 있는 성년후견인 또는 대리권 있는 한정후견인을 뜻하며, 따라서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위의 소송행위를 할 때에는 특별수권을 요하지 아니한다.\*\*\*

### ② 후견감독인이 없는 경우

민법의 후견감독인은 임의적 기관이다. 따라서 후견인이 소취하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 후견감독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경우, 후견인은 가정법원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받아야 한다(개정 민소법 제56조 제2항 단서).

\* 김경욱, 전계논문, 26면.

\*\* 김경욱, 전계논문, 27면.

\*\*\* 이시윤, 전게서, 171면 참조.

후견인이 소취하 등 중요한 소송행위를 함에 있어서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얻도록 한 이유는 후견인의 배신행위나 이익상반행위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므로 특별수권사항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은 분명하다. 그런데 i) 만일 후견감독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소취하 등에 필요한 권한을 얻기 위해 후견감독인을 선임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절차의 신속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며, ii) 또한 소송상 화해에 관여하는 수 소법원이 화해의 내용에 관해 허가를 하는 것이 어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정법원 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얻도록 한 것이다.\*

#### (4) 검토

현행 민법이 친족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후견감독인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개정 민사소송법에서도 친족회를 후견감독인으로 대체하였다. 그리하여 후견인이 소 취하 등 중요한 소송행위를 할 때에는 후견감독인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수여받아야 한다. 다만 후견감독인은 임의적 기관이므로 후견감독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을 때는, 후견감독인을 반드시 선임할 필요 없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수여받으면 된다.

한편 미성년후견인과 달리 성년후견인과 한정후견인의 경우에는 소송대리권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정 민사소송법은 후견감독인의 특별수권을 얻어야 하는 법정대리인으로서 대리권 있는 성년후견인, 대리권 있는 한정후견인으로 명시하였다.

### 5. 특별대리인의 선임

#### (1) 제한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현행 민사소송법	개정 민사소송법
제62조(특별대리인) ① <u>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이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를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송절차가 지연됨으로써 손해를 볼 염려가 있다는 것을 소명하여 수 소법원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주도록 신청할 수 있다.</u>	제62조(제한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① <u>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당사자인 경우, 그 친족, 이해관계인(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대리권 없는 성년후견인, 대리권 없는 한정후견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송절차가 지연됨으로써 손</u>

\* 김경욱, 전계논문, 29면.

<p>&lt;신설&gt;</p> <p>② 제1항의 경우로서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가 소송행위를 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친족·이해관계인 또는 검사는 소송절차가 지연됨으로써 손해를 볼 염려가 있다는 것을 소명하여 수소법원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주도록 신청할 수 있다.</p> <p>③ 법원은 언제든지 특별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p> <p>④ 특별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서는 후견인과 같은 권한을 받아야 한다.</p> <p>⑤ 특별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은 법원의 결정으로 하며, 그 결정은 특별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p> <p>⑥ 특별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비용과 특별대리인의 소송행위에 관한 비용은 신청인에게 부담하도록 명할 수 있다.</p>	<p>해를 볼 염려가 있다는 것을 소명하여 수소법원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주도록 신청할 수 있다.</p> <p>1.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에게 소송에 관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p> <p>2. 법정대리인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장애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p> <p>3. 법정대리인의 불성실하거나 미숙한 대리권 행사로 소송절차의 진행이 현저하게 방해 받는 경우</p> <p>&lt;삭제&gt;</p> <p>② 법원은 소송계속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특별대리인을 선임·개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p> <p>③ 특별대리인은 대리권 있는 후견인과 같은 권한이 있다. 특별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에서 법정대리인의 권한은 정지된다.</p> <p>④ 특별대리인의 선임·개임 또는 해임은 법원의 결정으로 하며, 그 결정은 특별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p> <p>⑤ 특별대리인의 보수, 선임 비용 및 소송행위에 관한 비용은 소송비용에 포함된다.</p>
--	--

### 가. 현행 민사소송법의 내용

현행 민사소송법 제62조가 규정하는 특별대리인이란, 민사소송법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하는 법정대리인을 의미한다.\*

미성년자·한정치산자·금치산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이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친족·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신청과 소송절차가 지연됨으로써 손해를 볼 염려가 있다는 소명에 의해 수소법원은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현행 민소법 제62조 제1항·제2항). 소송무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있더라도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소송무능력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하거나 그를 피고로 제소하는 상대방 당사자의 신속한 절차진행을 위해 인정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법원은 선임된 특별대리인을 언제든지 개임할 수 있다(동조 제3항).

특별대리인은 법정대리인에 갈음하는 대리인이므로 당해 소송과 관련해서 그 소송

\* 김홍규·강태원, 전거서, 225면.

\*\* 김상원·박우동·이시윤·이제성, 전거서, 418~419면 참조.

수행에 관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특별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후견인과 같은 권한을 받아야 하므로(동조 제4항), 따라서 특별대리인이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소송탈퇴 등의 행위를 할 때에는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이러한 특별수권은 친족회가 있으면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만일 친족회가 없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한 수소법원이 특별수권을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리고 특별대리인의 보수 등 선임비용은 신청인에게 부담하도록 명할 수 있다(동조 제6항).

## 나. 개정 민사소송법의 내용

### ① 신청권자

수소법원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피성년후견인의 친족, 이해관계인, 대리권 없는 성년후견인, 대리권 없는 한정후견인, 지방지차단체의 장 또는 검사이다(개정 민소법 제62조 제1항).

만일 대리권 있는 성년후견인이나 대리권 있는 한정후견인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장애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리권 없는 성년후견인과 대리권 없는 한정후견인도 특별대리인의 신청권자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신청권자로 인정하고 있는데, 특히 후견인과 제한능력자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거나 이해가 상반되지는 않더라도 제한능력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제한능력자 측이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현행 민사소송법상의 신청권자인 친족·이해관계인 또는 검사만으로는 제한능력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없다는 비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 것이다.\*\*\*\*\*

### ② 특별대리인의 선임요건

신청권자들은 아래 3가지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 소송절차가 지연됨으로써 손해를 볼 염려가 있음을 소명하여 수소법원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민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

i)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에게 소송에 관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

현행 민사소송법은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이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 이시윤, 전게서, 170면.

\*\* 강현중, 전게서, 176면.

\*\*\*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므3652 판결.

\*\*\*\* 김상원·박우동·이시윤·이재성, 전게서, 427면.

\*\*\*\*\* 김경욱, 전계논문, 33면.

경우”를 특별대리인 선임요건으로 하고 있다(현행 민소법 제62조 제1항). 그런데 현행 민법에 따르면 성년후견인과 한정후견인은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으며(민법 제930조 제2항, 제959조의2 제2항), 이들의 법정대리권의 범위를 가정법원이 각각 달리 정할 수 있다(민법 제938조 제2항, 제959조의4 제2항). 이러한 현행 민법의 규정을 반영하여 개정 민사소송법에서는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를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에게 소송에 관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로 명시한 것이다(개정 민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

ii) 법정대리인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장애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현행 민사소송법상의 “법정대리인이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와 관련하여 그동안 사실상의 장애를 여기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관한 긍정설\*\*과 부정설\*\*\*의 대립이 있었다. 이러한 견해 대립을 불식하기 위해 사실상의 장애도 특별대리인의 선임요건으로 규정한 것이다(개정 민소법 제62조 제1항 제2호).\*\*\*\*

iii) 법정대리인의 불성실하거나 미숙한 대리권 행사로 소송절차의 진행이 현저하게 방해받는 경우

현행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후견인이 불성실하게 대리권을 행사하는 등 위와 같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후견인 변경신청을 하는 방법 이외에는 후견인의 소송수행을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이러한 후견인 변경신청은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것이고 특히 미성년자가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당해 선임요건을 신설한 것이다. 따라서 예컨대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위해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 신청권자들이 현재 성년후견인이 소제기 등 후견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고, 소송절차가 지연됨으로써 손해를 볼 염려가 있다는 것을 소명하여 수소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③ 직권에 의한 특별대리인의 해임

수소법원은 소송계속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특별대리인을 선임·개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개정 민소법 제62조 제2항). 따라서 예컨대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의 불성실하거나 미숙한 대리권 행사로 소송절차의 진행이 현저하게 방해받는 것을 이유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였는데, 그 후 가정법원에서 새로운 성년후

\* 김경욱, 전계논문, 33~34면.

\*\* 이시윤, 전게서, 170면; 정동윤·유병현, 211면; 김홍엽, 전게서, 170면 등.

\*\*\* 김상원·박우동·이시윤·이재성, 주석 민사소송법(1), 349면.

\*\*\*\* 김경욱, 전계논문, 34면.

\*\*\*\*\* 김경욱, 전계논문, 34~35면.



견인, 한정후견인 또는 임시후견인을 선임하였다면 수소법원은 선임된 특별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④ 특별대리인의 권한

특별대리인은 대리권 있는 후견인과 같은 권한이 있다(개정 민소법 제62조 제3항). 현행 민법상 후견인은 포괄적 대리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대리권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특별대리인의 권한에 관하여 “대리권 있는 후견인”과 같은 권한이 있는 것으로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특별대리인이 상대방의 소 또는 상소제기에 관하여 소극적 소송행위를 할 때에는 특별한 권한을 받을 필요가 없지만,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소송탈퇴를 할 때에는 특별한 권한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특별대리인이 선임되면 그의 대리권의 범위에서 법정대리인의 권한은 정지된다(개정 민소법 제62조 제3항 제2문). 법정대리인의 불성실 등을 이유로 특별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특별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이 병존하게 되어 이들 상호간에 권한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의 권한은 정지하게 된다.\*\*

⑤ 특별대리인의 보수 등

특별대리인의 보수, 선임 비용 및 소송행위에 관한 비용은 소송비용에 포함된다(개정 민소법 제62조 제5항). 변호사가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 변호사 보수가 소송비용에 포함되며, 특별대리인의 보수 등의 비용을 소송비용에 포함시켜 나중에 판결에서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받은 자가 종국적으로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2) 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현행 민사소송법	개정 민사소송법
<신설>	제62조의2(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의 선임 등) ①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려고 하거나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 필요한 경우 특별대리인의 선임 등에 관하여는 제62조를 준용한다. 다만, 특정후견인 또는 임의후견인도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특별대리인이 소의 취하, 화해, 청

\* 김경욱, 전계논문, 36면.

\*\* 김경욱, 전계논문, 37면.

\*\*\* 김경욱, 전계논문, 38면.

	구의 포기·인낙 또는 제80조에 따른 탈퇴를 하는 경우 법원은 그 행위가 본인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정으로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	---

### 가. 현행 민사소송법에서의 상황

의사능력이란 자기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인식·판단하여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신능력을 말하며, 이러한 의사능력이 결여된 자를 의사무능력자라고 한다. 의사능력은 사람의 판단능력에 기초한 것으로서 사람의 정신능력의 정도는 확실적인 기준을 정하여 결정할 수는 없으며,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한편 아직 금치산선고는 받지 않았지만 사실상 의사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해서 또는 그 자를 위해서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지 문제되었다. 현행 민사소송법 제62조는 의사무능력자를 위해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지에 관해 침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통설·판례는 특별대리인이 선임될 수 있는 소송무능력자로서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이외에도 사실상 의사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 나. 개정 민사소송법의 내용

#### ① 신청권자

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은 개정 민소법 제62조의 제한능력자의 특별대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민소법 제62조의2 제1항 본문). 따라서 의사무능력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대리권 없는 성년후견인, 대리권 없는 한정후견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검사가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특정후견인과 임의후견인도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민소법 제62조의2 제1항 단서). 제한능력자 이외의 피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을 받는 본인이 후견개시 후에 의사무능력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특정후견인과 임의후견인에게도 그 신청권을 인정한다.

\* 양형우, 전게서, 65면;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58367 판결 등.

\*\* 의사능력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는 예컨대, 치매, 발달장애, 뇌병변, 약물중독 등을 들 수 있다.; 김경욱, 전계논문, 41면.

\*\*\* 김상원·박우동·이시윤·이재성, 전게서, 421면; 김홍엽, 전게서, 176면; 대법원 1984. 5. 30.자 84스12 결정;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8986 판결.

것이다.\*

## ② 선임요건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려고 하거나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 필요한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민소법 제62조의2 제1항 본문).

이때 의사무능력자는 아직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지 않았거나 심판을 받았지만 대리권의 범위 제한으로 인해 당해 제한능력자에게 소송능력이 인정되는 경우를 상정한 것이다. 따라서 이 제도를 통해서 소송이 제기된 경우 당해 소송에서 일회적으로만 도움을 받고자 하는 의사무능력자의 권익을 보호될 수 있게 되었다.\*\*

## ③ 수소법원의 불허가결정

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이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소송탈퇴를 하는 경우 수소법원은 그 행위가 본인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정으로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민소법 제62조의2 제2항 제1문). 소의 취하 등 소송종료 행위가 의사무능력자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하는 경우에 수소법원의 불허가결정을 통해 의사무능력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수소법원의 이러한 불허가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개정 민소법 제62조의2 제2항 제2문). 만일 수소법원의 불허가결정에 대해서 불복을 허용하면, 그에 관한 당부 판단이 이루어질 때까지 소송절차를 종료시키는 중요한 소송행위의 효력이 유동적으로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또 불복절차의 진행으로 소송절차가 복잡하고 비효율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특별한 불복절차가 없더라도 종국판결 및 그 불복절차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수소법원의 불허가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 (3) 검토

### 가. 제한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개정 민사소송법은 제한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과 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으로 나누어서 규정하였다. 제한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신청권자의 범위에 관해

---

\* 김경욱, 전계논문, 42면.

\*\* 김경욱, 전계논문, 41~42면.

\*\*\* 김경욱, 전계논문, 31면 참조.

서는 현행 민법의 제한능력자제도를 반영하고 또한 제한능력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리권 없는 성년후견인, 대리권 없는 한정후견인,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선임요건에 관해서도 대리권이 없는 후견인을 고려하고 또 종전에 견해 대립이 있었던 부분도 해결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또한 수소법원이 상황에 따라 특별대리인을 해임할 수 있는 근거규정 및 특별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법정대리인의 권한을 정지하는 규정도 두었다.

한편 특별대리인이 소취하 등의 행위를 할 때 누구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받아야 하는지 문제될 수 있다. 전술한 것처럼 대리권 있는 후견인의 경우에는 후견감독인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받아야 하고 후견감독인이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으로부터 이를 받아야 한다(개정 민소법 제56조 제2항). 후견감독인은 가정법원으로부터 선임되기 때문에 후견감독인이 없을 때는 가정법원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받을 필요가 있지만, 제한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은 수소법원이 선임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달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따라서 현행 민사소송법의 해석론과 마찬가지로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후견감독인이 없는 경우에는 수소법원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받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특히 후술하는 것처럼 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이 소취하 등을 하는 경우 수소법원이 불허가결정을 할 수 있는 것(개정 민소법 제62조의2 제1항)과 비교해서도 마찬가지이다.

#### 나. 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은 종전에 관례에서 인정되었던 것을 명문으로 신설한 것이다. 특정후견인·임의후견인이 선임된 이후에 피후견인이 의사무능력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을 고려하여 특정후견인·임의후견인에게도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수소법원이 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때 전문성이 있고 의사무능력자의 이익을 보호할 사람을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그 특별대리인의 소취하 등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허가를 하되 다만 그 행위가 본인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한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그리고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불허가결정을 내리게 하고, 이러한 불허가결정에 대해서는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불복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 6. 장애인 등을 위한 진술보조인 제도

현행 민사소송법	개정 민사소송법
<신설>	<p>제143조의2(진술보조) ① 질병, 장애, 연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제약으로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술을 도와주는 사람과 함께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p> <p>② 법원은 언제든지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술보조인의 자격 및 소송상 지위와 역할, 법원의 허가 요건·절차 등 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p>

### (1) 현행 민사소송법상의 상황

일본 민사소송법 제60조는 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자신을 보조할 사람과 함께 출석할 수 있는 보좌인 제도를 두고 있다. 보좌인 제도를 인정하는 취지는, 첫째 이른바 현대형 소송이나 지적재산권에 관한 소송 등 전문적·기술적 지식이 필요한 소송에서 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이 그러한 지식을 갖지 않을 때 이를 보조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점, 둘째 통상적인 소송에서 당사자본인에게 언어장애나 청력장애 등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진술을 보조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과거 의용 민사소송법 제88조는 위 일본 민사소송법과 같은 보좌인 제도를 채택하였으나, 1960. 4. 4. 제정된 민사소송법에서는 위 보좌인 제도를 폐지하였다. 따라서 현행 민사소송법에서는 당사자의 진술을 보조하기 위해 소송대리인이 아닌 보조인이 당사자와 함께 변론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 당사자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소송능력은 있으나 질병, 장애, 연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제약으로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당사자의 진술을 보조하기 위한 진술보조인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되어 개정 민사소송법에서는 진술보조인 제도를 신설하게 되었다.\*\*

### (2) 개정 민사소송법의 내용

질병, 장애, 연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제약으로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으면 진술을

\* 加藤新太郎, 「注解民事訴訟法(1)」(塩崎勤 編集), 青林書院, 2002, 581면.

\*\* 김경욱, 전계논문, 46~47면.

도와주는 사람과 함께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개정 민소법 제143조의2 제1항). 따라서 예컨대 나이가 많은 노인, 청각·시각장애인, 발달장애인과 같이 소송능력, 의사능력이 인정되지만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사람들은 진술보조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가 정신적·신체적 제약의 정도가 진술보조인을 통해 진술할 수 없는 정도인 경우에는 변호사선임명령(민소법 제144조 제2항)이나 후견개시심판을 받아 후견인에 의해 소송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진술보조인에 의해 오히려 소송진행이 방해되거나 당사자 본인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 등에 법원은 언제든지 진술보조인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민소법 제143조의2 제2항).

그 밖에 진술보조인의 자격 및 소송상 지위와 역할, 법원의 허가요건·절차 등 허가 및 취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에 위임하고 있다(개정 민소법 제143조의2 제3항).

### (3) 검토

개정 민사소송법이 도입한 진술보조인은 당사자의 대리인이 아니며, 또한 일본 민사소송법 제60조가 예정하고 있는 현대형 소송이나 지식재산권 관련소송에서 당사자의 전문적·기술적 지식을 보조하는 사람이 아니라, 순전히 당사자의 의사소통 장애를 보조하기 위한 사람에 불과하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의 소송대리에 관한 규정은 대부분은 진술보조인제도에 적용될 수 없다고 하겠다.

## IV. 결 론

(가) 2016년 2월 3일 법률 제13952호로 공포되고 2017년 2월 4일 시행되는 개정 민사소송법은 현행 민법상의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의 소송능력에 관한 보다

---

\* 김경욱, 전계논문, 47면.

\*\* 김경욱, 전계논문, 47면, 각주 62).

상세한 규정을 두게 되었다.

(나) 개정 민사소송법은 현행 민법의 규정을 반영하여 피성년후견인의 소송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피한정후견인의 소송능력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두었다.

일반적으로 볼 때 민법상의 행위능력이나 민사소송법상의 소송능력은 모두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도구들로서 민법과 민사소송법에서 서로 대응되고는 있지만 원래는 서로 다른 별개의 개념이다. 따라서 양자 모두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일응 민법상의 행위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상의 소송능력도 부정되지만, 민법상 행위능력이 인정된다고 하여 민사소송법상 소송능력이 자동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점은 민사소송법 제51조에서 잘 드러나 있으며, 이 규정에 따라 민법상의 행위능력의 인정여부와 별개로 민사소송법에서 소송능력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개정 민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제2문에서 가정법원이 정한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에 관해서만 피성년후견인에게 소송능력을 인정하고, 피성년후견인에게 행위능력이 인정되는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와 관련해서는 소송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이해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피한정후견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소송능력을 긍정하고 예외적으로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관해서는 소송능력을 부정하는 규정을 두었는데, 이 점은 현행 민법상 피한정후견인에 관한 입법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민법상 행위능력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소송능력을 인정함으로써, 피후견인들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면서 그들의 사법접근권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 현행 민법이 친족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후견감독인에게 넘긴 것을 반영하여, 개정 민사소송법에서도 제한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소취하 등 중요한 소송행위를 할 때 후견감독인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또한 종전에 관례·학설에서 인정되었던 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규정을 명문화하고 또 그 신청권자를 확대함으로써 의사무능력자의 소송상의 이익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라) 성년후견심판이나 한정후견심판을 받지도 않았고 또 의사능력이 있더라도 정신적·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당사자의 진술을 도와주기 위한 진술보조인제도를 두었다. 이리하여 일정한 정신

---

\* 김상훈, 전제논문, 261~262면.

적·신체적 제약이 있는 고령자·장애인 등에게 소송수행에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 실질적인 당사자평등의 원칙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마) 이처럼 개정 민사소송법은 민법의 제한능력자와 연계함으로써 소송에 있어서도 제한능력자의 잔존능력을 최대한 존중하는 한편 의사무능력자의 특별대리인, 진술보조인 등을 통해서 소송상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강현중, 「민사소송법(제3전정판)」, 박영사, 1999. 4.
- 김경옥, “2015년 민사소송법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쟁점”, 「민사소송」 제19권 제2호,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15. 11.
- 김도훈, “성년후견제도 도입에 따른 민사소송법상 소송능력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제22권 제1호,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1.
- 김상원·박우동·이시윤·이재성, 「주식 신민사소송법(I)」 제1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03. 9.
- 김상훈, “성년후견제도의 도입과 민사소송법상이 소송능력 등—소송능력을 중심으로—”, 「강원법학」 제41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4. 2.
- 김준호, 「민법강의(제21판)」, 법문사, 2015. 1.
- 김형석,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의 소송능력—해석론과 입법론—”, 「가족법연구」 제27권 제1호, 한국가족법학회, 2013. 3.
- 김홍규·강태원, 「민사소송법(제3판)」, 삼영사, 2014. 2.
- 김홍엽, 「민사소송법(제5판)」, 박영사, 2014. 8.
- 백승흠, “성년후견제도의 시행과 과제”, 「법학연구」 제24권 제2호,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12.
- 양형우, 「민법의 세계(제8판)」, 피엔씨미디어, 2016. 1.
- 윤진수·현소혜, 「2013년 개정 민법 해설」, 2013년도 법무부 연구용역보고서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제6증보판)」, 박영사, 2012. 3.
- \_\_\_\_\_, 「신민사소송법(제9판)」, 박영사, 2015. 3.
- 정동윤·유병현, 「민사소송법」, 법문사, 2005. 4.
- \_\_\_\_\_, 「민사소송법(제4판)」, 법문사, 2014. 6.
- 정선주, “행위능력제도의 변화에 따른 소송능력의 재검토”, 「민사소송」 제18권 제1호,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14. 5.
- 塩崎勤 編集, 「注解民事訴訟法(1)」, 青林書院, 2002. 10.

# The Capacity to Sue and to be Sued in Civil Procedure Act

Kim, Sang Gyun  
Department of law  
Cheongju University

According to the amendment of Civil Procedure Act which should be implemented from February 4, 2016, any capacity to sue or to be sued of an adult ward is not granted except the irrevocable justice act determined by the Family Court. The capacity to sue or to be sued of an limited ward, however, is recognized but for the scope of acts for which a limited ward should obtain consent from his/her limited guardian determined by the Family Court. A legal representative who is granted to exercise the power for the sake of his/her adult or limited ward should obtain special authorization from a supervisor of guardianship or from the Family Court without the supervisor of guardianship, in order to effect any withdrawal of a lawsuit, compromise, waiver or recognition of a claim, or a secession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80. The amendment of Civil Procedure Act, also, make new rules of an special representative for a person who has lack of mental capacity, and an assistant system in pleading' statements by a party who is insufficiently from mental or physical capacity caused by a disease, disability, an age or by any other cause.

Key Words: capacity to sue and to be sued, capacity in civil law, adult guardianship, limited guardianship, special representative in civil procedure, assistant in statements by a party of lawsuit

논문투고일 : 2016. 07. 20

심사개시일 :

게재확정일 :



한국사회과학연구  
제38권 1호  
2016년 8월호

# Twitter 상에서 교수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에 관한연구 - 특히 GIS강좌를 중심으로 -\*

청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적학과 교수  
김 윤 기

## 국 문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GIS담당교수들이 학생들과 상호작용을 위해 트위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기술하고 비교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트위터를 활용한 교수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이론과 연구들을 검토하였고, 이를 근거로 7개의 연구질문을 설정하여 이에 대한 답을 구하였다. 분석의 결과 본 연구는 7개의 연구질문 중 6개(트윗 당 평균 리트윗 수, 트윗 당 평균 답글 수, 트윗 당 평균 마음에 들어요 수, 트윗 당 평균 해시태그 수, 트윗 당 평균 멘션 수, 트윗 당 평균 링크 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을 얻을 수 있었지만 트윗 당 평균 트윗 답가기 수에 관한 연구질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답을 얻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트위터 상에서 교수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정도가 트위터 계정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본 연구는 다른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트위터 상에서 교수와 학생간의 일대일, 그리고 일대다의 상호작용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트위터 상

\* 이 논문은 2016-2017학년도에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가 지원한 학술연구조성비(특별연구과제)에 의해 연구되었음.

에서 교수와 학생 간 상호작용실태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비공개로 대화하기를 통한 일대일, 일대다, 그리고 다대다의 상호작용은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 표본 수가 적다는 점, 그리고 2개월간 게시된 트윗만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했다는 점 등 몇 가지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한계는 설문조사방법이나 빅데이터 분석기법의 활용으로 극복이 가능할 것이다.

주제어: 교수, 학생, 상호작용, 트위터, 트윗, 리트윗, 답글, 마음에 들어요, 해시태그, 멘션, 트윗 답아가기, 링크

# I. 서론

대학에 개설된 강좌들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교수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Ball et al., 2015). 특히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가는 신기술을 다루고 있는 ‘GIS강좌’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강의실 중심수업’에 있어서 교수와 학생간의 전형적인 상호작용패턴은 수업시간에 담당교수는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고 학생들은 교수의 질문에 답을 하거나 아니면 학생들의 질문에 대하여 교수들이 답을 해주는 것이었다. 물론 수업시간에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전화나 전자우편을 활용하여 상호작용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 담당교수에게 수업과 관련하여 직접 전화를 걸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이러한 전통적인 방식에 의한 교수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은 여러 가지 시간적, 공간적, 심리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인 제약을 받게 된다.

그리하여 오늘날 대학에서 GIS강좌를 담당하고 있는 교수들은 학생들과의 상호작용과정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소셜미디어 플랫폼(platform)’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트위터는 교수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Facebook과는 달리 트위터는 로그인 하지 않고도 RSS피드를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용자가 올린 트윗에도 아무런 제약 없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Moody, 2010). 실제로 교수들은 수업시간에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부분을 트윗을 통하여 보충설명하기도 하고 교과목과 관련된 정보들을 수강생들과 공유하기도 한다. 또한 트위터는 훌륭한 ‘강좌게시판’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학기 중에 피치 못할 사유로 담당교수가 갑자기 강의 일정을 변경하여 수강생들에게 통지시키고자 할 때 트위터는 훌륭한 ‘소통채널’이 될 수 있다. 그리하여 오늘날 다수의 GIS담당교수들은 자신의 강좌 수강생들과의 상호작용을 위해 트위터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GIS담당교수들이 학생들과 상호작용을 위해 트위터를 활용하고 있는 정도는 담당교수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어느 GIS강좌 트위터 계정을 방문하여보면 한 학기 동안 게시된 ‘트윗’수가 무척 적을 뿐만 아니라 또한 트위터의 다양한 상호작용기능 중에서 ‘답글’과 같은 극히 일부의 기능만을 사용하고 있어 수강생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다. 반면에 또 다른 GIS강좌 트위터 계정을 방문하여보면 매주 많은 숫자의 트윗을 게시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게시한 글도 다양한 상호작용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담당교수가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다수의 GIS담당교수들이 학생들과 상호작용을 위해 트위터를 활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아직 부족한 상태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GIS담당교수들이 학생들과 상호작용을 위해 트위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기술하고 비교하려고 한다.

##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검토

### 1. 트위터와 상호작용

#### 1) 트위터 개념

트위터는 2006년7월에 출범한 가장 인기 있는 마이크로 블로그 서비스이자 소셜 미디어이다. 트위터에서 사용자들의 대부분의 활동은 트윗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트윗이란 사용자가 작성하여 올린 한편의 글을 말하는데 글자 수가 140자로 제한된다. 이렇게 한 사용자가 자신이 작성한 트윗을 게시하게 되면 자신의 프로필에 표시될 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을 팔로잉하고 있는 다른 사용자들에게도 동시에 전달된다.

사용자수가 많고 전파력이 다른 매체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트위터 상에서는 어떤 사용자가 올린 트윗이 순식간에 전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기도 한다. 트위터는 간단하고 가벼운 글들을 손쉽게 게시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오늘날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글을 올리고 다른 사람이 올린 글을 받아보고 있다(Elavsky et al., 2011).

#### 2) 트위터의 상호작용기능

트위터는 다음과 같은 상호작용기능들을 지니고 있다.

##### ① 트윗

트위터 상에서 사용자들 간의 상호작용의 출발점은 트윗이다. 어느 사용자가 특정 주제의 트윗을 게시하게 되면 이글을 본 자신의 팔로워들 이나 다른 사용자들이 글의 내용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표시하면서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Dunlap and

Lowenthal, 2009). 이 글의 내용에 공감하는 어느 사용자는 이글을 리트윗할 수 있고 또 다른 사용자는 ‘마음에 들어요’버튼을 눌러 자신의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따라서 트위터 공간상에서 사용자간의 상호작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트윗을 올려야만 한다.

## ② 리트윗

‘리트윗’도 트위터의 강력한 상호작용기능 중에 하나이다. 리트윗이란 트위터 공간상에서 다른 사용자가 게시한 트윗을 자신의 계정으로 재전송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느 트위터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가 게시한 트윗을 리트윗하게 되면 동일한 메시지가 자신의 트위터 계정의 타임라인뿐만 아니라 자신을 팔로우하고 하고 있는 모든 팔로워들에게도 동시에 전달된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트위터 사용자들은 트위터 공간상에서 자신이 공감하는 트윗을 발견하면 리트윗하여 자신의 팔로워들과 그것을 공유하고 있다(O'Connor et al., 2013). 리트윗은 트위터 상에서 교수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증진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담당교수가 수업과 관련하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트윗을 발견하여 이를 리트윗하게 되면 학생들은 리트윗의 내용에 대하여 답글, 마음에 들어요 등의 형태로 자신의 의견을 표시하여 상호작용을 진행할 수 있다.

## ③ 팔로우

트위터 상에서 특정사용자가 올린 트윗이나 다른 사람이 올린 트윗을 리트윗한 것을 받아보기 위해서는 그 사용자를 ‘팔로우’(follow)해야만 한다. 어느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를 팔로우할 때 상대방의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다. 어느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를 팔로우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팬이 되는 것과 같다(Lowe and Laffey, 2011). 따라서 교수가 자신이 담당하는 교과목 수강생들과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키기 위해 트위터를 활용하고자한다면 제일먼저 해야 할 일은 수강생들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팔로우하도록 해야 하고 자신도 그들의 계정에 팔로우하는 것이다. 트위터 공간상에서 상호간 팔로우가 되지 않으면 담당교수는 수강생들과 일대일 또는 일대다의 비공개로 대화하기가 불가능하다. 여기서 비공개로 대화하기는 트위터의 상호작용기능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다.

#### ④ 답글

‘답글’은 어느 사용자가 올린 트윗에 대하여 답을 하는 것이다. 보통 트위터 상에서 어느 사용자가 논란이 될 만한 글이나 아니면 내용이 참신하고 유용한 글을 올리게 되면 많은 답글이 달리고 사용자들 간에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진다(Junco et al., 2013). 이때 토론은 글을 올린사람과 다른 사용자사이 뿐만 아니라 다른 사용자들 간에도 이루어진다. 따라서 교수가 자신이 담당하는 교과목 수강생들과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키기 위해 트위터를 활용하고 저 할 때 답글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담당교수는 특정 주제에 관한 트윗을 게시하여 교수와 학생 그리고 학생들 상호간의 토론을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트위터 상에서의 교수와 학생 그리고 학생과 학생간의 상호작용은 강의실중심교육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 ⑤ 마음에 들어요

트위터의 ‘마음에 들어요’기능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다른 SNS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트위터 상에서 사용자들은 다른 사용자가 게시한 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한다면 글의 하단에 있는 마음에 들어요 버튼을 누르면 된다(Guo and Saxton, 2014). 이 마음에 들어요 기능도 교수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이다(Sutcliffe et al., 2011). 만약에 담당교수가 교과목과 관련하여 산업체를 탐방할 계획을 갖고 있다면, 담당교수는 산업체 탐방 후보지를 트윗으로 게시하여 학생들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이때 학생들은 ‘답글’을 통하여 자신들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지만, 간단히 마음에 들어요 버튼을 눌러 자신의 ‘호불호’를 표시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

#### ⑥ 해시태그

트위터 상에서 ‘해시태그’도 사용자간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키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해시태그는 사프기호(#)와 특정 키워드를 붙여 쓴 것으로 트위터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다른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도 널리 이용되고 있다(Kim, 2015). 어느 사용자가 해시태그를 사용하여 트윗을 작성하여 게시하게 되면 이 해시태그는 링크로 변화되기 때문에 다른 트위터 사용자들이 이 해시태그를 클릭하면 해당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트윗들이 화면상에 표시된다(Small, 2011). 하나의 해시태그는 하나의 느슨한 형태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어 해당 해시태그에 관심이 있는 트위터 사용자간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킬 수 있다. 이



해시태그기능도 교수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이다. 그런데 해시태그를 이용한 교수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담당교수가 강의 첫 시간에 교과목과 관련된 해시태그를 학생들에게 공지하고 학생들이 앞으로 트윗을 작성할 때는 이 해시태그를 사용하도록 지도해야만 한다.

### ⑦ 멘션

‘멘션’은 한 트위터 사용자가 자신이 작성한 트윗에서 다른 사용자의 아이디를 @아이디형태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이것은 마치 오프라인에서 어느 한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유사하다(Spence et al., 2016). 오프라인에서 어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 당사자가 자신의 이름을 부른 사람을 바라보듯이 트위터 상에서도 어느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의 아이디를 멘션하게 되면 해당 트윗이 당사자에게 전달되게 되고 이 사람은 답글이나 비공개로 대화하기를 이용하여 반응을 보일 수 있다. 이 멘션기능은 교수가 학생과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키기 위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다. 담당교수가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강좌와 관련하여 트윗을 작성할 때 소통을 하고 싶은 특정 학생들의 아이디를 멘션하게 되면 이 학생들에게 이글이 전달되어 이들과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 ⑧ 비공개로 대화하기

‘비공개로 대화하기’기능은 트위터 사용자들이 다른 사용자들과 비공개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싶을 때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이다. 이 기능을 이용하면 트위터 사용자는 다른 사용자와 일대일, 일대다, 또는 다대대의 상호작용이 가능하다(Savage and Spence, 2014). 그러나 트위터 공간상에서 상호간 팔로우가 되어있지 않으면 어느 한 사용자는 다른 사용자들과 비공개로 대화하기를 통하여 상호작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비공개로 대화하기를 활용하면 담당교수는 학생들에게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상담을 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수강생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토론회나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 ⑨ 공유하기

공유하기란 트위터 상에서 어느 트위터 사용자가 자신을 팔로잉하고 있는 팔로워들과 특정 트윗을 공유하고 싶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상호작용기능이다. 트위터 상에서 사용자들은 ‘쪽지로 공유하기’, ‘트윗 링크 복사하기’, ‘트윗 답아가기’기능들을 이

용하여 다른 사용자와 특정 트윗을 공유할 수 있다(Savage and Spence, 2014). 어느 트윗 사용자가 자신이 지정한 특정 팔로워들 하고만 트윗을 공유하고 싶을 때는 ‘꼭지로 공유하기’를 이용하면 되고 모든 자신의 팔로워들과 그것을 공유하고 싶을 때는 ‘트윗 링크 복사하기’, ‘트윗 답아가기’기능을 활용하면 된다.

## 2. 교수와 학생간의 상호작용

교수가 수업과 관련하여 트위터를 활용하는 주된 목적은 교수와 학생 그리고 학생과 학생간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트위터 상에서의 교수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유형은 다음의 3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 1) 교수-학생상호작용

이 유형은 수업과 관련하여 교수와 학생 간에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을 말한다(Lowe and Laffey, 2011). 이 유형의 상호작용에서는 트윗, 리트윗, 답글, 마음에 들어요, 해시태그, 멘션, 비공개로 대화하기 그리고 팔로우 기능과 같은 트위터의 모든 상호작용기능들이 이용된다. 또한 교수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유형은 상대방의 숫자에 따라 ‘일대일 상호작용’과 ‘일대다 상호작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대일 상호작용’에서는 멘션이나 비공개로 대화하기 기능 등이 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일대다의 상호작용’의 경우에는 트윗, 답글 그리고 비공개로 대화하기 기능이 이용된다.

그리고 ‘교수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은 주도권을 누가 지니고 있는냐에 따라 ‘교수 주도형 상호작용’과 ‘수평적 상호작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교수주도형 상호작용’의 경우에는 교수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이 교수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은 피동적으로 이 과정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 이때 활용되는 트위터의 상호작용기능도 트윗이나 비공개로 대화하기와 같은 일부 기능에만 국한되어있다(Ball et al., 2015). 반면에 ‘수평적 상호작용’은 교수와 학생들이 트위터 상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유형이다(Mergel, 2013). 이 유형에서는 교수와 학생간의 일대일 그리고 일대다의 상호작용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이때 활용되는 트위터의 상호작용기능도 ‘교수주도형 상호작용’과는 달리 트윗, 리트윗, 답글, 마음에 들어요, 해시태그, 멘션, 비공개로 대화하기 그리고 팔로우 기능과 같은 트위터의 모든 상호작용기능들이 이용된다.

## 2) 학생과 학생의 상호작용

이 유형은 특정 교과목과 관련하여 학생과 학생 간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을 말한다. 이 유형의 상호작용에서도 교수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에서와 마찬가지로 트윗, 리트윗, 답글, 마음에 들어요, 해시태그, 멘션, 비공개로 대화하기 그리고 팔로우 기능과 같은 트위터의 모든 상호작용기능들이 이용된다. ‘학생과 학생간의 상호작용’도 상대방의 숫자에 따라 ‘일대일 상호작용’, ‘일대다 상호작용’, 그리고 ‘다대다 상호작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대일 상호작용’과 ‘일대다 상호작용’에서 활용되는 트위터의 상호작용기능은 교수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의 경우와 유사하다. 그러나 ‘다대다 상호작용’의 경우 그것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질 때는 트윗, 리트윗, 답글 등이 이용될 수 있고 비공개적인 상호작용의 경우에는 비공개로 대화하기 기능이 주로 활용된다(Kassens-Noor, 2012). 그러나 학생과 학생의 상호작용의 경우에는 특별히 상호작용의 주도권을 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상호작용은 수평적이고 평등하게 이루어진다.

## 3) 간접적 상호작용

이 유형은 트위터 상에서 한 학생이 상호작용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교수와 다른 학생간의 상호작용이나 학생과 학생간의 상호작용을 관찰만할 때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이다. 즉, 상당수의 학생들은 트위터 상에서 교수와 학생 그리고 학생과 학생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때 이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게시한 트윗이나 답글 만을 관찰한다(Junco et al., 2011). 이러한 ‘간접적인 상호작용’도 참여자에게 교과목과 관련된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러나 간접적인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다른 구성원과의 상호작용에 적극 가담하지 않고 이를 관찰만 하기 때문에 트위터의 상호작용기능인 트윗, 리트윗, 답글, 마음에 들어요, 해시태그, 멘션, 비공개로 대화하기 그리고 팔로우 기능 등을 거의 활용하지 않고 있다.

#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트위터 상에서 교수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에 관한연구는 그동안 몇몇 학자들에 의해 시도되었다. 그 중에서도 던랩 등(Dunlap and Lowenthal, 2009)은 “트위터가 온라인상에서 교수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주장하면서 교수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증진을 위한 트위터의 효율적인 활용방안도 제시하였다. 또

한 그레이브스 등(Graves and Ziaeehezareribi, 2010)은 “교육에 있어서 트위터의 활용에 관한 연구”를 통해 트위터가 강좌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사실을 확인 하였다. 무디(Moody, 2010)는 “트위터를 활용한 학생과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에서 트위터와 같은 신기술의 활용이 학생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준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는 특히 “답글과 같은 트위터의 쌍방향 상호작용기술이 학생들에게 다른 구성원들이 올린 트윗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어느 강좌가 오프라인에서만 진행될 때 보다 학생들에게 더 많은 자신감 불어넣어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린달도 등(Rindaldo et al., 2011)은 “교육에 있어서 트위터 활용에 관한 그들의 연구”에서 교육에 있어서 트위터의 활용이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들은 학생들이 트위터 공간상에서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과 직접적으로 교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업계의 뉴스나 새로운 정보 등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트위터의 활용이 학생들의 수업 및 관련활동에 대한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이들은 또한 “트위터가 학생들의 구직활동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학생들은 트위터를 통해 미래의 고용주들과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들이 관심이 있는 분야에 대한 취업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트위터가 학생들이 일자리를 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엘라브스키 등(Elavsky et al., 2011)은 대규모 강좌에 있어서 트위터의 활용가능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그들의 연구결과는 트위터의 활용이 대규모 강좌의 효율성을 증진시킨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즉, 그들은 “대규모 강좌에 있어서 트위터의 활용은 학생들의 수업에의 참여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테일러 등(Taylor et al., 2011)은 학생들이 트위터와 같은 SNS를 이용한 상호작용에 능숙하기 때문에 그들과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기존의 매체보다는 이 신기술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들은 강의계획서에 담당교수의 트위터와 같은 SNS계정을 표시하여 이를 통한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을 적극 추진할 것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교수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트위터 등을 활용하자”는 제안만 하고 있을 뿐이지 구체적으로 트위터의 어떤 기능들을 활용할지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들의 연구는 특정 강좌와 관련된 상호작용에 있어서 ‘교수와 학생간의 상호작용’ 못지않게 중요한 ‘학생과 학생과의 상호작용’은 간과하고 있다.

폭스 등(Fox et al., 2011)은 트위터의 활용이 교수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을 증진

시키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연구하였다. 이들은 2개의 캠퍼스에 동시에 개설된 ‘약학경영론’강좌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트위터 공간상에서의 담당교수와 상호작용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이들의 연구결과는 트위터의 활용이 교수와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을 제고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트위터의 여러 가지 상호작용기능 중에서 트윗이나 리트윗과 같은 극히 일부분의 활용에 관심을 집중하였기 때문에 교수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실태의 정확한 분석 및 이의 제고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준코 등(Junco, Heiberger, and Loken, 2011)은 트위터의 활용이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를 증진시키고 학생들의 학력을 제고시키는 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를 실시하였다. 저자들은 트위터의 활용이 학생들이 강의실에서 담당교수에게 묻기에는 거북한 질문들을 학생들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사실을 확인 하였다. 또한 이들은 트위터의 활용이 학생들의 참여와 성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도 발견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저자들이 학생들이 상호작용을 위해 트위터의 어떤 기능을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교수와 학생 간에는 상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간과했다는 점은 이연구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한편 카센스 누어(Kassens-Noor, 2012)는 트위터의 활용이 학생들이 특정 강좌를 수강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연구하였다. 그는 학생들에게 수업과 관련된 트윗을 매일 작성하여 게시하도록 요청하였으며 또한 담당교수나 다른 학생이 올린 글에 대하여도 반드시 답글을 달도록 하였다. 그는 “트위터가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또한 수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라고 주장하였다. 폭스 등의 연구와는 달리 이 연구는 트윗이나 리트윗을 활용하여 학생과 학생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상호작용인 교수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을 간과했다는 점과 트위터의 상호작용기능들 중에서 트윗과 리트윗기능 만을 사용했다는 점은 이연구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볼 등(Ball et al., 2015)은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같은 다양한 SNS채널을 활용한 학생들의 학습활동에 대한 참여증진 방안을 제시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17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이들의 연구결과는 트위터와 같은 SNS의 활용이 교수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증진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 연구는 다양한 SNS채널의 활용이 교수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만했지 구체적으로 어떤 SNS채널의 어떤 상호작용기능을 활용할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았다.

지금까지 관련 선행연구들의 특징들을 검토하여본 결과 연구자는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이 여러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하여 저자는 위의 연구들에서 노정된 한계를 극복하고 교수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다음의 차별화를 시도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다른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트위터 상에서 교수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다른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트위터의 상호작용기능인 트윗, 리트윗, 답글, 마음에 들어요, 해시태그, 멘션, 비공개로 대화하기, 공유하기 그리고 팔로우 기능 등의 대부분을 연구대상에 포함시켰다.

셋째, 본 연구는 GIS강좌와 관련하여 트위터 상에서의 교수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비교하고 분석한 최초의 연구이다.

### Ⅲ. 연구 질문

본 연구의 목적의 달성을 위해 본 연구자는 트위터 상에서의 교수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이론 및 선행연구를 검토하였고 이를 근거로 다음의 연구 질문들을 설정 하였다.

연구질문1) 트윗 당 평균‘리트윗’수는 GIS강좌 트위터 계정 간에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질문2) 트윗 당 평균‘답글’수는 GIS강좌 트위터 계정 간에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질문3) 트윗 당 평균‘마음에 들어요’수는 GIS강좌 트위터 계정 간에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질문4) 트윗 당 평균‘해시태그’수는 GIS강좌 트위터 계정 간에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질문5) 트윗 당 평균‘멘션’수는 GIS강좌 트위터 계정 간에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질문6) 트윗 당 평균‘트윗 답아가기’수는 GIS강좌 트위터 계정 간에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질문7) 트윗 당 평균‘링크’수는 GIS강좌 트위터 계정 간에 차이를 보이는가?

## IV. 연구 방법

### 1. 조사설계

본 연구는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증진 위해 트위터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돈 보이스(Don Boyes: @donboyes)교수, 워렌 로버츠(Warren Roberts: @claremontGIS)교수, 짐 대처(Jim Thatcher: @alogicalfallacy)교수, 카스텐 케슬러(Casten Kessler: @castenkessler)교수, 그리고 알렉스 싱글톤(Alex Singleton: @alexsingleton)교수의 5개의 GIS강좌 트위터 계정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이들이 2016년 5월1일부터 2016년 6월30일까지 2개월 동안 자신들의 계정에 게시한 모든 트윗들을 기술하고 비교분석하였다.

### 2. 표본선정 및 자료수집

1) 표본을 선정하기 위해 본 연구는 구글검색창에 'GIS professor Twitter'란 검색어를 입력하여 검색하였다.

2) 검색된 GIS 담당교수의 트위터 계정 중에서 트윗활동이 다른 계정들보다 더 활발하고 또한 리트윗, 답글, 마음에 들어요, 해시태그, 멘션, 그리고 공유와 같은 상호작용기능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5개의 GIS강좌 계정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3) 본 연구는 이들이 2016년 5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2개월 동안 자신들의 계정에 게시한 모든 트윗들을 분석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였다.

### 3. 자료분석

5개의 표본으로부터 수집된 자료들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의 분석방법을 이용하였다.

#### 1) 기술적 분석

기술적 분석은 수집된 자료의 기본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GIS강좌 계정의 팔로워의 수, 팔로잉의 수, 트윗의 수, 그리고 리트윗의 수를 파악하기 위해 기술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 2) 비교분석

본 연구는 트위터의 상호작용기능 활용정도가 GIS강좌 트윗 계정간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비교하기 위해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본 연구는 트윗당 평균 '리트윗' 수, 트윗 당 평균 '답글' 수, 트윗 당 평균 '마음에 들어요' 수, 트윗 당 평균 '해시태그' 수, 트윗 당 평균 '멘션' 수, 트윗 당 평균 '트윗 답아가기' 수, 그리고 트윗 당 평균 '링크' 수 등이 GIS강좌 트윗 계정 간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비교하기 위해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 V. 분석결과

## 1. 기술적 분석

### 1) 팔로워와 팔로잉 수

트위터를 이용한 상호작용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팔로잉과 팔로우이다. 어느 트위터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를 팔로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게시한 트윗을 게시와 동시에 받아볼 수 없다. 그리고 트위터 사용자 상호간에 팔로잉이 되어 있지 않으면 '비공개로 대화하기', '쪽지로 공유하기' 등 일대일 상호작용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트위터 사용자간의 상호작용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트위터 사용자 상호간의 팔로잉이 필수적이다.

<표 1>은 GIS강좌 계정별 팔로워와 팔로잉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팔로워를 가장 많이 지니고 있는 GIS강좌 트위터 계정은 알렉스 싱글톤 교수의 트위터 계정이었고 가장 적은 팔로워를 지니고 있는 계정은 위렌 로버츠 교수의 계정이었다. <표 >에서 알 수 있는바와 같이 팔로워 수는 GIS강좌 계정 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표 1>은 팔로잉 수도 GIS강좌 계정 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팔로잉 수가 가장 많은 GIS강좌 계정은 알렉스 싱글톤 교수의 트위터 계정 이었고 팔로잉 수가 가장 적은 GIS강좌 계정은 카스텐 케슬러 교수의 트위터 계정이었다.



<표 1> GIS강좌 계정별 팔로워와 팔로잉 현황

(단위: 명)

교수명 팔로잉 팔로워 수	돈 보이스	워렌 로버츠	짐 대처	카스텐 케슬러	알렉스 싱글톤
팔로워 수	1,528	470	664	554	1,532
팔로잉 수	764	588	572	271	1,016

<표 1>을 통하여 우리는 팔로워 수와 팔로잉의 수가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팔로잉에 대한 팔로워의 비율을 이용하여 해당 트위터 계정의 상호작용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본 연구의 표본 중에서 짐 대처 교수의 트위터 계정과 워렌 로버츠의 트위터 계정이 상호작용의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 2) 트윗과 리트윗 수

트윗은 트위터를 이용한 상호작용의 근간이 되고 있다. 따라서 어느 트위터 사용자가 얼마나 많은 트윗을 자신의 계정에 게시하였는지 여부가 트위터를 이용한 상호작용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표 2>는 GIS담당 교수들이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을 위해 2016년 5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 게시한 트윗과 다른 사용자가 게시한 트윗을 재전송한 리트윗의 수를 보여주고 있다. <표 2>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트윗은 계정 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지만 리트윗의 수는 계정 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2> GIS강좌 계정별 트윗 및 리트윗 현황

(단위: 건)

교수명 트윗 리트윗 수	돈 보이스	워렌 로버츠	짐 대처	카스텐 케슬러	알렉스 싱글톤
트윗 수	26	41	33	20	40
리트윗 수	17	7	16	4	96

합 계	43	48	49	24	136
-----	----	----	----	----	-----

## 2. 비교분석

### 1) 트윗당 평균 리트윗 수

<표 3>은 GIS강좌 계정별 트윗당 평균 리트윗 수를 보여주고 있다. 트윗당 평균 리트윗 수는 교수와 학생간의 일대일 또는 일대다의 상호작용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 즉,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을 위해 교수가 자신의 계정에 트윗을 게시하게 되면 이글의 내용에 공감하는 학생들은 리트윗을 하거나 기타 트위터의 상호작용기능을 활용하여 이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보통 인기 있는 트윗의 경우에는 트윗당 평균 리트윗 수도 많고 기타 상호작용의 활용도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표 3> 트윗당 평균 리트윗수

(단위: 건)

교수 명 평균 리트윗 수	돈 보이스	워렌 로버츠	짐 대처	카스텐 케슬러	알렉스 싱글톤
평균 리트윗 수	1.33	0.33	1.27	1.57	3.25

<표 3>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트윗당 평균 리트윗의 수가 가장 많은 GIS강좌 트위터 계정은 알렉스 싱글톤 교수의 계정이었다고 트윗당 평균 리트윗의 수가 가장 적은 계정은 워렌 로버츠 교수의 계정이었다. 이표를 통하여 우리는 트윗당 평균 리트윗 수가 계정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2) 트윗당 평균 답글 수

<표 4>는 GIS강좌 계정별 트윗당 평균 답글 수를 보여주고 있다. 트위터를 이용한 상호작용에 있어서 답글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일단 GIS담당교수가 수업과 관련하여 트윗을 게시하게 되면 수강생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이글에 대하여 반

응을 보이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반응 중에서 가장 손쉽고 편리한 방법은 답글을 다는 것이다. 이러한 답글을 통하여 교수와 학생 간 그리고 학생과 학생 간에 활발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트윗당 평균 답글 수는 사용자간 상호작용의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다.

<표 4> 트윗당 평균 답글 수 (단위: 건)

교수명 평균 답글 수	돈 보이스	워렌 로버츠	짐 대처	카스텐 케슬러	알렉스 싱글톤
평균 답글 수	1.50	0.06	0.30	0.29	0.10

<표 4>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트윗당 평균 답글 수가 가장 많은 GIS강좌 트위터 계정은 돈 보이스교수의 계정이었다고 트윗당 평균 답글 수 가장 적은 계정은 워렌 로버츠교수의 트위터 계정이었다. 이표를 통하여 우리는 트윗당 평균 답글 수가 계정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지만 평균 답글 수 자체는 아주 적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 3) 트윗당 평균 마음에 들어요 수

<표 5>는 GIS강좌 계정별 트윗당 평균 마음에 들어요 수를 보여주고 있다. 트윗에 대한 답글과는 달리 트위터의 마음에 들어요 기능은 해당 트윗에 대한 자신의 선호여부만 간단히 표시할 수 있는 상호작용기능이기 때문에 교수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GIS담당교수가 수업과 관련하여 트윗을 자신의 계정에 게시하면 이글의 내용에 대하여 공감하는 학생들은 마음에 들어요 버튼을 클릭하여 이글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따라서 평균 마음에 들어요 수는 트위터 상에서 교수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또 다른 지표가 되고 있다.

<표 5>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트윗당 평균 마음에 들어요 수는 우리의 표본인 5개의 GIS강좌 계정 간에 큰 차이를 보였다. 트윗당 평균 마음에 들어요 수가 가장 많은 GIS강좌 트위터 계정은 알렉스 싱글톤 교수의 계정이었다고 트윗당 평균 마음에 들어요 수가 가장 적은 계정은 카스텐 케슬러교수의 트위터 계정이었다. <표5>

는 또한 트윗당 평균 마음에 들어요 수가 계정 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의 값이 모두 5미만이기 때문에 트위터의 마음에 들어요 기능을 활용한 교수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이 활성화되어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표 5> 트윗당 평균 마음에 들어요 수

(단위: 건)

교수 명	돈 보이스	워렌 로버츠	짐 대처	카스텐 케슬러	알렉스 싱글톤
평균 마음에 들어요 수	2.83	1.11	1.75	0.50	4.06

#### 4) 트윗당 평균 해시태그 수

<표 6> 트윗당 평균 해시태그 수

(단위: 건)

교수 명	돈 보이스	워렌 로버츠	짐 대처	카스텐 케슬러	알렉스 싱글톤
평균 해시태그 수	0.71	1.35	0.11	1.00	0.20

해시태그도 교수와 학생, 학생과 학생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GIS강좌와 관련하여 어느 사용자가 트윗을 게시할 때 해시태그를 사용하면 다른 사용자들은 해당 해시태그를 이용하여 손쉽게 트윗을 검색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트위터의 여러 가지 상호작용기능을 활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따라서 GIS담당교수나 학생들이 수업과 관련하여 트윗을 게시할 때 강좌전용 해시태그를 활용하면 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6>은 GIS강좌 계정별 트윗당 평균 해시태그 수를 보여주고 있다. 트윗당 평균 해시태그 수가 가장 많은 GIS강좌 트위터 계정은 워렌 로버츠 교수의 트위터 계정이었고 그것이 가장 적은 계정은 짐 대처 교수의 계정이었다. <표6>에서 알 수 있는바와 같이 트윗당 평균 해시태그 수는 GIS강좌 계정 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 5) 트윗당 평균 멘션 수

멘션도 트위터 상에서 교수와 학생 그리고 학생과 학생간의 상호작용을 위해 많이 이용되고 있는 상호작용기능이다. 어느 트위터 사용자가 트윗을 게시할 때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멘션하면 당사자는 답글이나 다른 형태의 상호작용기능을 이용하여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양자 간에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트윗당 평균 멘션 수도 한 트위터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들과 얼마나 상호작용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표 7> 트윗당 평균 멘션 수 (단위: 건)

교수명 평균 멘션 수	돈 보이스	워렌 로버츠	짐 대처	카스텐 케슬러	알렉스 싱글톤
평균 멘션 수	0.33	0.65	0.50	0.00	1.31

<표 7>은 GIS강좌 계정별 트윗당 평균 멘션 수를 보여주고 있다. 트윗당 평균 멘션 수가 가장 많은 GIS강좌 트위터 계정은 알렉스 싱글톤 교수의 트위터 계정이었고 그것이 가장 적은 계정은 카스텐 케슬러 교수의 계정이었다. 특히 카스텐 케슬러 교수는 트위터를 이용한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멘션을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수준이 다른 교수들에 비해 아주 낮음을 알 수 있다.

### 6) 트윗당 평균 트윗 답아가기 수

<표 8>은 GIS강좌 계정별 트윗당 평균 트윗 답아가기 수를 보여주고 있다. 트윗당 평균 트윗 답아가기 수는 교수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 트위터 상에서 사용자간에 상호작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자료나 정보에 대한 공유가 이루어져야한다. 트윗 답아가기는 트위터의 공유기능 중에 하나이다. 트위터 사용자는 자신이 공감하는 트윗을 발견하면 트윗 답아가기 기능을 이용하여 자신의 팔로워들과 해당 트윗을 공유할 수 있다. 이것은 형태는 다르지만 리트윗과 비슷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보통 인기 있는 트윗의 경우에는 트윗당

평균 트윗 답아가기 수 도 많고 기타 상호작용의 활용도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표 8>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트윗당 평균 트윗 답아가기 수가 가장 많은 GIS강좌 트위터 계정은 알렉스 싱글톤 교수의 계정이었다고 트윗당 평균 리트윗의 수가 가장 적은 계정은 카스텐 케슬러 교수의 계정이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트윗당 평균 트윗 답아가기 수는 모든 GIS강좌 트위터 계정에서 그리 높지 않아 계정 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8> 트윗당 평균 트윗 답아가기 수 (단위: 건)

교수명 트윗 답아가기 수	돈 보이스	워렌 로버츠	짐 대처	카스텐 케슬러	알렉스 싱글톤
평균 트윗 답아가기 수	0.38	0.29	0.20	0.16	0.47

### 7) 트윗당 평균 링크 수

트윗 링크 복사하기도 트위터의 공유기능 중에 하나이다. 트윗 답아가기 기능과 마찬가지로 트위터 사용자는 자신이 공감하는 트윗을 발견하면 트윗 링크 복사하기 기능을 이용하여 자신의 팔로워들과 해당 트윗을 공유할 수 있다. <표9>는 GIS강좌 계정별 트윗당 평균 링크 수를 보여주고 있다. 트윗당 평균 링크 수도 교수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

<표 9> 트윗당 평균 링크 수 (단위: 건)

교수명 평균 링크 수	돈 보이스	워렌 로버츠	짐 대처	카스텐 케슬러	알렉스 싱글톤
평균 링크 수	0.17	0.21	0.11	0.71	0.40

<표 9>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트윗당 평균 링크 수가 가장 많은 GIS강좌 트위터 계정은 카스텐 케슬러 교수의 계정이었다고 트윗당 평균 리트윗의 수가 가장

적은 계정은 짐 대처교수의 계정이었다. 특히 짐 대처교수는 트위터를 이용한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트윗 링크복사하기 기능을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수준이 다른 교수들에 비해 아주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트윗당 평균 링크 수는 GIS강좌 계정 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VI. 논 의

### 1. 연구질문 1

연구질문 1은 트윗 당 평균 리트윗 수가 GIS강좌 트위터 계정 간에 차이를 보이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표 3>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트윗당 평균 리트윗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GIS강좌 트위터 계정은 알렉스 싱글톤 교수의 계정(3.25건), 카스텐 케슬러 교수의 계정(1.57건), 그리고 돈 보이스 교수의 계정(1.33건)이었고 트윗당 평균 리트윗의 수가 적은 계정은 워렌 로버츠 교수의 계정(0.33건)으로 나타나 트윗 당 평균 리트윗 수가 GIS강좌 트윗 계정 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연구질문 1에 대하여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을 구할 수 있었다. 이러한 본연구의 결과는 선행연구결과들과도 일치하고 있다(Rindaldo et al., 2011).

리트윗은 어느 트위터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가 게시한 트윗을 자신의 팔로워들과 공유하려할 때 그 트윗을 그들에게 재전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 본인이 작성하여 게시하는 트윗보다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호작용기능이다. 그리하여 리트윗은 트위터를 이용한 교수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표 3>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의 표본 5곳 모두에서 트윗 당 평균 리트윗 수는 4.0미만으로 나타나 교수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을 위한 리트윗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트위터 상에서 교수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트위터의 기본인 트윗과 리트윗활동의 활성화가 급선무이며 담당교수는 강의시간이나 면담시간을 통해 이를 적극 홍보해야만 한다.

## 2. 연구질문 2

연구질문 2은 트윗 당 평균 답글 수가 GIS강좌 트위터 계정 간에 차이를 보이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었다. <표4>가 보여주듯이 트윗당 평균 답글 수가 가장 많은 GIS강좌 트위터 계정은 돈 보이스 교수의 계정(1.50건)이었고 트윗당 평균 답글 수 적은 계정들은 워렌 로버츠교수의 트위터 계정(0.06건), 알렉스 싱글톤 교수의 트위터 계정(0.10건), 카스텐 케슬러 교수의 트위터 계정(0.29건) 그리고 짐 대처 교수의 트위터 계정(0.30)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본 연구는 트윗당 평균 답글 수가 계정 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결과들과도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다(Kassens-Noor, 2012).

트위터를 이용한 교수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답글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담당교수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트윗을 게시하게 되면 학생들은 리트윗에 대하여 여러 가지 형태로 반응을 보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반응 중에서 편리한 방법은 해당 트윗에 답글을 다는 것이다. 이러한 답글을 통하여 교수와 학생 간 그리고 학생과 학생 간에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나 <표 4>가 보여주듯이 우리의 표본 5곳 모두에서 트윗 당 평균 답글 수는 1.5미만으로 적게 나타나 교수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의 근간을 이루는 답글을 통한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답글을 통한 교수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담당교수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즉 담당교수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가능한 한 유익한 내용의 트윗을 많이 게시해야할 뿐만 아니라 또한 수업시간이나 상담시간을 통하여 트위터를 통한 상호작용에 대하여 적극홍보하고 지도해야한다. 이러한 교수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은 오프라인교육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 3. 연구질문 3

연구질문 3은 트윗 당 평균 마음에 들어요 수가 GIS강좌 트위터 계정 간에 차이를 보이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었다. <표5>가 보여주듯이 트윗당 평균 마음에 들어요 수가 많은 GIS강좌 트위터 계정들은 알렉스 싱글톤 교수의 계정(4.06건)과 돈 보이스 교수의 계정(2.83건)이었고 트윗당 평균 마음에 들어요 수가 적은 계정들은 카스텐 케슬러 교수의 계정(0.50건), 워렌 로버츠 교수의 트위터 계정(1.11건), 그리고 짐 대



처 교수의 트위터 계정(1.75건)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본 연구자는 트윗당 평균 마음에 들어요 수가 계정 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선행연구결과들과도 일치하고 있다(Taylor et al., 2011).

트위터의 마음에 들어요 기능도 교수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이다(Sutcliffe et al., 2011). 이 기능은 트위터의 다른 상호작용 기능과는 달리 어느 트위터 사용자가 게시한 트윗에 대하여 글의 하단에 있는 ‘마음에 들어요’버튼을 눌러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상호작용기능이다. 그러나 <표 5>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의 표본모두에서 트윗 당 평균 마음에 들어요 수는 4.06건 이하로 낮게 나타나 트위터의 상호작용기능 중에서 가장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마음에 들어요 기능을 통한 상호작용활동이 저조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기능을 이용한 상호작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의 참여와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즉 담당교수는 ‘강의계획서’에 트위터를 이용한 상호작용방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술하고 이를 강의 시간에 학생들에게 이를 주지시켜야만 한다. 또한 학생들도 수업과 관련하여 구성원들이 게시한 트윗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여야만 한다.

#### 4. 연구 질문 4

연구질문 4는 트윗 당 평균 해시태그 수가 GIS강좌 트위터 계정 간에 차이를 보이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었다. <표6>을 통하여 알 수 있는바와 같이 트윗당 평균 해시태그 수가 많은 GIS강좌 트위터 계정들은 워렌 로버츠 교수의 계정(1.35건)과 카스텐 게슬러 교수의 계정(1.00건)이었고 트윗당 평균 해시태그 수가 적은 계정들은 알렉스 싱글톤 교수의 계정(0.20건), 짐 대처 교수의 트위터 계정(0.11건)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트윗당 평균해시태그 수가 계정 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본 연구자는 연구질문4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을 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결과들과도 일치하고 있다(Kassens-Noor, 2012).

해시태그도 구성원 간 상호작용을 촉진시키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구성원들이 강좌와 관련하여 트윗을 게시할 때 해시태그를 사용하면 다른 구성원들은 해당 해시태그를 이용하여 관련 자료들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으며 또한 이 해시태그를 중심으로 구성원 간 활발한 상호작용도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표 6>이 보여주듯이 우리의 표본 5곳 모두에서 트윗 당 평균 해시태그 수는 1.35건 미만으로 아주

적게 나타나 해시태그를 통한 교수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표본 5곳 모두에서 강좌전용 해시태그도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이 또한 트위터를 이용한 교수와 학생간 상호작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따라서 해시태그를 통한 상호작용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담당교수가 강의계획서에 GIS강좌전용 해시태그를 공지하고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앞으로 트윗을 게시할 때 이를 활용할 것을 적극적으로 지도해야만 한다.

## 5. 연구질문 5

연구질문 5는 트윗 당 평균 멘션 수가 GIS강좌 트위터 계정간에 차이를 보이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표 7>이 보여주듯이 트윗당 평균 멘션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GIS강좌 트위터 계정은 알렉스 싱글톤 교수의 계정(1.31건) 이었고 트윗당 평균 멘션 수가 적은 GIS강좌 트위터 계정은 카스텐 케슬러 교수의 계정(0.00건), 돈 보이스 교수의 계정(0.33건), 짐 대처 교수의 계정(0.50건), 그리고 워렌 로버츠 교수의 계정(0.65건)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본 연구자는 트윗당 평균 멘션 수가 계정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것은 선행연구결과들과도 일치하고 있다(Taylor et al., 2011).

멘션은 트위터 상에서 구성원 간 상호작용을 위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상호작용기능이다. 트위터 상에서 어느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와 공개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트윗에서 상대방의 아이디를 멘션해야만 한다. 그러나 <표 7>이 보여주듯이 우리의 표본 5곳 모두에서 트윗 당 평균 멘션 수는 1.31건 미만으로 아주 적게 나타나 멘션을 통한 교수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멘션은 트위터를 활용한 상호작용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처럼 낮은 수치의 평균 멘션 수는 트위터를 이용한 전반적인 상호작용을 가로막는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트위터를 이용한 교수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담당교수가 트위터를 활용한 구성원간 상호작용에 있어서 멘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구성원들이 트윗을 게시할 때 이를 적극 활용하도록 지도해야만 한다.

## 6. 연구질문 6

연구질문 6은 트윗 당 평균 트윗 답아가기 수가 GIS강좌 트위터 계정 간에 차이를 보이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었다. 트윗당 평균 트윗 답아가기 수는 알렉스 싱글톤 교수의 계정(0.47건), 돈 보이스 교수의 계정(0.38건), 워렌 로버츠 교수의 계정(0.29건), 짐 대처 교수의 계정(0.20건), 그리고 카스텐 케슬러 교수의 계정(0.16건)으로 나타나 계정 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표 8).

트위터를 이용한 상호작용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구성원들 모두가 트위터를 이용한 소통에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 오프라인에서의 상호작용과는 달리 트위터 공간상에서의 상호작용은 구성원 간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리하여 담당교수가 교과목과 관련된 유의한 정보를 트윗 답아가기 기능을 활용하여 학생들과 공유한다면 많은 학생들이 트위터를 활용한 상호작용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 7. 연구질문 7

연구질문 7은 트윗 당 평균 링크 수가 GIS강좌 트위터 계정 간에 차이를 보이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표 9>가 보여주듯이 트윗당 평균 링크 수가 가장 많은 GIS강좌 트위터 계정은 카스텐 케슬러 교수의 계정(0.71건) 이었고 트윗당 평균 멘션 수가 적은 GIS강좌 트위터 계정은 짐 대처교수의 계정(0.11건), 돈 보이스 교수의 계정(0.17건), 그리고 워렌 로버츠 교수의 계정(0.21건)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트윗당 평균 링크 수가 계정 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연구질문 7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을 구할 수 있었다.

트위터를 활용한 상호작용의 가장 큰 장점은 140자 이내로 트윗을 게시하여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트윗의 글자 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트위터를 이용한 상호작용에서는 깊이 있는 소통이 어려울 수 가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트위터의 상호작용기능이 바로 링크기능이다. 그러나 <표 9>가 보여주듯이 우리의 표본 5곳 모두에서 트윗 당 평균 링크 수는 0.71건 미만으로 아주 적게 나타나 링크를 통한 구성원 간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링크를 이용한 정보공유는 단문위주의 트위터를 이용한 교수와 학생 간 상호작용의 단점을 극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담당교수는

본인이 트윗을 게시할 때도 링크를 적극 활용해야 할뿐만 아니라 또한 구성원들에게도 이의 활용을 적극 권장해야 한다.

## VII.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GIS담당교수들이 학생들과 상호작용을 위해 트위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기술하고 비교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트위터를 활용한 교수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이론과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였고, 이를 근거로 트윗 당 평균 리트윗 수, 트윗 당 평균 답글 수, 트윗 당 평균 마음에 들어요 수, 트윗 당 평균 해시태그 수, 트윗 당 평균 멘션 수, 트윗 당 평균 트윗 답아가기 수, 그리고 트윗 당 평균 링크 수에 관한 7개의 연구질문을 설정하여 이에 대한 답을 구하였다. 분석의 결과 본 연구는 7개의 연구질문 중 6개(트윗 당 평균 리트윗 수, 트윗 당 평균 답글 수, 트윗 당 평균 마음에 들어요 수, 트윗 당 평균 해시태그 수, 트윗 당 평균 멘션 수, 트윗 당 평균 링크 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을 얻을 수 있었지만 트윗 당 평균 트윗 답아가기 수에 관한 연구질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답을 얻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트위터 상에서 교수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정도가 트위터 계정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트윗 당 평균 리트윗 수, 트윗 당 평균 답글 수, 트윗 당 평균 마음에 들어요 수, 트윗 당 평균 해시태그 수, 트윗 당 평균 멘션 수, 트윗 당 평균 트윗 답아가기 수, 그리고 트윗 당 평균 링크 수 등이 아주 적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트위터 상에서의 교수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은 대부분이 교수주도형이었으며 수평적 상호작용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트위터 상의 교수와 학생들 간 상호작용의 핵심인 일대다의 상호작용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의해결을 위해 본 연구는 담당교수의 노력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함을 강조하였다. 즉 담당교수가 담당교과목과 관련하여 가능한 한 많은 트윗을 게시하고 또한 강의계획서나 수업시간을 활용해 상호작용기능의 활용방법을 적극 지도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이 지니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교수와 학생간의 상호작용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위해 차별화를 시도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다른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트위터의 상호작용기능인 트윗, 리트윗, 답글, 마음에 들어요, 해시태그,

멘션, 비공개로 대화하기, 공유하기 그리고 팔로우 기능 등의 대부분을 연구대상에 포함시켜 교수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려고 노력하였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는 다른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트위터 상에서 교수와 학생간의 일대일, 그리고 일대다의 상호작용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연구의 결과는 트위터 상에서 교수와 학생 간 상호작용실태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교수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의 유형 중 답글이나 멘션을 통한 일대일 또는 일대다의 상호작용만을 파악했을 뿐 보다 더 중요한 상호작용기능인 비공개로 대화하기를 통한 일대일, 일대다, 그리고 다대다의 상호작용은 파악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한계는 향후 설문조사방법을 활용한다면 어느 정도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2016년 5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 2개월간 게시된 트윗만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트위터 상에서 교수와 학생간의 정확한 상호작용실태를 조사하기가 어려웠다. 이러한 한계는 빅데이터 분석기법의 활용으로 극복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 표본수가 너무 적다는 점도 본연구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빅데이터 분석기법과 같은 특별한 통계분석기법을 활용한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도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을 위해 GIS를 활용하고 있는 교수수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는 많은 트위터 계정을 표본에 포함시킬 수 없었다. 이 또한 빅데이터 분석기법의 활용으로 극복이 가능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Ball, A. S., Grewal, D., Mills, A., & Ottley, D.,(2015). Engaging Students With Social Media. *Journal of Marketing Education*, 1-14.
- Boyes, D. (2016). Twitter Account, Retrieved July 13, 2016 from <https://twitter.com/donboyes>.
- Dunlap, J. C., & Lowenthal, P. R. (2009). Tweeting the night away: Using Twitter to enhance social presence.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Education*, 20(2), 129-135.
- Elavsky, M. C., Mislán, C., & Elavsky, S. (2011). When talking less is more: Exploring outcomes of Twitter usage in the large lecture hall. *Learning, Media and Technology*, 36, 215-233.
- Ferriter, B. (2009). Taking the digital plunge. *Educational Leadership*, 67(1), 85-86.
- Fox B.I., & Varadarajan R. (2011). Technology in Pharmacy Education: Use of Twitter to Encourage Interaction in a Multi-campus Pharmacy Management Course. *American Journal of Pharmaceutical Education*, 75(5), Article 88.
- Graves, I., & Ziaeehezarjeribi, Y. (2010). Microblogging with university students 24/7: Twitter comes of age. In M. Simonson (Ed.), *2010 Annual proceedings of the 33rd Annual Convention of the AECT: Practice of Educational Communications and Technology* (Vol.2, 122-128). Bloomington, IN: Association of Educational Communications and Technology.
- Guo, C., and Saxton G. D. (2014), Tweeting social change: how social media are changing nonprofit advocacy.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43(1), 57-79.
- Junco, R. (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frequency of Facebook use, participation in Facebook activities, and student engagement. *Computers & Education*, 58, 162-171.
- Junco, R., Elavsky, C. M., & Heiberger, G. (2013). Putting twitter to the

- test: Assessing outcomes for student collaboration, engagement and success.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44, 273-287.
- Junco, R., Heiberger, G. & Loken, E. (2011) 'The effect of Twitter on college student engagement and grades', *Journal of Computer Assisted Learning*, vol. 27, no. 2, 119-132.
- Kassens-Noor, E. (2012). Twitter as a teaching practice to enhance active and informal learning in higher education: The case of sustainable tweets. *Active Learning in Higher Education*, 13(1), 9-21.
- Kessler, C. (2016). Twitter Account, Retrieved July 16, 2016 from <https://twitter.com/carstenkessler>.
- Kim, Y.K. (2015). A study on how to use twitter hashtags in real estate marketing. *Journal of the Korean Cadastral Society*, 31(1), 111-126.
- Lowe, B., & Laffey, D. (2011). Is Twitter for the birds? Using Twitter to enhance student learning in a marketing course. *Journal of Marketing Education*, 33(2), 183-192.
- Mao, J. (2014). Social media for learning: A mixed methods study on high school students' technology affordances and perspective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33, 213-223.
- McCorkle, D. E., & McCorkle, Y. L. (2012). Using LinkedIn in the marketing classroom: Exploratory insights and recommendations for teaching social media/networking. *Marketing Education Review*, 22, 157-166.
- Mergel, I. (2013). A framework for interpreting social media interactions in the public sector. *Government Information Quarterly*, 30(4), 327-334.
- Moody, M. (2010). Teaching Twitter and beyond: Tips for incorporating social media in traditional courses. *Journal of Magazine & New Media Research*, O'Connor, A., Jackson, L., Goldsmith, L., & Skirton, H. (2013). Can I get a retweet please? Health research recruitment and the Twitterspher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70(3), 599-609. 11(2), 1-9.
- Rinaldo, S. B., Tapp, S., & Laverie, D. A. (2011). Learning by tweeting: Using Twitter as a pedagogical tool. *Journal of Marketing Education*, 33(2), 193-203.

- Roberts, W. (2016). Twitter Account, Retrieved July 16, 2016 from <https://twitter.com/claremontGIS>.
- Sanderson, J. (2008). You are the type of person that children should look up to as a hero: parasocial interaction on 38pitches.com. *International Journal of Sport Communication*, 1(3), 337-360.
- Savage, M. E., & Spence, P. R. (2014). Will you listen? an examination of parasocial interaction and credibility in radio. *Journal of Radio & Audio Media*, 21(1), 3-19.
- Singleton, A. (2016). Twitter Account, Retrieved July 9, 2016 from <https://twitter.com/alexsingleton>.
- Small, T. A. (2011). What the hashtag? A content analysis of Canadian politics on Twitter. *Information, Communication & Society*, 14, 872-895.
- Spence, P. R., Lachlan, K. A., Edwards, A., & Edwards, C. (2016). Tweeting fast matters, but only if I think about it: information updates on social media. *Communication Quarterly*, 1-17.
- Sutcliffe, A.G., Gonzalez, V., Binder, J., and Nevarez, G. (2011). Social Mediating Technologies: Social Affordances and Functionalities.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Computer Interaction*, 27(1), 1037-1049.
- Taylor, S. A., Hunter, G. L., Melton, H., & Goodwin, S. A. (2011). Student engagement and marketing classes. *Journal of Marketing Education*, 33(1), 73-92.
- Thatcher, J. (2016). Twitter Account, Retrieved July 11, 2016 from <https://twitter.com/allogicalfallacy>.
- Tuten, T., & Marks, M. (2012). The adoption of social media as educational technology among marketing educators. *Marketing Education Review*, 22, 201-214.
- Weyant, L. E., & Gardner, C. (2011). Wikis and podcasts: An application in undergraduate management education. *Academy of Educational Leadership Journal*, 15(3), 131-142.
- Williams, D. L., Crittenden, V. L., Keo, T., & McCarty, P. (2012). The use of social media: An exploratory study of usage among digital natives.



*Journal of Public Affairs*, 12, 127-136.

Young, M. R., Klemz, B. R., & Murphy, J. W. (2003). Enhancing learning outcomes: The effects of instructional technology, learning styles, instructional methods, and student behavior. *Journal of Marketing Education*, 25(2), 130-142.

Young, M. R. (2014). Integrating quality matters into hybrid course design: A principles of marketing case study. *Journal of Marketing Education*, 36, 233-243.

# A Study on the Interactions between Professors and Students on Twitter

## With Special References to GIS Courses

Yun-Ki Kim

Department of Land Management

Cheongju University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scribe and compare GIS professors' Twitter usage in their communication with students. Reviewing literature and theory, this study developed seven research questions concerning the interactive functions of Twitter. This study selected five GIS professors' Twitter accounts as its sample in order to find the answers to those research questions because they tried to post more good quality tweets than others. All the tweets that were posted between May 1, 2016 and June 30, 2016 by five GIS professors were collected and examined. This study conducted both a descriptive analysis and a comparative analysis for the collected data.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d that there were some differences in the average number of retweets per tweet, the average number of replies per tweet, the average number of likes per tweet, the average number of hashtags per tweet, the average number of mentions per tweet, and the average number of links per tweet that GIS professors use in their communication with students. However,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re was little variation in the average number of embed tweets per tweet. Therefore, the answers to six research questions on the interactive functions of Twitter proved to be positive, and the answer to the remainder turned out to be negative. Unlike previous studies, this study focused on one to one interaction between professor and student, and one to many interaction between professor and students on Twitter. Therefore,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help us grasp the current state of interaction between professor and students on Twitter. This study has some limitations such as the exclusion of direct message from analysis, and small data size. Finally, this study offered some recommendation for future research.

Key words: professor, student, interaction, Twitter, tweet, retweet, reply, like, hashtags, mention, link, embed tweet

논문 투고일 : 2016. 08. 18

심사개시일 :

게재확정일 :



한국사회과학연구  
제38권 1호  
2016년 8월호

# 사례관리업무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인식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나 동 석

## 국 문 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사례관리업무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인식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위하여 대상자는 충청북도에 소재한 사회복지관련 기관과 시설에서 사례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 181명이다. 연구방법은 대상자를 사회복지사의 사례관리수행 정도에 따라 상중하의 3집단으로 나누었다. 이 중에서 '중집단'을 제외하고 '상집단'과 '하집단'에 따라 사례관리업무에 대한 수행범위, 기관지원정도, 사례관리담당자의 역할 그리고 사례관리수행에 대한 인식의 평균차이를 분석하였다. 주요한 결과를 보면, 사회복지사들은 사례관리수행의 사정단계에서 다차원적인 사정도구를 활용하지 못하고 평가단계에서 욕구재사정이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자원확보에 대한 관리자의 역량, 지역자원의 네트워크구축, 서비스전달체계에 있어서 '상집단'이 '하집단'보다 인식의 수준이 높지만, 대상자선정에 있어서는 '하집단'이 '상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하였고, 인식의 제고를 위한 제안을 제시하였으며 앞으로의 후속적인 연구과제들을 제언하였다.

\* 이 논문은 2015-2016학년도에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가 지원한 학술연구조성비(특별연구과제)에 의해 연구되었음.

주제어: 사례관리, 사례관리수행, 사회복지사의 인식

## I. 연구의 필요성

최근 들어 사회복지관련 시설이나 기관에서 사례관리업무는 대부분 활용된다. 클라이언트의 복합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실천영역에서 평가항목으로 다루어졌고, 민간영역 뿐만 아니라 공공영역에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그러나 실천현장에서는 사례관리에 대한 관점을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어 다양한 이론과 모델에 따라 접근하고 있고, 사회복지사는 사례관리에 대한 수행과 방법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정연정, 2014). 하지만 사례관리의 성공여부는 사회복지사 개인의 수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김보영, 2013), 다양한 대상자와 그들의 변화를 위한 목적과 목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실에 대하여 사례관리수행은 전문적이고 실천적인 지침이 부재한다고 지적해 왔었다(홍선미, 2006; 정순돌, 2008). 즉, 사례관리 수행에 대하여 실무자의 주관적 인식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반증하여 사례관리 업무가 이행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사례관리수행에 대한 인식의 연구를 보면 최근 들어 기관환경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인식이 사례관리수행에 미치는 영향(전미애, 2012), 위버만의 객관적 해석학을 중심으로 한 사례관리자의 사례관리 인식에 관한 재구성(남화수, 2013), 사례관리과정에 대한 인식과 수행(김선주·김교정, 2013), 사례관리 수행능력과 역할인식과의 관계(손영주, 2014) 등이 연구되었으며 대체적으로 인식에 따라 사례관리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리가 사례관리수행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인식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은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사례관리업무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인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성요소를 4가지 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사례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범위를 어느 정도로 설정해야 한다고 인식하는가, 이러한 수행에 대하여 기관의 지원은 어느 정도라고 인식하는가, 사례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그리고 사례관리수행에 대하여 다양한 측면에서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관리업무의 수행범위에 대한 인식은 사례관리 담당자가 대상자와는 어떻게 관계를 설정하는가,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의 자원은 확보되어 있는가 그리고 평가를 위해서 실적달성을 고려하는가에 대하여 인식의 범위를 파악하

고자 한다. 대상자는 개인인가 혹은 가족인가에 따라 다를 것이고, 가족이라 하더라도 가족을 어떤 단위로 이해할 것인가에 따라 다를 것이다. 가족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다룬 김성천·박지영(2012)은 가족중심 사례관리의 초점단위로 가족구성원으로서의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적 성격을 지닌 한 단위로서 ‘전체로서의 가족’이 주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사회복지사가 대상자와는 차별이나 낙인없는 관계를 유지해야한다고 하였지만 대상자의 인적환경에 따라 다를 수도 있을 것이다. 가정폭력전문상담원의 사례관리수행에서는 대상자들을 이해하는 전문성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최세민, 2011). 대상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자원확보가 영향을 미치며(김미정·이경은·장덕희, 2012), 복지관 평가에서도 사례관리를 평가하는 지표가 있으므로 수행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김상곤·김승용(2012). 즉, 평가내용이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는 대상자인 경우에는 사례관리의 수행범위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사례관리업무에 대하여 기관이 지원하는 정도에 대한 인식은 사례관리업무에 대한 담당자의 수, 교육지원 그리고 슈퍼비전 제공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파악하고자 한다.

담당자의 수는 기관정책의 일환으로 따르게 되지만 일반적으로 사례관리수행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 담당자의 수가 많고 적음을 보여준다. 전미애·김소영(2012)은 사례관리수행에 있어서 행정적 지지수단의 하나로 담당자의 수를 파악하였고 사례관리수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였다. 결과적으로 사례관리수행의 비중이 낮아졌고 외부로의 교육경험에도 적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례관리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은 학교의 교과과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사례관리를 시작한 초기에 사례관리에 대한 교육부족은 사례관리 사회복지사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요인으로 작용하여 역할수행에 대한 어려움을 보였다(이준상, 2003; 차민호·유미예·서인해, 2006).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분야별로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정신보건영역에서도 교육의 횟수가 사례관리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민소영·임선영, 2014), 사례관리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개발되었다(김교정, 2014). 이와 같은 관련 교육도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면서 사례관리 팀과 기관 내에서의 슈퍼비전에 따라서도 인식이 달라져 사례관리수행에서 슈퍼비전의 영향을 많은 연구자들이 강조해 왔다(도광조, 2010; 백인희, 2013; 김영인, 2015). 또한 슈퍼비전의 질에 따라 인식의 차이를 가져오고 사례관리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정민, 2016). 슈퍼바이저가 슈퍼비전에 관한 효과적인 요

소로써 슈퍼비전 관계, 상담기술개발, 피드백, 슈퍼바이저의 특성 및 역량을 지각하여 제공한다면 슈퍼비전의 성과를 올릴 수 있다고 하였다(소수연·장성숙, 2011).

사례관리 담당자에 대한 역할에 대한 인식은 담당자가 사례관리수행에 대한 자신의 지식과 기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례관리수행에 대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노력하는가 그리고 사례관리업무는 기관에서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업무인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역할인식은 역할을 맡은 사람이 수행해야할 역할을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말하는 것으로 역할수행자는 업무와 관련된 역할의 내용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정확한 역할인식은 적응력과 수행력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손영주, 2014). 보다 정확한 역할로써 사례관리수행에 대한 지식과 기술은 업무인식에 따른 업무수행능력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은 사례관리 담당자의 역할수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최세민, 2011).

사례관리수행의 단계에 따라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의 요소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즉, 접수대상자는 무조건 선정하는가, 지역사회 자원은 사례관리자의 역량에 달려있는가, 지역사회자원을 연계하기 위해서는 자원 간의 네트워크구축이 필요한가 그리고 사례관리는 서비스전달체계의 과정인가에 대하여 파악하고자 한다.

사례관리의 대상자 선정기준은 모호하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대상자의 선정을 양적으로 할당된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사항을 살펴보면 기관 간의 협력은 강조되지만 사실상 경쟁구도에 있는 점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최정호·남성진·이재모(2012)가 ‘사례관리의 인식 혼란 연구’에서 재가노인시설장 8명에게 대상자 선정에 관한 질적 연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사례관리에 있어서 대상자 선정부터 인식의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에 사례관리수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결론짓고 있다.

지역사회의 자원은 사회복지사가 대상자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자원을 찾아낼 것이고 내부의 규범에 따라 자원을 교환하려는 동기가 높기 때문에 자원의 접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자원 간에 공식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기관이 지역사회자원 간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속성으로 네트워크의 구축, 유지와 발전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한상미, 2011).

사례관리가 사회복지실천인가 혹은 사회복지전달체계인가에 대해서도 논의의 소지가 많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에서는 전달체제로 보는 반면에(함철호, 2013), 민간기관에서는 사회복지실천으로 간주하는 경향이다(최희철, 2013). 그러나 통합사례관리가 등장한 이후에는 민간기관에서도 사례관리를 하나의 전달체제로 이해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조추용, 2014). 이와 같이 사회복지환경의 변화에 따른 개념의 혼란 속에 인식의 차이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례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가 사례관리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따라 업무에 대한 최종적인 효과와 효율에 반영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목적에서 출발한 본 연구는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 II. 조사방법

###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충북지역에서 사회복지사가 수행하는 사례관리의 실태를 중심으로 조사하는 본 연구는 사회복지관련 시설과 기관에서 사례관리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 당시의 현재를 중심으로 사례관리 업무를 전담하거나, 다른 업무와 겸직하더라도 사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면 조사대상에 포함하였다. 조사방법은 설문지를 제작하고 방문조사와 우편조사를 병행하였다. 조사자가 사회복지관련 시설과 기관에 직접 유선으로 연락 후 조사에 대한 협조와 동의를 구하였다. 설문조사를 도와줄 협조자를 선정하여 조사를 요청하였다.

조사분야는 현재 담당하고 있는 사례관리에 대한 수행도와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조사는 2014. 11. 10 ~ 11. 28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최종적으로 181명이 분석대상이 되었다.

### 2. 조사도구

조사도구로는 우선 사례관리의 수행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도광조(2010)가 사용한 사례관리수행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본래 Connors(1986)가 간호사들의 사례관리 교육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역량있는 사례관리자의 행위 사정도구(Competency Behaviors of the Case Manager Instrument-CBCMI)' 이고



하나의 척도로 사용할 수 있다. 간호사를 중심으로 한 사례관리 수행을 파악하는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실천의 다양한 현장에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사례관리 수행을 평가할 수 있도록 단순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였다. 다양한 유형의 기관에서 종사하는 사례관리자들과 회의를 거쳐 전체적으로 20문항으로 축약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 수행단계에 따라 살펴보면 기관에의 접근 및 인테이크 3문항, 사정 5문항, 개입계획과 목표설정 3문항, 개입계획 실행 3문항, 점검 3문항, 평가 3문항 등이다. 각각의 문항들에 대한 응답은 ‘전혀 안한다’ 1점에서 ‘항상 한다’ 5점까지의 리커트형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 3. 분석방법

자료분석은 SPSS 20.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 평균비교 등을 활용하였다. 사례관리수행의 단계에 따라 응답자의 분포정도를 3가지의 수준으로 즉, ‘상집단’(33%), ‘중집단’(33.3%), ‘하집단’(33.3%)으로 나누고, 집단 간의 평균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집단 간의 경계를 분명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중집단’을 제외하였다. 즉, 사례관리 수행을 잘 수행한다고 판단되는 ‘상집단’과 잘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하집단’으로 나누었다. 사회복지사의 사례관리 업무환경과 수행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통계분석은 상하집단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여 ‘상집단’과 ‘하집단’ 간의 평균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 Ⅲ. 조사결과와 분석

### 1. 조사대상자의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성’이 40.9%(74명)이고 ‘여성’이 59.1%(107명)이고, 연령별로는 ‘29세 이하’가 48.6%(88명), ‘30~39세 이하’가 35.9%(65명)로 전체의 84.5%(153명)가 20~30대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31.4세이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및 업무 특성

		빈도	비율
성별	남자	74	40.9
	여자	107	59.1
연령	29세 이하	88	48.6
	30~39세 이하	65	35.9
	40세 이상	28	15.5
사례관리근무경력	1년 미만	31	17.3
	1년~2년 미만	72	40.2
	2년~3년 미만	46	25.7
	3년	30	16.8
담당사례수	1~10 사례	84	48.3
	11~20 사례	31	17.8
	21~30 사례	16	9.2
	31 사례 이상	43	24.7

조사대상자의 사례관리업무를 담당한 경력을 보면 ‘1년~2년 미만’이 40.2%(72명)로 가장 많고, ‘2년~3년 미만’이 25.7%(46명)로 전체 응답자의 83.2%(149명)가 3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 2. 사례관리수행 실태

사례관리자의 사례관리의 단계별 수행정도에 대하여 수행단계에 따라 살펴보았다. ‘인테이크’, ‘사정’, ‘개입계획’, ‘개입실행’, ‘점검’ 그리고 ‘평가’에 따라 살펴보았다. 조사결과를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례관리 수행정도는 전체적으로 평균 3.83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단계별로 보면 ‘인테이크’ 4.01의 수행정도로 나타나 전체 단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개입계획’, ‘개입실행’, ‘점검’, ‘사정’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가 단계는 평균 3.56으로 다른 단계에 비해 낮은 수행정도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볼 때, 사례관리 수행의 단계에서 사정단계와 평가단계가 낮게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대상자의 사례관리를 위해서 사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나아가 사례관리업무에 대한 평가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알 수 있다. 그리고 개입계획이 잘 이루어졌다는 것은 사정과 관련지어 볼 때, 사정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가늠하지 않고 계획이 이루어지고 실행에 옮겨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

**<표 2> 사례관리 수행의 단계별 기술통계**

	문항 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20	3.83	0.482
인테이크	3	4.01	0.616
사정	5	3.74	0.592
개입계획	3	3.97	0.625
개입실행	3	3.89	0.618
점검	3	3.85	0.604
평가	3	3.56	0.634

구체적 항목별로 보면 <표 3>과 같다. 인테이크 단계에서 ‘대상자로부터 서비스 제공동의서를 받는다’는 응답이 4.40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일반적인 계약관계를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의 과정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이어서 ‘인테이크 과정에 대상자 참여가 이루어진다’는 응답이 평균 3.99로 나타난 것은 어느 정도의 대상자참여를 파악할 수 있으나 어느 정도는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대상자의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느냐에 대한 응답으로 평균 3.63은 다양성이 부족함을 알 수 있어 대상자발굴과정에서는 다소 소극적인 양상을 지녔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정단계에서는 ‘대상자의 공식적 지원체계 파악’, ‘비공식적 지원체계 파악’, 그리고 ‘지역사회자원 파악’이 3.76~3.96으로 높은 편이고, ‘대상자의 신체, 심리, 사회적 기능 평가’가 3.86으로 높았다. 그러나 ‘다차원적인 사정도구 사용’에 있어서 3.29로 낮은 편에 속하므로 사례관리자들은 사정과정에서 다양한 사정도구를 사용하기를 원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개입계획단계에서는 하위항목을 이루는 ‘개별화된 서비스 수립, 작성, 기록’, ‘측정 가능한 목표수립’, ‘서비스전달 및 우선순위 결정’에서 모두 3.97의 같은 응답을 보였다. 개입실행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서비스 조건에 대한 설명과 협상, 합의’가 3.99, ‘자원목록과 경험활용서비스 찾기’가 3.94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점검단계에서는

‘서비스제공자나 클라이언트에게 독려와 지지를 제공한다’는 응답이 4.10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지역자원서비스점검’과 ‘갈등중재’에서는 낮은 점수를 보여 대상자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에 지역사회자원과는 소통이 부족하거나 적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아직까지도 지역사회자원과의 협력은 소원한 것으로 판단된다. 평가단계에서는 ‘평가를 통하여 업무 우선순위결정’에 도움을 준다는 것에 3.71로 높은 편이고 ‘서비스를 연결하고 평가를 위한 기초선 데이터와 현재데이터를 비교함으로써 클라이언트의 욕구 재사정을 실시한다’와 ‘장애요소를 규명한다’는 응답이 3.43~3.54로 나타나 수행정도가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사례관리 수행의 단계에서 단계별 하위항목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이는 항목은 사정단계에서 다차원적인 사정도구의 사용에서 3.29로 가장 낮고, 이어서 평가단계서 욕구재사정에서 3.43으로 낮은 점을 생각해 봐야한다.

**<표 3> 단계별 항목에 따른 사례관리수행 정도**

		빈도	평균	표준편차
인테이크	대상자를 다양한 방식으로 접촉	181	3.63	.754
	인테이크 과정에 대상자 참여	181	3.99	.966
	대상자로부터 서비스제공동의서 받음	181	4.40	.880
사정	다차원적인 사정도구 사용	181	3.29	.800
	신체, 심리, 사회적 기능 평가	181	3.86	.794
	대상자의 지역사회자원 파악	181	3.76	.733
	대상자의 비공식적 지원체계 파악	181	3.82	.804
	대상자의 공식적 지원체계 파악	181	3.96	.741
개입계획	개별화된 서비스 수립, 작성, 기록	181	3.97	.792
	측정 가능한 목표 수립	181	3.97	.726
	서비스 전달 및 우선순위 결정	181	3.97	.722
개입실행	자원목록 과 경험 활용 서비스 찾기	181	3.94	.708
	서비스 조건 설명, 협상, 합의	181	3.99	.726
	옹호활동	181	3.75	.776
점검	지역자원 서비스 점검	181	3.68	.751
	독려와 지지 제공	181	4.10	.711
	갈등 중재	181	3.76	.743

평가	육구제사정	181	3.43	.776
	업무 우선순위 결정	181	3.71	.813
	장애요소 규명	181	3.54	.756

### 3. 사례관리업무의 수행범위

사례관리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한 업무환경은 <표 4>과 같이 사례관리의 수행범위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표 4> 사례관리업무의 수행범위

	빈도	평균	표준편차
1)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설정	181	3.49	.847
2) 활용가능한 지역자원의 확보	181	2.98	.934
3) 평가를 위한 실적달성	181	2.75	1.001

수행범위는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사례관리 수행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보는 바와 같이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설정’의 평균이 3.49로 나타났고, ‘평가를 위한 실적 달성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평균 2.75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고, 다음으로 ‘활용 가능한 지역자원 확보’의 평균이 2.98로 나타나 사례관리 수행에 있어서 활용가능 자원 확보와 평가실적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관리 수행범위의 하위영역에 있어서 사례관리수행의 ‘상집단’과 ‘하집단’에 따른 평균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하위영역에서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례관리수행을 잘 하는 ‘상집단’은 잘 하지 못하는 ‘하집단’에 비해서 인식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례관리수행을 잘 하는 ‘상집단’은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설정, 활용가능한 지역자원의 확보와 평가를 위한 실적달성에 대한 인식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5> 사례관리업무의 수행범위에 대한 인식

	관계	자원확보	실적
--	----	------	----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관리 수행	상	3.85(.80)	3.25(.90)	2.97(1.08)
	하	3.20(.79)	2.72(.82)	2.58(.87)
	t	-4.404***	-3.393***	-2.129**
인테 이크	상	3.61(.98)	3.29(1.06)	2.95(1.14)
	하	3.31(.88)	2.85(.79)	2.58(.93)
	t	-1.583	-2.342*	-1.753
사정	상	3.89(.77)	3.20(1.07)	3.02(1.09)
	하	3.22(.84)	2.82(.92)	2.60(.90)
	t	-4.333***	-1.959	-2.235*
계획	상	3.89(.82)	3.17(.99)	2.87(1.08)
	하	3.31(.76)	2.82(.94)	2.51(.96)
	t	-4.122***	-2.010*	-1.948
실행	상	3.87(.841)	3.29(1.10)	2.92(1.15)
	하	3.27(.796)	2.76(.87)	2.59(.93)
	t	-4.125***	-3.221**	-1.798
점검	상	3.92(.75)	3.32(.94)	3.02(1.13)
	하	3.33(.84)	2.78(.84)	2.58(.85)
	t	-4.110***	-3.489***	-2.580*
평가	상	3.75(.88)	3.33(.84)	2.92(1.09)
	하	3.25(.78)	2.62(.83)	2.44(.83)
	t	-3.201**	-4.602***	-2.630**

사례관리의 수행범위의 하위영역에 있어서 사례관리의 단계별 수행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테이크 단계’에 있어서는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와 ‘평가실적면’에서 ‘상집단’과 ‘하집단’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활용가능한 지역자원의 확보’에 있어서는 ‘상집단’과 ‘하집단’ 간의 차이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단계’에서는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와 ‘평가실적면’에서 ‘상집단’과 ‘하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계획단계’와 ‘실행단계’에서는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와 ‘활용가능한 지역자원의 확보’에서 ‘상집단’과 ‘하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점검단계’와 ‘평가단계’에서는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활용가능한 지역자원의 확보’와 ‘평

가실직면’ 모두에서 ‘상집단’과 ‘하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사례관리업무에 대한 기관지원정도

사례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기관지원정도에 대하여 <표 6>과 같이 3문항으로 구성하여 질문하였다. 사례관리업무에 대한 기관지원정도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는 부문은 ‘사례관리의 슈퍼비전’이 평균 3.09로 나타났고, 이어서 ‘사례관리의 교육지원’이 2.99로 나타났다. 반면에 가장 부족한 지원으로는 ‘사례관리업무 담당자수’로 평균 2.33으로 나타나 담당자들이 업무에 비하여 부족함을 표현하고 있어 사례관리의 업무량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사례관리업무에 대한 기관지원정도

	빈도	평균	표준편차
1) 사례관리업무 담당자의 수	181	2.33	1.022
2) 사례관리의 교육지원	181	2.99	1.027
3) 사례관리의 슈퍼비전	181	3.09	1.009

사례관리업무에 대한 기관지원정도에 있어서 ‘상집단’은 ‘하집단’에 비해서 ‘사례관리 담당자의 수’, ‘사례관리의 교육지원’과 ‘사례관리의 슈퍼비전’에 있어서도 인식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하위항목에 있어서 사례관리의 단계별 수행에 따라 구체적으로 <표 7>에서 살펴보면, ‘인테이크 단계’와 ‘평가단계’에 있어서는 사례관리업무 ‘담당자의 수’, ‘사례관리의 교육지원’과 ‘사례관리의 슈퍼비전’ 모두에서 ‘상집단’과 ‘하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정단계’, ‘계획단계’, ‘실행단계’와 ‘점검단계’에서는 ‘사례관리업무 담당자의 수’에 대한 ‘상집단’과 ‘하집단’ 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례관리의 교육지원’과 ‘사례관리의 슈퍼비전’에서는 ‘상집단’과 ‘하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사례관리업무에 대한 기관지원정도에 대한 인식

	담당자수	교육지원	슈퍼비전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관리 상	2.59(1.10)	3.44(1.01)	3.59(1.01)

수행	하	2.18(.95)	2.80(.99)	2.63(.91)
	t	-2.178**	-3.507***	-5.548***
인테이크	상	2.68(1.19)	3.42(1.08)	3.58(1.09)
	하	2.19(1.02)	2.87(.88)	2.77(.90)
	t	-2.249*	-2.783**	-4.074***
사정	상	2.48(1.11)	3.30(1.09)	3.50(1.09)
	하	2.22(.93)	2.72(.93)	2.80(.81)
	t	-1.355	-3.020**	-3.873***
계획	상	2.35(1.05)	3.31(.95)	3.50(.91)
	하	2.13(.93)	2.67(1.04)	2.72(.94)
	t	-1.280	-3.606***	-4.674***
실행	상	2.46(1.16)	3.44(1.04)	3.56(1.02)
	하	2.22(1.02)	2.81(.98)	2.80(.95)
	t	-1.178	-3.540***	-4.349***
점검	상	2.50(1.09)	3.24(1.06)	3.56(.97)
	하	2.19(.97)	2.84(.94)	2.75(.89)
	t	-1.720	-2.307*	-4.932***
평가	상	2.50(1.07)	3.27(1.01)	3.53(.98)
	하	2.13(.84)	2.73(.97)	2.73(1.01)
	t	-2.070*	-2.920**	-4.340***

## 5. 사례관리 담당자의 역할에 대한 인식

사례관리 담당자로서 느끼는 역할과 수행도에 대해서는 <표 8>를 살펴보면 ‘사례 관리는 기관에서 내가 가장 선호하는 업무’라고 응답한 경우가 평균 3.03으로 나타나 역할과 수행면에서 다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응답척도에 대한 점수로 보면 그다지 높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사례관리에 대한 지식’과 ‘기술’에서 각각의 평균이 2.92, 2.82로 나타났고, ‘사례관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개인적 노력’에 있어서도 평균 2.94로 나타나 대체로 부족하다는 응답을 보였기 때문에 사례관리 담당



자들 스스로 부족함을 느끼는 것으로 알 수 있다.

**<표 8> 사례관리 담당자의 역할**

	빈도	평균	표준편차
1) 사례관리에 대한 지식	181	2.92	.741
2) 사례관리에 대한 기술	181	2.82	.719
3) 사례관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개인적 노력	181	2.94	.758
4) 사례관리는 기관에서 내가 가장 선호하는 업무	181	3.03	.878

사례관리 담당자의 역할과 수행의 하위영역에 있어서 사례관리수행의 ‘상집단’과 ‘하집단’에 따른 평균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하위영역에서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례관리수행을 잘 하는 ‘상집단’은 잘 하지 못하는 ‘하집단’에 비해서 인식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례관리수행을 잘 하는 집단은 ‘사례관리에 대한 지식’과 ‘기술’, ‘사례관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개인적인 노력’과 ‘사례관리는 기관에서 자신이 선호업무’라는 인식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사례관리의 수행범위의 하위영역에 있어서 사례관리의 단계별 수행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테이크 단계’에 있어서는 ‘사례관리에 대한 지식’과 ‘기술’, ‘사례관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개인적인 노력’에 있어서는 ‘상집단’과 ‘하집단’ 간의 차이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례관리는 기관에서 자신이 선호업무’라는 영역에서는 ‘상집단’과 ‘하집단’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사정단계’, ‘계획단계’, ‘실행단계’, ‘점검단계’와 ‘평가단계’에서는 모든 하위영역으로 ‘사례관리에 대한 지식’과 ‘기술’, ‘사례관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개인적인 노력’과 ‘사례관리는 기관에서 자신이 선호업무’라는 영역에서 ‘상집단’과 ‘하집단’의 차이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사례관리 담당자의 역할에 대한 인식**

		지식	기술	노력	선호업무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관리 수행	상	3.29(.70)	3.19(.73)	3.32(.75)	3.39(.97)
	하	2.63(.71)	2.48(.65)	2.58(.65)	2.75(.73)

	t	-5.071***	-5.546***	-5.749***	-4.087***
인테이크	상	3.13(.84)	3.03(.75)	3.26(.86)	3.18(1.01)
	하	3.31(.88)	2.55(.67)	2.73(.71)	2.82(.80)
	t	-2.877**	-3.303**	-3.399**	-1.876
사정	상	3.30(.70)	3.20(.72)	3.46(.78)	3.26(.98)
	하	2.71(.74)	2.54(.64)	2.57(.68)	2.68(.77)
	t	-4.275***	-5.067***	-6.349***	-3.514***
계획	상	3.30(.72)	3.19(.75)	3.26(.81)	3.33(.97)
	하	2.74(.73)	2.58(.67)	2.74(.71)	2.86(.83)
	t	-4.290***	-4.742***	-3.858***	-2.942**
실행	상	3.25(.71)	3.13(.77)	3.29(.83)	3.40(1.02)
	하	2.66(.70)	2.52(.62)	2.66(.64)	2.77(.93)
	t	-4.722***	-5.064***	-4.917***	-4.009***
점검	상	3.24(.69)	3.16(.71)	3.30(.84)	3.30(.97)
	하	2.78(.70)	2.62(.65)	2.75(.65)	2.84(.84)
	t	-3.753***	-4.457***	-4.222***	-2.918**
평가	상	3.22(.72)	3.12(.74)	3.25(.77)	3.23(.91)
	하	2.64(.65)	2.55(.54)	2.71(.63)	2.65(.80)
	t	-4.543***	-4.704***	-4.094***	-3.614***

## 6. 사례관리수행에 대한 인식

사례관리를 수행하면서 사례관리사업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을 제시하였다. 전체적으로 4개의 사례관리에 대한 질문을 제시하였고 5점 척도로 응답토록 하였다.

<표 10>에서 결과를 살펴보면 가장 높은 평균의 점수를 보인 항목으로는 ‘자원연계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4.39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사례관리는 서비스전달체계 과정’이라는 인식이 4.02로 높게 나타나 현장에서는 사례관리가 서비스 전달체계의 한 유형으로서 정착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접수대상자는 무조건 선정’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평균 2.59로 나타나 사정과정에서

사례관리의 대상자로 충분한 고려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0> 사례관리 수행에 대한 인식

	빈도	평균	표준편차
접수 대상자는 무조건 선정	181	2.59	.948
지역자원 확보는 사례관리자의 역량으로 충분	181	3.55	.756
자원연계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	181	4.39	.637
사례관리는 서비스전달체계 과정	181	4.02	.577

사례관리 수행의 하위영역에 있어서 사례관리수행의 '상집단'과 '하집단' 따른 평균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하위영역에서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례관리수행을 잘 하는 '상집단'은 잘 하지 못하는 '하집단'에 비해서 인식의 수준이 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례관리수행을 잘 하는 집단은 '자원연계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사례관리는 서비스전달체계 과정', '지역자원 확보는 사례관리자의 역량으로 충분'에 대한 인식은 '상집단'이 '하집단'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인식되지만 '접수대상자는 무조건 선정'에 있어서 '하집단'이 '상집단'보다 인식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사례관리수행을 잘하는 집단은 대상자를 여러 가지의 상황에 따른 사정하에 선정하지만 사례관리수행을 잘 하지 못하는 집단은 대상자를 사정결과에 따르지 못하고 대상자로 무조건 선정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9> 사례관리 수행에 대한 인식

		대상자선정	관리지역량	네트워크구축	전달체계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관리 수행	상	2.39(1.02)	3.73(.78)	4.54(.63)	4.25(.54)
	하	2.80(.84)	3.32(.75)	4.25(.65)	3.83(.56)
	t	2.400*	-2.935**	-2.492**	-4.166***
인테 이크	상	2.63(.94)	3.61(.82)	4.37(.54)	4.11(.56)
	하	2.69(.95)	3.42(.74)	4.31(.64)	3.92(.55)
	t	.317	-1.171	-.496	-1.626

사정	상	2.43(1.07)	3.78(.81)	4.59(.62)	4.20(.58)
	하	2.68(.85)	3.34(.69)	4.22(.65)	3.86(.58)
	t	1.329	-3.097**	-3.031**	-2.977**
계획	상	2.37(1.03)	3.67(.78)	4.57(.60)	4.28(.49)
	하	2.81(.88)	3.49(.75)	4.33(.65)	3.83(.61)
	t	2.545*	-1.316	-2.123*	-4.412***
실행	상	2.37(.99)	3.75(.79)	4.65(.59)	4.31(.54)
	하	2.77(.93)	3.35(.77)	4.28(.62)	3.86(.53)
	t	2.382*	-2.852**	-3.459***	-4.702***
점검	상	2.60(1.09)	3.66(.75)	4.54(.65)	4.26(.57)
	하	2.65(.91)	3.42(.75)	4.27(.68)	3.86(.58)
	t	.270	-1.779	-2.266*	-3.917***
평가	상	2.23(.96)	3.67(.80)	4.52(.57)	4.18(.57)
	하	2.85(.95)	3.40(.78)	4.31(.69)	3.91(.59)
	t	3.476***	-1.808	-1.767	-2.549*

사례관리 수행의 하위영역에 있어서 사례관리의 단계별 수행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테이크 단계’에 있어서는 ‘자원연계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사례관리는 서비스전달체계 과정’, ‘지역자원 확보는 사례관리자의 역량으로 충분’과 ‘접수대상자는 무조건 선정’에 있어서는 ‘상집단’과 ‘하집단’ 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사정단계’에서는 ‘접수대상자는 무조건 선정’한다는 관점에서는 ‘상집단’과 ‘하집단’ 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자원연계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사례관리는 서비스전달체계 과정’과 ‘지역자원 확보는 사례관리자의 역량으로 충분’하다는 관점에 있어서는 ‘상집단’과 ‘하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단계’에서는 ‘지역자원 확보는 사례관리자의 역량으로 충분’하다는 관점에서는 ‘상집단’과 ‘하집단’ 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자원연계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사례관리는 서비스전달체계 과정’과 ‘접수대상자는 무조건 선정’한다는 관점에서는 ‘상집단’과 ‘하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행단계’에서는 모든 하위영역에서 ‘상집단’과 ‘하집단’ 간의 차이가 있었고 ‘점검단계’에서는 ‘접수대상자는 무조건 선정’과 ‘지역자원 확보는 사례관리자의 역량으로 충분’하다는 관점에서는 ‘상집단’과 ‘하집단’ 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자원연

계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고’, ‘사례관리는 서비스전달체계 과정’이라는 관점에서는 ‘상집단’과 ‘하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단계’에서는 ‘지역자원 확보’는 ‘사례관리자의 역량으로 충분’과 ‘자원연계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는 ‘상집단’과 ‘하집단’ 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접수 대상자는 무조건 선정’과 ‘사례관리는 서비스전달체계 과정’이라는 관점에서는 ‘상집단’과 ‘하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상집단’과 ‘하집단’ 간에 차이를 보이지만 특히, ‘대상자 선정’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하집단’이 ‘상집단’보다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반적으로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는 ‘하집단’이 높은 반면에 나머지 ‘자원확보에 대한 관리자의 역량’, ‘지역자원의 네트워크구축’, ‘서비스전달체계’ 등에서는 ‘상집단’이 ‘하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인식하는 점을 눈여겨 봐야할 것이다.

## IV. 논의 및 결론

사례관리업무가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기본적인 기능의 하나로 운영되면서 평가되는 시점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례관리업무에 대하여 많은 사회복지사들 간에는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에 따라 대상자를 위한 사례관리업무는 성공여부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본 연구의 목적은 사례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가 사례관리업무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분석해 보는 것이다. 즉, 사례관리업무를 구성하고 있는 요인으로써 사례관리업무의 수행범위, 기관지원정도, 담당자의 역할 그리고 사례관리업무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사례관리수행의 정도에 따른 ‘상집단’과 ‘하집단’ 간의 평균의 차이로 인식의 수준을 살펴보고 조사 대상자는 충북에서 사례관리업무를 담당하는 181명의 사회복지사이며 연구의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약간 많고, 연령별로는 29세이하가 절반정도이며 평균연령은 31.4세이다. 사례관리업무를 담당할 경력을 보면 응답자의 83.2%(149명)가 3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관리업무는 최근부터 생겨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업무경력이 짧았던 것이 반영된 것으

로 판단된다.

둘째, 전체적으로 볼 때 사례관리수행에서 단계별 하위항목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이는 항목은 사정단계에서 다차원적인 사정도구의 사용에서 3.29로 가장 낮았다. 사정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정도구는 최근 들어 상당히 다양한 품목이 있다(김성국, 2013; 김영숙·박소라·우후남, 2009). 사회복지학에서 사회복지사들이 대상자를 관심있게 살펴보는 인간행동에 대하여 주로 정신의학이나 심리학에서 개발되어 보급된 것들이 많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사례관리 담당자들이 다차원적인 사정도구를 충분히 사용할 수 없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은 기관이 사정도구를 충분히 지원해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평가단계의 욕구재사정에서 3.43으로 낮은 점수로 나타나 앞에서의 사정도구의 미활용 다음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평가단계에서의 욕구재사정이 점수가 낮은 것에 대한 이유는 사례관리업무에 대한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욕구를 재사정한다는 것으로 사례의 종결을 미루는 것이고 이는 업무량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판단은 사회복지사에 대한 윤리강령의 문제를 생각해 봐야한다고 판단한다. 사회복지사는 대상자를 인간의 존엄성으로 전제하고 출발해야하지만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는 종종 간과하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욕구에 대한 재사정이 잘 안되는 것은 욕구의 미충족으로 볼 수 있고 욕구사정도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정순돌(2003)의 연구가 이러한 문제에 대처할 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사회복지사들이 사례관리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측면에서 사례관리수행의 ‘상집단’과 ‘하집단’ 간에 정(+)의 차이를 보여 사례관리를 잘 한다고 하는 ‘상집단’이 못한다고 하는 ‘하집단’보다 인식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례관리의 대상자 선정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하집단’이 ‘상집단’보다 인식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다른 부분의 인식의 수준과 반대의 양상을 보여주었다. 즉, 전반적으로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는 ‘하집단’이 높은 반면에 나머지 자원확보에 대한 관리자의 역량, 지역자원의 네트워크구축, 서비스전달체계 등에서는 ‘상집단’이 ‘하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대상자 선정을 제외한 다른 의견에 대해서는 사례관리에 대한 기술이 반영되어야하지만 대상자선정에서는 ‘하집단’은 사례관리 수행에 대한 경험의 부족으로 인하여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상집단’은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소위 크리밍현상을 보여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의 논의를 토대로 하여 사회복지사들의 사례관리업무에 대한 인식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사례관리 수행의 사정단계에서 다차원적인 사정도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들이 이러한 도구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외부교육과 슈퍼비전을 제공해 줘야 할 것이고, 아울러 기관 역시 사회복지사들이 다차원적인 도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둘째, 평가단계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서는 욕구재사정의 방법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대상자의 변화를 위해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하다보면 대상자의 욕구가 새롭게 나타나거나 처음부터 대상자의 욕구를 충분히 평가하지 못해 올바른 욕구해결을 위한 사례관리에 대한 목표를 세우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사정단계에서의 충분한 사정을 위한 사례관리교육이 지원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셋째, 사회복지사들이 사례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사례관리수행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사회복지사들이 경험이 부족한 사회복지사들에게 미룬다면 이에 대한 윤리와 철학의 교육이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욕구재사정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업무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면 이와 같은 요인들도 함께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사례관리업무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인식을 사례관리수행 정도의 수준에 따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갖는다. 지금까지의 사례관리수행에 대한 많은 연구에서 본 연구와 같은 인식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의의를 보다 충분히 가질려면,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분석결과에 따라 욕구재사정, 욕구재사정에 따른 업무량의 조정 그리고 대상자선정에서의 경험유무의 작용 등과 같이 보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후속적인 과제로 제시한다.

## 참 고 문 헌

- 김교정(2014). “통합사례관리 실무자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63-165.
- 김미정·이경은·장덕희(2012). “지역아동센터의 사례관리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과학연구』, 28(4): 409-428.
- 김보영(2013). “통합사례관리를 위한 거버넌스구조구축: 지역복지전달체계 혁신방안의 모색”,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36: 205-236.
- 김상곤·김승용(2012). “복지관 평가에서의 사례관리 평가지표에 관한 연구 : 종합·노인·장애인복지관을 중심으로”, 『사례관리연구』, 3(1): 1-37.
- 김선주·김교정(2013). “사회복지시설 사례관리자의 사례관리 과정에 대한 인식과 수행에 관한 연구: 부산지역 사회복지시설의 사례관리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1): 221-233.
- 김성국(2013). “노인장기요양 실천현장에서의 사례관리사정도구로서의 FIM·FAM척도 적용 가능성”,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10: 39-53.
- 김성천·박지영(2012). “사회복지현장에 기반한 가족중심사례관리 실천 모색 : 현장사례분석 중심으로”, 『사례관리연구』, 3(1): 39-64.
- 김영숙·박소라·우후남(2009). “정신장애인사례관리의 욕구사정 정확도 향상을 위한 사정도구 개발과 욕구추출 알고리즘 과정연구; 데이터 마이닝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4: 79-109.
- 김영인(2015). “슈퍼비전요인이 지역사회복지관 사례관리자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민(2016). “사례관리자가 인식하는 사회복지 조직환경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 : 사회복지관 사례관리 담당 사회복지사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화수(2013). “지역사회복지관 사례관리자의 사례관리 인식에 관한 재구성 : 위버만의 객관적 해석학을 중심으로”,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도광조(2010). “지역사회복지관 사례관리수행의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민소영·임선영(2014). “사례관리수행의 영향요인분석: 정신보건실천 현장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28: 223-247.



- 백인희(2013). “수퍼비전내용이 사회복지사의 역할수행에 미치는 영향; 가치와 원칙의 내용을 중심으로”, 송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소수연·장성숙(2011). “효과적인 수퍼비전 수요에 관한 수퍼바이저의 지각 연구”, 『상담학연구』, 12(3): 1051-1067.
- 손영주(2014). “학교사회복지사의 사례관리 수행능력과 역할인식과의 관계”,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준상(2003).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의 사례관리실천모형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사회복지개발연구』, 9(1): 59-82
- 전미애(2012). “사례관리자가 인식하는 사회복지 기관환경이 사례관리수행에 미치는 영향 : 기본욕구와 직무수행동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미애·김소영(2012). “기관환경과 사례관리자의 동기가 사례관리수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42: 179-210.
- 정순돌(2003). “사례관리대상노인의 미충족욕구사정: 욕구사정도구를 활용한 탐색적 연구”, 『한국노년학』, 23(4): 99-112.
- 정순돌(2008). “사회복지관 이용노인을 위한 팀접근 사례관리실천의 과정평가”, 『노인복지연구』 42: 175-202.
- 정연정(2014). “한국사례관리실천의 딜레마”,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6(1): 55-88.
- 조추용(2014). “지방정부 복지거버넌스와 통합사례관리체계”, 『한국케어매니지먼트 연구』, 12: 121-146.
- 차민호·유미예·서인해(2006). “사례관리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공동학술대회 포스터발표.
- 최세민(2011). “특수교육지원센터 사례관리자의 역할결정과 역할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특수아동교육연구』, 13(4): 127-147.
- 최희철(2013). “사회복지환경의 변화에 따른 정신보건사회복지영역의 사례관리실천현황과 과제 고찰”, 『사례관리연구』, 4(1): 1-23.
- 함철호(2013). “공공전달체계 내 사례관리자의 사례관리수행과 영향요인”,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44: 1-31.
- 홍선미(2006). “자활지원 사례관리모형과 운영방안 연구”, 『사회복지연구』, 29: 133-165.

# A Study on the Recognition of Social Workers about Case Management

Ra, Dong-Seok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Cheongju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cognition of social workers for case management works. For this research subject is a social worker 181 people responsible for the case management works in social welfare institutions and facilities located in North Chungcheong Province. Following research methods, first, subject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s such as upper group, middle group and lower group according to the degree that social worker perform case management. The middle group were excluded from the analysis of data and in accordance with the upper and lower groups it was to analyzed the average difference of cognition in the work environment, institutional support level, the role performed for the case management works and case management performance. In the main result, social workers does not take advantage of multidimensional assessment tool in stage of the assessment and are aware of difficult in the need re-assessment in stage of the evaluation phase of the case management performance. And overall showed that upper group perceived to be higher than the lower group in the case manager' capabilities of community resources finding, network building of community resources and service delivery system, but in the client selection the lower group perceived to be higher than the upper group. I was discussed on the basis of these findings, presented proposal idea for raising awareness and suggested coming subsequent research projects.

Key words: case management, case management performance, social workers' cognition

논문 투고일 : 2016. 08. 21

심사개시일 :

게재확정일 :



한국사회과학연구  
제38권 1호  
2016년 8월호

## 예술대학생의 사회의식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교수  
구 철 회

### 국 문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예술계 대학생들의 사회의식을 정치적 측면, 경제·복지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으로 나누어 조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예술계 대학생들은 대체로 정부를 신뢰하지 않고 있었으며 통일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그들은 또한 우리나라 미래의 경제상황을 암울하게 전망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미래의 일자리를 걱정하고 있었다. 사회의식 측면에서는 효와 노인공경 같은 전통적인 가치를 중시하고 개인적으로는 창조적 욕구 실현을 중시하는 건강한 수준이었다. 정부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신뢰를 얻으려면, 청년일자리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우리사회를 더 나은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빈부격차를 줄이고 사회의 저소득층을 배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핵심어: 사회의식, 청년일자리, 효, 노인공경, 빈부격차

\* 이 논문은 2015-2017년도 청주대학교가 지원하는 학술연구조성비(특별연구과제)에 의해 연구되었음.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grant of Cheongju University (2015.09.01.~2017.08.31.

# I. 서론

요즘 청년들이 SNS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헬조선’이라는 단어는 현재 우리 청년들이 처해있는 현 상황이 녹록지 않다라는 점과 아울러 그들이 얼마나 우리사회에 대해 실망하고 있는 지를 표상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정말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청년만 유독 어려움에 처해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나아질 가망성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작년 2015년도 청년실업률이 9.2%를 넘어서면서 1999년 이래 최고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보면 청년들의 먹고 살기 힘들다는 말이 빈말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통계청, 2016).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노력하는 사회가 되어야 건강한 사회가 되고 안정적인 사회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데, 현실은 이와는 먼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그들이 실망하는 말을 표출하고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퍼지는 것은 이러한 인식이 어느 청년 하나 둘만의 소수의 인식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실제로 어떠한 인식을 하고 있는 지 조사 분석하는 것은 현실의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미래의 방향을 정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번 연구에서는 그 연구대상을 예술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대학생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그들의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정치적 측면, 경제·복지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으로 나누어 조사 분석하고, 그 분석 결과를 2015년 조사한 사회과학 대학생의 사회의식 조사와 비교 분석하였다 (구철희, 2015). 연구조사의 일부 항목은 같은 설문을 가지고 비교 분석하였으며, 나머지는 기존의 연구에서 묻지 않았던 전혀 다른 분야의 질문을 중심으로 연구 분석하였다.

## II. 연구 목적 및 방법

### 1)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예술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우리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정치적 측면, 경제·복지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으로 나누어 조사함으로써 예술계 학생들의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더불어 이러한 조사 분

석결과가 일반 사회과학을 전공하는 학생과 비교할 때 어떤 차이점을 보이는지 아니면 전공과는 관계없이 유사점을 보이는 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청년이 주인이 되는 우리사회의 미래를 보다 희망적으로 만들 수 있는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조사는 청주대 예술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5년 5월 17일에서 6월 13일까지 이루어졌으며 무기명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모든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돌리고 무작위적으로 회수된 결과지 102명에 대해 횡단면 조사를 하였다. 본 연구와 유사한 연구는 사회과학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있었는데 본 논문에서는 예술대학생의 정치적 측면 등의 특징을 사회과학대학 학생들의 관점과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질문을 하여 비교분석하였으며, 일부는 전혀 다른 설문을 하여 예술계 학생들의 사회의식을 조사하였다 (구철희, 2015). 통계적 분석은 통계프로그램인 SPSS 20.0을 사용하였으며, 방법론적 타당성은 통계분석 서적을 참고하였다 (강병서·김계수 2009).

## 3) 선행연구

현재까지 연구된 대학생 의식조사에 관한 선행연구를 보면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있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대학생의 사회의식을 정치적 측면, 경제·복지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으로 나누어 조사 분석하는 것이므로 논문의 주제와 관련 있는 최근의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대학생의 사회의식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김미정(2011)은 전통적인 공경의 가치와 관련한 연구를 하였고, 황영기(2012)는 대학생의 사회복지의식에 관해 연구하였다. 강선아(2013)는 부모 부양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조사를 하였다. 구철희(2015)는 사회과학대학생들의 사회의식을 정책적 측면에서 연구하였다. 경제적 측면에서의 연구를 보면 임옥진(2012)은 대학생의 직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연구를 하였고, 김주섭(2013)은 대학생들의 적극적인 취업준비행동을 고양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연구를 하였다. 정치의식적인 측면에서 배한동(2001)은 한국 대학생의 정치의식에 대한 조사를 하였고, 박제신(2003)은 1980년대 학번과

2000년대 학번의 정치의식을 비교 연구하였다.

위의 이러한 연구들은 우리나라의 미래인 청년층의 정치사회의식을 다양한 측면에서 조사 분석한 것인데, 본 연구가 지금까지의 이러한 연구와 차별되는 점은 본 연구는 예술계 대학생들의 사회의식을 정치적 측면, 경제·복지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으로 나누어 조사 분석하고 정부의 정책적인 측면과 관련하여 연구를 했다는 점이다.

#### 4) 연구한계

본 연구는 청주대학교 예술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표본으로 조사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있는 예술계 대학생의 평균적 사회적 인식을 대표하기엔 본질적인 한계를 지닌다. 지방에 있는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은 졸업 후의 삶에 대해 좀 더 불안감을 느끼기 쉽고, 비록 SNS가 아주 잘 발달한 우리사회이긴 하지만, 사람들 사이의 소통은 동료집단끼리 많이 이루어지기에 지방대 학생들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슈에 관해 민감성이 높지 않을 수도 있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하에서 조사·분석하고 있는 바와 같이 조사항목을 우리 사회에서 크게 이슈화 되고 있거나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는 점에서 인식의 편차가 아주 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 Ⅲ. 예술계 대학생 사회의식조사 결과 및 해석

이하에서 예술계 대학생이 우리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정치적 측면, 경제·복지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으로 나누어 조사 분석하고자 한다.

#### 1) 정치적 측면

아래의 <표 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생들의 정치적 성향은 각각 중도가 60.2% (N=59), 진보가 28.6% (N=28), 보수가 11.2% (N=11)로서 이전의 사회과학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보다는 중도성향이 2.4%p 증가했지만 커다란 차이는 없다 (구철희, 2015:127). 따라서 정치적 성향은 전공과는 큰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 예술계 대학생의 정치적 성향

(단위: 명, %)

	진보	중도	보수	합계
빈도	28	59	11	98
%	28.6	60.2	11.2	100

출처: 저자 계산, N = 98.

<표 2>는 예술계 대학생들 정치적 성향과 정부에 대한 신뢰와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이 둘의 관계를 알아보려고 교차분석을 한 결과 pearson 카이제곱 값이 16.536 이고 자유도가 8일 때  $p = .035$  으로 유의수준 5%에서 유의성을 보여주었다. 이는 정치적 성향과 정부에 대한 신뢰관계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을 나타내준다. 즉,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 정부를 바라보는 시각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분석 결과를 보면, 정부를 얼마나 신뢰하는지에 대해서 진보와 중도는 각각 39.3%와 47.5%가 거의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진보와 중도 각각 32.1%와 20.3%가 전혀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한 반면, 보수는 정부를 약간신뢰하거나 보통인 응답이 각각 27.3%와 36.4%를 차지해 진보나 중도에 비해 정부를 신뢰하는 성향이 강하였다. 그러나 보수에서는 정부를 전혀 신뢰하지 않거나 거의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36.4%에 달해 사회과학대학 학생들 보다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 훨씬 컸다. 이는 예술계 학생들이 정부에 대해 사회과학학생들 보다 비판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표 2> 예술계 대학생의 정치적 성향과 정부신뢰와의 상관관계

(단위: 명, %)

			정부신뢰					전체
			매우 신뢰	약간 신뢰	보통	거의 신뢰않음	전혀신뢰안함	
정치	진보	빈도	1	1	6	11	9	28



직성향	중도	정치적 성향 중 %	3.6%	3.6%	21.4%	39.3%	32.1%	100%
		빈도	1	1	17	28	12	59
	보수	정치적 성향 중 %	1.7%	1.7%	28.8%	47.5%	20.3%	100%
		빈도	0	3	4	3	1	11
		정치적 성향 중 %	0.0%	27.3%	36.4%	27.3%	9.1%	100%
전체	빈도	2	5	27	42	22	98	
	전체%	2.0%	5.1%	27.6%	42.9%	22.4%	100%	

<표 3>은 예술계 대학생들이 생각하고 있는 정부가 우선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정책을 나타내고 있다. 예술계 대학생들도 사회과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청년일자리 정책(34.4%)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구철희, 2015). 다음으로는 경제활성화(24.0%), 문화예술정책(15.6%), 지역균형발전(9.4%), 연금개혁(6.3%), 노인복지(5.2%), 외교(2.1%) 등의 순서대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신이 전공하는 분야를 불문하고 청년들은 현실의 취업난을 가장 힘들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경제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원하고 있었다. 주목할 만 한 점은 예술계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문화예술정책을 경제정책 다음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점이다. 이런 인식의 바탕에는 먹고 사는 문제 다음으로는 문화예술의 발전 및 향유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아직은 문화예술 분야가 소외되고 있고 더욱 많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그 외에 지역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한 점은 아무래도 조사표본이 지방대생인 것이 작용해서 이러한 문제를 다른 사람보다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다음으로는 연금개혁과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는데 이는 현재의 사회적 이슈와 고령화 추세를 감안한 정책인식이라고 생각되며, 상대적으로 외교 분야는 관심을 적게

받는 정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예술계 대학생의 정부가 우선해서 추진해야 할 정책

(단위: 명, %)

	연금 개혁	경제 활성화	청년 일자리	노인 복지	보건 정책	외교	지역균형 발전	문화예술정책	합계
빈도	6	23	33	5	3	2	9	15	96
%	6.3	24.0	34.4	5.2	3.1	2.1	9.4	15.6	100

출처: 저자 계산, N = 96.

<표 4>는 예술계 대학생들의 통일의 필요성 인식수준을 나타낸다. 통일의 필요성 인식에 관한 질문에 학생들은 전체 응답자 102명중 53명(52.0%)이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통일이 필요없다고 응답한 학생은 47명(46.1%)이었다. 무응답자는 2명(2.0%)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과학대학생들의 통일이 필요하다는 인식 66.7%보다 많이 낮은 수치로서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서 사회과학 전공의 학생들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구철희, 2015). 그리고 혹시 이러한 결과가 정치적인 성향과 관련이 있을까 교차분석을 해본 결과 pearson 카이제곱 값이 2.209 이고 자유도가 2일 때  $p = .331$  로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정치적인 성향과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은 서로 상관관계가 없었다. 한 편 예술계 학생이 일반사회과학 대학생과는 달리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낮은 응답률을 보이는 점은 예술을 전공하는 대학생의 경우 정치적인 성향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이런 인식을 가지게 되었으리라하는 예상을 하게 되며 이런 이유는 다음의 <표 6>에서 나타난다.

<표 4> 예술계 대학생의 통일의 필요성 인식 수준

(단위: 명, %)

	필요하다	필요없다	무응답	합계
빈도	53	47	2	102
%	52.0	46.1	2.0	100

출처: 저자 계산, N = 102.

<표 5>는 예술계 대학생들이 통일이 필요한 이유로서 경제발전(33.9%)과 민족의 동질성 회복(32.2%)을 꼽았다. 민족의 발전을 위한 현실적이고 당위적인 이유를 선택한 결과라 판단된다. 그 다음으로 안보위협완화(28.8%)를 들고 있는데 이는 사회과학대학생들이 첫째로 선택한 이유로서 현재 북한의 안보위협에 대한 체감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철회, 2015).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은 통일로 인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제고된다는 점 (5.1%)인데 다른 이유에 비해 낮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표 5> 예술계 대학생의 통일이 필요한 이유

(단위: 명, %)

	민족의 동질성 회복	안보위협 완화	경제발전	국제적위상 제고	합계
빈도	19	17	20	3	59
%	32.2	28.8	33.9	5.1	100

출처: 저자 계산, N = 59.

<표 6>은 예술계 대학생들이 인식하고 있는 통일이 필요 없는 이유는 이미 민족의 이질성이 심해졌다는 점(42.4%), 통일시 국가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점(28.8%)과 현 상태에 만족하기에 통일이 필요없다는 점(20.3%) 등의 순서이다. 이는 사회과학대학생들이 국가의 재정부담을 첫째로 들고 있는 점과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예술계 대학생들은 국가 재정부담이라는 현실적인 측면보다는 남북한이 동질적이냐 이질적이냐 하는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그 이유를 찾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구철회, 2015).

<표 6> 예술계 대학생의 통일을 서두를 필요가 없는 이유

(단위: 명, %)

	국가재정부 담	민족의 이질성 심화	현상태에 만족	무응답	합계
빈도	17	25	12	5	59

%	28.8	42.4	20.3	8.5	100

출처: 저자 계산, N = 59.

## 2) 경제/복지적 측면

<표 7>은 예술계 대학생들의 향후 우리나라 경제 전망을 나타내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은 2.9%에 불과하고, 경제가 침체되거나(52.9%) 보통일 것이라는 응답(44.1%)이 대부분이다.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쉽게 나아질 전망이 없다는 뉴스를 지속적으로 접하게 되는 것과 더불어 실제로 가정에서 체감하는 어려운 가계 경제상황이 학생들의 우울한 경제 전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다시 졸업 후 직업선택에 영향을 주고 있다.

<표 7> 예술계 대학생의 향후 우리나라 경제전망

(단위: 명, %)

	경제침체	경제적 풍요	보통	합계
빈도	54	3	45	102
%	52.9	2.9	44.1	100

출처: 저자 계산, N = 102.

<표 8>은 예술계 대학생들의 장래희망 직업을 나타내고 있다. 예술계 학생들답게 개인창업/프리랜서(34.3%) 또는 계약제/임시직(34.3%)을 택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전체의 68.6%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대기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13.1%, 그리고 공무원이 되거나 공공기관에 취업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각각 5.1%와 7.1%이다. 이는 예술계 학생들의 특성상 직장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시간 활용이 가능한 직업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다음

으로는 대기업을 선택하는 비율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보다 훨씬 높아서 자신의 예술적 재능은 공공부문보다는 민간부문에서 더욱 발휘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표 8> 장래희망 직업

(단위: 명, %)

	공무원	공공기관	대기업	중견기업	개인창업/프리랜서	계약제/임시직	가사노동/주부	무직	합계
빈도	5	7	13	2	34	34	1	3	99
%	5.1	7.1	13.1	2.0	34.3	34.3	1.0	3.0	100

출처: 저자 계산, N = 99.

<표 9>는 예술계 대학생들이 장래희망 직업을 선택하는 이유인데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창조적 욕구를 실현하려는 점(78.0%)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직업안정성과 발전가능성이 각각 8.0%로 높았다. 예술계 학생들의 특성상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본인들의 창조적인 욕구를 실현하려는 성향이 강하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라 판단되며, 직업안정성과 발전가능성을 생각하는 점은 일반적인 직업선택의 의도와 무관하지 않다고 여겨진다.

<표 9> 장래희망 직업 선택 이유

(단위: 명, %)

	직업안정성	발전가능성	창조적 욕구	부모님 권유	교수님 권유	친구영향	결혼에 도움	합계
빈도	8	8	78	2	2	1	1	100
%	8.0	8.0	78.0	2.0	2.0	1.0	1.0	100

출처: 저자 계산, N = 100.

다음은 예술계 대학생들이 우리나라의 복지현실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 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표 10>은 예술계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정부의 보건복지정책 중 우

선해서 추진해야 할 정책은 저소득층 보조(28.6%), 안전한 보건환경(19.4%), 의료비 경감(17.3%), 노인복지(13.3%), 사회서비스(12.2%), 장애인복지(7.1%), 여성복지(2.0%) 등의 순서이었다. 예술계 대학생들은 아직까지는 정부가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보조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아직까지는 전통적인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정책의 추진이 중요할 만큼 우리사회가 풍요롭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안전한 보건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는 국민의 보건을 위협하는 일련의 사건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의료비 경감이 그 다음인 이유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만약 가정에 환자가 있을 경우 의료비 부담이 과중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그 외에 노인복지와 사회서비스 순서로 관심이 높는데 이는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인식과 다양한 복지서비스의 확대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생각된다. 장애인 복지와 여성복지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표 10> 보건복지정책 중 우선 추진 정책

(단위: 명, %)

	저소득 층보조	노인복 지	장애인 복지	여성복 지	안전한 보건환 경	의료비 경감	사회 서비스	합계
빈도	28	13	7	2	19	17	12	98
%	28.6	13.3	7.1	2.0	19.4	17.3	12.2	100

출처: 저자 계산, N = 98.

<표 11>은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 혼자 사실 수 없을 때 누가 모시는 것이 좋은 지에 대한 예술계 대학생들의 부모님 봉양에 대한 태도이다. 놀라울 정도로 응답자 본인이 모시겠다는 응답(80.6%)이 높았다. 이는 최근 조사에서 친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1명 이상 생존해 있다는 응답자의 56.7%만이 근래 1년 동안 경제적 부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연구와는 대조적인 결과이다 (김유경, 2016). 사회복지기관(7.5%)이나 정부(4.3%) 또는 다른 형제자매(4.3%)에게 맡겨야 한다는 비율은 매우 낮으며, 부모님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3.2%)는 응답은 가장 낮았다.

<표 11> 부모님 봉양

(단위: 명, %)

	응답자 본인	다른 형제자매	정부	사회복지기 관	부모님 스스로	합계
빈도	75	4	4	7	3	93
%	80.6	4.3	4.3	7.5	3.2	100

출처: 저자 계산, N = 93.

<표 12>는 예술계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사회소외계층 복지에 대한 책임 주체를 보여준다. 가장 큰 책임은 정부(40.0%)에 있고 아니면 개인과 정부가 함께 책임(30.5%)을 져야한다고 응답하였다.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책임은 공식적으로 복지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에 있으며, 가족(5.3%)과 지역사회(11.6%)의 책임은 상대적으로 작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복지제도가 아직은 개인과 가족의 책임을 기반으로 하며 많은 분야에서 정부의 개입은 잔여적인 현실과 대비된다.

<표 12> 사회소외계층 복지 책임 주체

(단위: 명, %)

	개인 본인	가족	정부	지역사회	개인과 정부	개인과 지역사회	합계
빈도	3	5	38	11	29	9	95
%	3.2	5.3	40.0	11.6	30.5	9.5	100

출처: 저자 계산, N = 95.

<표 13>은 예술계 대학생들은 직장인이 되었을 경우 사회의 어려운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세금을 30%-50% 정도 더 낼 생각이 있는가에 대한 응답을 보여준다. 41.2%는 보통이라고 응답하여 중도적 입장을 취하였다. 하지만 그 외 학생들에게서는 부정적인 응답(36.1%)이 긍정적인 응답(22.7%)보다 많아 과도한 세금 부담은 원치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자가 너무 의욕적으로 세금부담 비율을 높여 질문

한 것에도 일부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만일 10-20%의 세금을 더 부담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물어봤다면 더욱 많은 긍정적 응답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표 13> 복지향상을 위한 세금부담 수용 의사

(단위: 명, %)

	있음	없음	보통	합계
빈도	22	35	40	97
%	22.7	36.1	41.2	100

출처: 저자 계산, N = 97.

### 3) 사회적 측면

<표 14>는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성공을 위해 무엇이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예술계 대학생들의 응답을 보여준다. 이들은 사회적 성공을 위해서는 인맥(25.6%)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는 창의성(16.3%), 사교성(14.0%), 솔선수범하는 자세(12.8%), 집안배경(11.6%), 최종학력(9.3%), 체력(5.8%), 희생정신(4.7%) 등의 순서로 중요하다고 하였다. 예술계 대학생들은 창조적인 그들의 성향과는 달리 우리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맥이 제일 중요하다고 주목할 만한 응답을 하였다. 이는 우리 사회의 예술 분야에서는 여전히 인맥으로 형성된 나름대로의 성공카르텔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청년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표 14> 사회적 성공을 위한 중요 요소

(단위: 명, %)

	최종학력	배경	체력	사교성	인맥	희생정신	창의성	솔선수범	합계
빈	8	10	5	12	22	4	14	11	86



도									
%	9.3	11.6	5.8	14.0	25.6	4.7	16.3	12.8	100

출처: 저자 계산, N = 86.

<표 15>는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계층이동을 위해 무엇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예술계 대학생들의 응답을 보여준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계층상승을 위해서는 경제적 능력(23.1%), 인맥(22.0%)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는 집안배경(18.7%), 개인적 노력(18.7%), 학력(13.2%), 사회적 적응성(3.3%) 등의 순서로 중요하다고 하였다. 앞서 질문한 우리 사회에서의 성공을 위해 중요한 요인과 비슷하게 보일 수 있으나, 사회적인 성공이 반드시 계층이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계층이동을 위한 요인을 조사하였다. 청년들은 사회적 계층이동을 위해서는 단순히 인맥을 넓히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능력을 지녀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에 대해 역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표 15> 사회적 계층 상승을 위해 중요한 요인

(단위: 명, %)

	경제적 능력	학력	개인적 노력	인맥	사회적 적응성	집안배경	기타	합계
빈도	21	12	17	20	3	17	1	91
%	23.1	13.2	18.7	22.0	3.3	18.7	1.1	100

출처: 저자 계산, N = 91.

<표 16>은 우리 사회의 가장 자랑스러운 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예술계 대학생들의 응답을 보여준다. 이들은 우리 사회에서 정을 중시하는 문화(27.2%), 개인노력에 의한 계층이동의 가능성이 있는 점(18.5%), 어른을 공경하는 문화(17.4%), 한류의 창조와 보급(13.0%), 세계적 기업 육성(13.0%), 공동체 의식(6.5%), 사회적 약자배려(4.3%) 등의 순서로 중요하다고 하였다. 우리사회의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는 청년들의 시각은 매우 건강한 것으로 판단된다. 글로벌 시대를 사는 청년들은 다른 나라의 정치체제와 사회상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환경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

리사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에 대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예전 1970-80년대 보다는 각박해 졌지만 여전히 정을 중시하고 이웃과 더불어 정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에 큰 가치를 두는 우리사회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자랑스럽다고 청년들은 인식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우리 사회가 자랑스러운 점은 개인노력에 의해서 계층상승이 가능하다는 측면이다. 예전 전통사회에서는 신분에 의해 계층이동이 제한되었고, 아직도 전통적 계층체제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나라에서는 계층이동의 가능성이 많이 제약되고 있지만,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개인의 노력에 의해 얼마든지 계층상승을 할 수 있는 개방적이고 역동적인 나라라는 점을 청년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신분제가 없는 우리 사회이기에 청년들이 생각하는 계층상승은 대체로 경제적인 부의 축적과 사회적 지위의 획득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 다음으로 자랑스러운 점으로서 우리에게 어른을 공경하는 문화가 있다는 점을 들고 있는데, 가끔 어른에게 모욕을 주는 이상한 뉴스를 접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전히 어른을 공경하는 것이 중요한 가치이고 이를 지켜나가고자 하는 생각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청년들이 점점 버릇이 없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사회 일각에서의 비판과는 달리 여전히 우리 청년들은 건강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

다음으로 주목할 만 한 점은 일반적인 사회적 판단과는 달리 한류의 창조와 보급이나 세계적인 기업이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 약간은 과소평가되고 있었다. 조사대상이 예술계 대학생들이기에 한류의 창조와 보급에 대한 평가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했으나 분석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학생들이 단기적인 현상에 대한 평가보다는 보다 장기적이고 넓은 안목에서 판단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의 자랑스러운 측면에서 낮게 평가된 항목인 공동체 의식과 사회적 약자배려는 우리가 좀 더 고양시켜야 될 부분으로 여겨진다. 현재의 사회가 너무 개인주의적이고 물질만능주의로 흐르고 있기에 공동체 의식이 훼손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적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16> 우리 사회의 가장 자랑스러운 점

(단위: 명, %)

	개인노력에 의한 계층이동	정을 중시하는 문화	어른공경	사회적 약자 배려	한류의 창조와 보급	세계적 기업 육성	공동체 의식	합계
빈	17	25	16	4	12	12	6	92

도								
%	18.5	27.2	17.4	4.3	13.0	13.0	6.5	100

출처: 저자 계산, N = 92.

<표 17>은 우리 사회를 보다 살기 좋은 사회로 만들기 위해 중요한 점들에 관한 예술크 대학생들의 응답을 보여준다. 이들은 우리 사회를 더 살기 좋은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빈부격차 해소(28.7%), 청년일자리 창출(24.5%), 인권존중(16.0%), 사회정의(12.8%), 물질만능주의 극복(8.5%), 권위주의 극복(8.5%), 남북관계 개선(1.1%) 등의 순서로 중요하다고 하였다. 우리 사회를 보다 나은 사회로 만들기 위해 중요한 점으로서 첫째로 꼽은 것이 빈부격차해소 라는 점은 우리 청년들 역시 우리 사회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 간의 격차는 그들의 노력에 비례하는 일정수준 이내이어야 하는데 이런 수준을 넘어서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인구에 회자 되고 있는 금수저, 은수저 또는 흙수저 논란은 타고난 배경의 영향력이 후천적인 노력보다 더욱 크다는 점을 단적으로 드러낸 단어들로서 흙수저 청년들의 좌절을 나타내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들고 있는데 이는 역시 청년들의 암울한 현실과 미래 전망을 반영하는 응답이다. 현실적인 문제가 인권존중이나 사회정의와 같은 가치의 문제를 압도할 정도로 청년들의 불안감은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우리사회가 더욱 나은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폐해인 물질만능주의나 권위주의를 극복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남북관계 개선 등의 정치적 문제는 거의 관심이 없는 편이다.

<표 17> 보다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중요한 것

(단위: 명, %)

	청년 일자리	사회정 의	물질만 능주의 극복	빈부격 차해소	남북관 계 개선	인권존 중	권위주 의 극복	합계
빈도	23	12	8	27	1	15	8	94
%	24.5	12.8	8.5	28.7	1.1	16.0	8.5	100

출처: 저자 계산, N = 94.

## IV. 논의 및 결론

지금까지 예술계 대학생들의 사회의식을 정치적 측면, 경제·복지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으로 나누어 조사 분석하였다. 국내외적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실업률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청년들은 좌절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기에 이들이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은 매우 부정적일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청년들의 사회의식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정치적인 관점과 경제적인 전망에서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다른 한 편 사회적 측면에서는 우리사회의 긍정적인 면을 인식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모시고자 하는 마음이 나아가 든 기성세대보다 오히려 청년층에 있어 더욱 커다란 점을 알 수 있었다. 이하에서 그 주요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예술계 대학생들의 사회의식을 정치적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정치적인 성향과 정부에 대한 신뢰 사이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는데 보수성향의 청년들은 진보나 중도에 비해 정부를 신뢰하는 성향이 강하였다. 그러나 보수적인 청년층에서조차 정부를 전혀 신뢰하지 않거나 거의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상당수에 달해 사회과학대학 학생들보다도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었다. 청년들은 전공을 불문하고 현실의 취업난에 가장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원하고 있었다. 예술계 대학생들은 문화예술정책을 경제정책 다음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했다. 그리고 예술계 학생들은 사회과학대학생들보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많이 낮았는데 그 주된 이유는 이미 민족의 동질성이 많이 훼손되어 통일의 의의가 적다고 인식하고 있는 점과 통일시 재정 부담으로 인해 경제적인 안정이 훼손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예술계 대학생들의 사회의식을 경제적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예술계 대학생들은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전망에 대해 과반수가 부정적이었고 나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불과 2.9%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전망은 다시 졸업 후 직업선택에 영향을 주고 있다. 물론 예술계 대학생들은 자유로운 창작활동이 보장되는 개인창업이나 프리랜서를 선호하고 동시에 계약제나 임시직도 선호하였다. 이는 예술계 학생들의 특성상 직장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시간 활용이 가능한 직업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직업의 안정성이나 발전가능성을 고려하여 대기업이나 공공분야에 취업하려는 학생들도 어느 정도 있었다.

복지와 관련한 분석 결과를 보면 예술계 대학생들은 다른 어떤 복지정책보다도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정책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는

청년들이 우리사회에 아직은 많은 취약계층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이 심한 어려움에 처해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는 국민의 보건에 관한 인식이 제고로 인해 안전한 보건환경과 의료비 경감대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노인복지정책과 사회서비스의 확대에 관심이 높는데 이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맞춤형 복지서비스요구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장애인 복지와 여성복지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예술계 대학생들의 부모님 봉양과 관련된 태도는 주목할 만하다.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 혼자 사실 수 없을 때 누가 모시는 것이 좋은 지에 대해 예술계 대학생들은 응답자 본인이 모시겠다는 응답이 80.6%로 높았다. 이는 요즘 청년들의 효의식이 낮아졌다는 주장과는 상반된 결과이고 최근의 부양의식 조사와도 다른 결과이다 (김유경, 2016). 청년들의 건강한 의식수준이 돋보이는 점이다. 본인의 부모는 자신이 모시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하지만, 다른 한 편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돌봄의 가장 큰 책임은 정부(40.0%)에 있고 아니면 개인과 정부가 함께 책임(30.5%)을 져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잔여적 복지정책이 아직 우세한 우리 현실과 대비되는 결과이다. 예술계 대학생들은 직장인이 되었을 경우 사회의 어려운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세금을 30%-50% 정도 더 낼 생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어려운 현재의 경제상황 때문에 많은 세금을 저소득층을 위해 납부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계 대학생들의 사회의식을 사회적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성공을 위해 무엇이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이들은 인맥이 제일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우리 사회의 예술 분야에서의 성공을 위해서는 여전히 인맥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청년들이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예술계 대학생들은 사회적 계층이동을 위해서는 단순하게 인맥을 넓히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능력도 함께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자신의 사회계층이 상승되었다고 느끼려면 사회적 성공과 함께 경제적인 성공도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예술계 대학생들은 우리 사회의 가장 자랑스러운 점에 대해서 정을 중시하는 문화와 어른을 공경하는 문화를 들고 있는데, 이는 사회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우리 청년들은 전통적인 생활 속에서 중요시 되었던 정 의 문화를 여전히 중시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문화를 가치있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런 점과 더불어 개인노력에 의한 계층이동의 가능성이 있는 점을 우리 사회의 장점으로 들고 있는데, 이런 조사 결과는 일반적

으로 우리 나라의 자랑스러운 점이라 생각하는 한류의 창조와 보급이나 세계적 기업 육성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것과는 대조적인 것으로 전통적 가치를 중시하면서도 사회계층 이동의 개방적이고 역동적인 측면을 중시하는 사회의식을 지니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를 보다 더 살기 좋은 사회로 만들기 위해 중요한 점들에 관하여 첫째로 꼽은 것이 빈부격차해소 라는 점은 현재 우리사회의 부정적 변화추세에 대한 우려를 인식했기 때문이며, 다음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을 들고 있는데 이 또한 청년들의 우울한 향후 경제전망을 반영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정치적, 경제·복지적, 사회적 측면에서 바라본 예술계 대학생들의 사회의식은 그들을 둘러싼 현실적인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지만, 다른 한 편 사회적으로는 효와 노인공경 같은 전통적인 가치를 중시하고 개인적으로는 창조적 욕구 실현을 우선하는 건강한 수준이었다. 정부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신뢰를 얻기 위해서 청년일자리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우리사회를 더 나은 사회로 만들기 위해 빈부격차를 줄이고 사회의 저소득층을 배려하는 정책에 지속적으로 매진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구철희, 2015, 주요사회적 이슈에 관한 대학생의 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과학연구, 제37권 1호, pp. 121-135.
- 강병서·김계수, 2009, 사회과학 통계분석, 한나래출판사, 서울.
- 강선아, 2013, 대학생 자녀가 지각한 부모애착, 자아분화와 부모 부양의식, 인제대학교 석사논문, 경상남도.
- 김미정, 2011, 대학생들의 효의식과 효행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논문, 전라북도.
- 김유경, 2016, 부양환경 변화에 따른 가족부양특성과 정책과제, 보건사회연구원.
- 김주섭, 2013, 긍정심리자본이 대학생의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Andragogy Today : International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Vol. 16. No. 4, pp. 31-59.
- 박제신, 2003, 한국 대학생의 정치의식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논문, 서울.
- 배한동, 2001, 한국 대학생의 정치의식: 서울·경기, 광주·전남, 대구·경북지역 대학생의 정치의식 비교, 집문당, 서울.
- 임옥진, 2012, 대학생의 직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교육학 논총*, Vol. 33. No. 2, pp. 19-49.
- 황영기, 2012, 대학생의 사회복지의식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논문, 서울.
- 통계청, 경제총조사, 2016, 대전.

# A study on the art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of central social issues

Chulhoi Koo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Cheongju University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recognition of art college students in terms of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perspective. They have a low level of trust in the government and aspirations for the national unification. Due to the fact that art college students tend to be influenced by current competitive surroundings, their economic forecast is very negative and they are concerned about their job opportunities after graduation. With reference to social viewpoint, art college students set a high value on 'Hyo' and respect for the elderly people in our society. They consider the desire of creativity as being more important than any other factors when choosing a job. In order to provide a hope for the future of the young college students and acquire a trust in the government, the government should increase job opportunities and vitalize economic situation. With respect to enhancing the quality of life in the future, the government should make efforts to reduce income inequality and take measures to support the vulnerable in our society.

Key word: social recognition, job opportunity, Hyo, income inequality

논문투고일 : 2016. 09. 05

심사개시일 : 2016.

게재확정일 : 2016.





한국사회과학연구  
제38권 1호  
2016년 8월호

## 사회복지실천에서 동기화면접의 적용과 함의<sup>4)</sup>

청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장 수 미

### 국 문 요 약

동기화면접(Motivational Interviewing: MI)은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클라이언트의 행동변화를 촉진하는데 효과적인 근거중심실천(Evidence-Based Practice: EBP) 방법으로 소개되고 있다. 특히 동기화면접의 정신과 원칙은 사회복지실천의 가치와 매우 부합하며 사회복지사에게 잘 이해되므로, 향후 그 적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동기화면접의 적용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첫째, 동기화면접의 개념 및 기법을 살펴보고 둘째, 동기화면접의 정신과 원칙, 사회복지실천에의 유용성을 탐색해보며, 셋째, 중독, 이중장애, 만성질환 등 주요 영역에서 동기화면접의 개입 효과성을 문헌고찰을 통해 검토하였다. 결론에서는 사회복지실천에서 동기화면접의 함의를 살펴보고, 제한점을 논하였다.

주제어: 근거중심실천, 동기화면접, 행동변화, 사회복지실천

4) 이 논문은 2015학년도에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가 지원하는 학술연구조성비(특별연구과제)에 의해 연구되었음.

## I. 서론: 왜 동기화면접인가?

이론에 근거한 사회복지실천은 사회복지사의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이지만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활용되는 이론은 비교적 제한적이다. 실제로 정신역동이론, 인지행동이론, 실존주의/인본주의이론, 자아초월(transpersonal) 이론을 사회복지의 4가지 동력으로 부르는데(Derezotes, 2000), 이중 인지행동이론은 개인 및 집단을 대상으로 클라이언트의 행동변화를 위한 개입에 가장 많이 적용된 이론이다(Wahab, 2005 재인용). 이에 반하여 동기화면접(Motivational Interviewing, 이하 MI)은 최근에 사회복지실천에 적용되기 시작한 이론이자 대화의 방법으로서, 인간의 행동 변화를 초래하는 “동기”에 초점을 둔다.

1980년대 초 W. Miller에 의해 소개된 MI는 심리학, 간호학, 교육학 등 다양한 실천현장에서 그 효과성이 보고되고 있다. 초기에 MI는 직면과 충고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알코올중독치료의 대안으로 시작되었으나(Wahab, 2005; Hohman, 2012), 이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문제음주, 약물남용, 흡연, 도박, 이중장애, 가정폭력, HIV/AIDS, 당뇨병, 심장병과 같은 만성질환,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그 효과가 검증되고 있으며, 다양한 이슈에 그 적용이 확대되고 있다. PsycINFO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해보면 1980~1989년의 10년 동안에는 MI를 적용한 논문을 단 3편 찾을 수 있는 반면, 1990~1999년에는 35편, 2000~2008년에는 352편의 논문이 검색되어 MI에 대한 관심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Prochaska & Norcross, 2007). 이러한 현상은 기본적으로 MI가 단기적으로 개입하며, 비교적 훈련받기 쉬우며, 인간중심의 철학에 기반하고 있는 고유 특성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다(Lundahl et al., 2010).

MI는 다른 어떤 이론보다 사회복지실천에 잘 부합한다. 그 이유로는 MI가 사회복지윤리와 철학에서 강조하는 인간중심의 가치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사실 Miller & Rollnick(2002)은 MI가 왜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찾을 수 없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이후의 많은 연구자와 실천가들은 “치료적 관계”가 MI 효과의 핵심요소라고 지적한다(Wahab, 2005). 즉 MI에서 강조하는 공감, 치료적 관계는 사회복지의 가치인 인간 존엄성의 가치와 일관된다. 또한 MI의 클라이언트 중심 접근은 사회복지실천에서 자기결정의 윤리기준을 지지하며,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선택을 수용하고 존중하는 것이다(Wahab, 2005).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는 MI의 등장이후 다양한 학문 영역 및 실천

현장에서 그 효과성이 입증되고 있는 현 시점에 사회복지실천에서 동기화면접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연구범위로는 첫째, 동기화면접의 개념과 기법을 정리하고 둘째, 사회복지실천에서의 동기화면접의 유용성을 확인하며 셋째, 실제로 구체적인 적용분야와 효과성에 대하여 선행연구를 통해 고찰한 후, 마지막 결론에서는 사회복지실천 및 교육에의 함의, 제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MI가 다양한 실천현장에서 클라이언트의 행동변화에 개입하는 사회복지사의 개입수단으로 보다 폭넓게 활용되길 기대한다.

## II. 본 론

### 1. 동기화면접의 개념과 기법

동기화면접(Motivational Interviewing: MI)이란 클라이언트 중심적인 동시에 지시적 방법으로서, 클라이언트의 양가감정을 탐색하고 해결함으로써 변화에 대한 내적 동기를 증진시키는 방법이다(Miller & Rollnick, 2002). MI는 동기화면접이외에도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고 있는데, 동기증진치료(Motivational Enhancement Therapy, MET, Project Match Research Group, 1993), 단기 동기화면접(Rollnick et al., 1992), 단기 개입(Holder et al., 1991) 등 다양하다. 하지만 핵심내용과 정신은 MI에서 유래되었거나 유사한 형태를 가지며 개입 시간, 강도, 구조면에서 약간씩 다르다(Wahab, 2005). 국내에서도 MI는 동기화면접(이정희, 2001), 동기강화상담(신성만 외, 2015), 동기면담(이채원 외, 2014) 등 여러 명칭으로 번역되고 있다.

MI는 행동변화가 일련의 단계를 거치는 변화의 과정을 통해 발생한다고 개념화한 초이론모델(Transtheoretical Model: TM, Prochaska & DiClemente, 1982)에 근거한다. 즉 행동 변화는 전숙고단계(Pre-contemplation), 숙고단계(Contemplation), 준비단계(Preparation), 실행단계(Action), 유지단계(Maintenance), 재발단계(Relapse)를 통해 발생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현재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각 단계 내에서도 어떤 특성을 지니는지에 대해 민감성을 갖고 개입해야 한다. 예컨대, 전숙고단계에 있다고 해도 모두 동일한 특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하위유형의 특성에 따라 개입의 방법이 달라야 한다. 전숙고단계에 속하는 사람의 하위유형과 이

에 따른 개입지침을 문제음주자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CSAT, 1999; Ukachi, 2013 재인용).

첫째, 변화에 주저하는 전속고단계자로서 이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부족하고, 문제로 인한 영향이 별로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실제로 음주가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피드백이 주어져야 자신의 음주문제를 인식하는데 도움이 된다. 둘째, 호전적인 전속고단계자이다. 이들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없을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 따라서 자기 효능감(self-efficacy)을 강조하고, 음주에 사용되는 에너지를 다른 긍정적인 선택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셋째, 물러나는(뒤로 숨는) 전속고단계자로서, 이러한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변화에 대해 절망적이고 상황에 압도당한다. 이전에도 여러 번 치료받은 적이 있고 자신의 힘으로 여러 번 단주하려고 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이들은 다시 희망을 가지고 변화에 대해 긍정적이 되어야 하는데, 새 출발을 저해하는 구체적인 장벽을 탐색함으로써 이 과정이 이루어진다. 넷째, 합리화하는 전속고단계자로서 이들은 이미 모든 답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음주는 다른 사람에게는 문제이나 자신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다. 논리적, 이성적인 논쟁보다는 양면 반영(double-sided reflection)이 이런 유형의 클라이언트에게 가장 효과적이다. 이는 클라이언트가 말하는 것을 인정하되 클라이언트가 이전에 말했던 진술 중 상반된 것을 다루어주며 스스로 불일치를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다.

MI에서 사용되는 구체적인 기술과 기법은 다음과 같다. 전통적인 알코올중독치료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직면(confrontation)과는 달리 MI는 클라이언트가 변화의 이유, 계획, 동기를 만들어내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 즉 MI에서는 실천가가 클라이언트와 논쟁하거나, 변화하라고 강요하지도, 변화계획을 세우라고 하지도 않는다. 실천가들은 MI의 다음 4가지 기본원칙을 충실히 따르도록 훈련받는다(Miller & Rollnick, 2002; 이채원 외 역, 2014; Lundhal et al., 2010).

첫째, 공감 표현하기(expressing empathy)이다. 공감을 표현하는 것은 치료적 관계를 증진시키고 클라이언트 자신이 이해받는다고 느끼도록 하며 변화에 대한 저항가능성을 줄여준다. 이 과정을 통해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사고와 동기를 탐색하도록 돕는다. 둘째, 차이 발전시키기(developing discrepancy)는 클라이언트가 자신이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가치와 현재 나타나는 문제 행동 간의 차이를 직시함으로써, 왜 변화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다. 차이를 발전시킨다는 의미는 클라이언트에게 직면하거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 스스로 자

신의 양가감정을 검토하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저항과 함께 구르기(rolling with resistance)는 변화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주저함(망설임)을 존중하는 것이다. 저항은 병리적인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것이며 방어적 혹은 공격적인 상담기술은 사용하지 않는다. MI에서는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와 “씨름”하는 대신 “춤을 추어야”한다는 은유를 사용한다. 이는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저항을 회피하거나 직면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클라이언트의 방어를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넷째, 자기효능감 지지하기(supporting clients' self-efficacy)는 변화에 대한 자신의 능력을 클라이언트 스스로 확신하도록 하는 것으로 성공적인 변화를 위해 결정적이다.

또 다른 MI의 기술(원칙)로는 개방형질문하기(Open-ended questions), 인정하기(Affirmations), 반영하기(Reflections), 요약하기(Summaries), 자기 동기적 진술 이끌어내기(Elicit self-motivational statements)가 있다(CSAT, 2014). 개방형 질문하기는 예를 들어 “술을 좋아하나요?” 라고 묻기보다 “어떻게 해서 술을 좋아하게 되었나요?” 라고 물음으로써 문제에 대해 클라이언트의 시각에서 방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다. 인정하기는 클라이언트의 강점, 동기, 의도, 좋아진 점에 대하여 지지하고 커멘트하는 것으로 자존감이 낮은 클라이언트의 경우 치료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된다. 반영하기란 클라이언트가 말한 진술, 생각, 정서에 대해 반영해줌으로써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말을 주의깊게 듣고 있으며 이해하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사의 공감적이고 반영적 경청은 MI의 가장 기본적인 기술이다. 하지만 반영적 경청기술을 마스터하기는 어렵고 평생 동안 그 기술을 발전시키고 훈련해 가야한다. Miller & Rollnick(2002)는 반영적 경청의 능력이 없다면 MI 실천은 불가능하다고까지 말했다. 요약하기란 세션 동안 진행된 사항을 간헐적으로 요약해가는 것으로 면담내용을 정리하고 재인식하도록 하는 의미가 있다. 이상의 기술을 합쳐서 “OARS”라고 부른다. 마지막으로 자기 동기적 진술 이끌어내기는 클라이언트에게 변화가 필요하다고 사회복지사가 설득하는 것 보다 클라이언트 자신의 목소리로 현재의 관심사와 걱정을 표현하도록 하는 것이다.

## 2. 사회복지실천에서 동기화면접의 유용성

행동변화에 관한 문헌에서는 실천가가 클라이언트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이 변화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동기와 저항을 다루는데 효과적임을 강조한다(Brown & Miller,

1993; Wahab, 2005 재인용). 따라서 행동변화의 동기를 강조하는 MI 정신(Spirit)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Rollnick & Miller(1995)가 지적인 MI 정신 7가지를 보면, MI가 사회복지실천의 원칙과 매우 부합하며 사회복지사에게 친숙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변화에 대한 동기는 클라이언트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외부로부터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 둘째, 양가감정을 분명히 인식하고 해결하는 것은 사회복지사가 아닌 클라이언트의 몫이다. 셋째, 직접적인 설득은 양가감정을 해결하는데 효과적이지 않다. 넷째, MI의 상담스타일은 일반적으로 조용히 이끌어내는 방식이다. 다섯째,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양가감정을 들여다보고 해결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여섯째, 변화에 대한 준비는 클라이언트의 성향이기보다는 대인간 상호작용으로부터 발생한다. 일곱째,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관계는 전문가-수혜자이기보다 파트너쉽 혹은 동반자의 관계에 가깝다.

Hohman(2012)은 사회복지실천과 동기화면접에 관한 자신의 저서에서 MI 정신과 가치가 사회복지실천의 원칙 및 가치와 유사한 점, 사회복지사가 주로 개입하는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MI 활용을 지지하는 연구근거가 풍부한 점, MI가 다양한 실천현장 및 문화적 배경을 가진 클라이언트에게 효과적이라는 점, 다른 개입방법들과 통합하여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표 1>은 사회복지실천 원칙과 MI 정신과의 관계를 정리한 것이다.

<표 1> 사회복지실천의 원칙과 MI 정신의 관계

사회복지실천 (Scheafor & Horejsi 2007)	MI (Miller & Rollinick, 2002)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를 존중해야 한다.	MI 정신에서는 클라이언트와 동등한 파트너쉽을 형성하고, 진단명을 붙이지 않으며, 클라이언트와 협력적으로 일한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를 개별화해야 한다.	MI 정신은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는 고유한 관점과 생각에서 변화 동기를 유발시킨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자기 삶의 전문가임을 고려해야 한다.	MI 는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인식을 중요시하는 인간중심 이론과 접근에 기반한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자기효능감 지지하기는 MI 원칙중 하나로써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강점을

	인정하고 클라이언트 스스로 만들어낸 변화를 강조한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강점에 기초해야 한다.	MI 에서 사회복지사의 과업은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강점, 능력, 과거에 어떻게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인식하도록 한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참여를 최대화해야 한다.	MI 에서는 클라이언트가 대화의 주도권을 가져야하며,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자율성을 지지해야한다. 협력은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기반하여 변화계획이 수립됨을 의미한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을 최대화해야 한다.	조언은 클라이언트의 동의하에 해야 하고, 다양한 선택메뉴를 제공한다. 또한 선택을 할 때 클라이언트의 능력, 자율성이 강조된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자기주도적 문제해결기술을 배우도록 도와야 한다.	MI는 필요할 경우 다른 접근방법과 통합하여 사용된다.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가 문제해결기술을 배우길 원할 때 인지행동치료와 통합하여 개입한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역량강화를 최대화해야 한다.	MI 의 자기효능감 지지하기, 자율성 지지하기의 원칙은 클라이언트의 역량강화를 도와 궁극적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도록 한다.

(이채원 외 역, 2014: 29에서 재정리).

사회복지현장에서 근거중심 실천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MI에 대한 효과가 축적되고 있다는 점은 사회복지실천에의 적용성을 배가시킨다고 할 수 있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제 음주자에 대한 적용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전통적 개입의 대상인 소수자와 비자발적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그 적용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국내에도 MI가 소개됨에 따라 사회복지사는 물론 간호학, 심리학, 교육학 등 다양한 학문 영역 및 실천현장에 적용되고 그 효과성을 보고한 학술지 논문이 발표되고 있다. 논문의 편수가 많아 여기에서 모두 소개하기는 어려우므로, 최근의 저서 및 번역서만을 중심으로 살펴본다면 <동기면담과 사회복지실천>(이채원 외 역, 2014), <중독과 동기면담의 실제>(신수경, 조성희, 2015), <알기 쉬운 동기면담>(신수경, 조성희,

2016), <동기강화상담: 변화 준비시키기>(신성만 외 역, 2015), <간호 실무에서의 동기강화상담>(김성재 외 역, 2013), <학교에서의 동기강화상담>(신성만 외 역, 2015), <청소년을 위한 동기강화상담>(신성만, 권정옥 역, 2014)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다수가 출판되어 실무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많아지고 있다. 또한 음주문제자를 대상으로 한 매뉴얼이 소개되었으며(기선완, 노인숙, 2001), MI와 관련된 석박사 학위논문도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실천현장에서의 보급과 학술 연구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3. 실천현장에서 동기화면접의 적용

언급한 바와 같이 다양한 실천 현장에서 MI가 적용되고 그 효과성이 실증적으로 입증되고 있지만, 사회복지영역에서 동기화면접의 적용은 아직까지 제한적이다. 이에 다음에서는 사회복지학을 비롯하여 심리학, 간호학, 의학 등 관련 임상 실천현장에서 중독, 이중장애, 만성질환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적용된 MI 기반의 프로그램 내용, 절차와 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 1) 중독영역(알코올, 흡연)

MI는 문제음주자에 대한 개입에서 시작되었고, 현재까지도 중독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지역사회 및 임상표본)를 대상으로 가장 활발한 것으로 보인다. Labrie et al.,(2007)는 문제음주를 가진 대학생에 대해 MI를 실시하고 그 효과에 관한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먼저 자발적으로 지원한 대학 신입생(N=120, 평균나이 18.02, 표준편차 .50)에 대한 MI 기반의 음주문제 개입 연구를 살펴보면, 각 세션의 내용은 피드백 제공, 음주의 득과 실에 관한 결정매트릭스(decision matrix), 재발 예방, 변화 목표 설정 등으로 구성되었다. 집단은 10-15명의 신입생으로 이루어지고, 한 세션은 60-90분 동안 실시되었다. 진행자는 MI 훈련을 받은 박사과정생 2명으로, 이들은 집단성원의 음주문제에 대해 직면하지 않고, 저항을 다루며, 음주에 대한 집단성원 스스로의 결정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였다. 사전조사는 개입 전 3개월 동안 매일 매일의 음주경험을 자세히 적어보도록 함으로써 집단성원이 자신의 음주패턴을 인식하도록 하였다. 다음 세션에서는 집단성원에게 일반적인 대학생의 음주실태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여 자신의 음주수준과 비교하도록 하였다. 또한 음주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음주운전, 음주사고 폭력, 강압적 성관계 등)에 대한 피드백도 제공하였다.

그 다음에는 음주의 득과 실에 대해 집단성원이 함께 토론하는데 모든 성원의 의견이 존중된다. 만약 집단성원 자체적으로 이 작업의 수행이 어려우면, 리더가 칠판에 쓰면서 함께 진행하는 것도 무방하다. 다음 세션은 음주의 고위험 상황에 대한 논의로 이루어진다. 이는 음주 고위험 상황을 탐색해보도록 함으로써 각자가 고위험 상황을 다루는 기술이 있는지 밝혀낸다. 마지막으로 집단성원은 자신의 행동목표를 적어 보고 한 달 동안의 음주계획을 세워본다. 종료 후 3개월 동안은 매달 음주일지를 작성하도록 한다. 프로그램의 평가를 위하여 사전, 사후, 종료 1개월 후, 3개월 후 조사결과, MI 세션을 시행한 집단에서 음주일, 평균음주량, 총음주량에서 유의미한 감소가 있었다,

한편, MI 개입의 성과(outcome)를 공감, 작업동맹에 초점을 두고 실시한 연구도 있다. Feldstein & Forcehimes(2007)는 문제음주를 보이는 55명의 학부 대학생을 단일회기의 실험집단(MI 실시)과 통제집단으로 무작위 할당하고, 공감과 작업동맹에 대해 참여자와 치료자를 대상으로 측정하였다. 두 집단 모두 음주 관련문제의 감소가 나타났으나 실험집단에만 폭음이 유의미하게 감소되었다. 또한 두 집단 모두 음주의 감소는 있었지만 실험집단에서 폭음, 음주관련 문제의 효과크기가 더 컸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공감, 작업동맹과 음주량의 감소, 음주관련 문제와의 관련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연구가 지역사회 표본인 대학생의 음주에 개입한 것이라면, Bager & Vilstrup(2010)의 연구는 임상표본을 대상으로 MI의 효과를 제시하였다. 음주문제로 인해 입원한 알코올중독자는 단주의지를 갖고 있지만, 퇴원 후 재발하여 재입원하기도 한다. 이 연구는 MI에 기초한 단기개입의 효과를 검증하는 것으로, 퇴원 후 2달 동안의 단주기간 및 단주 예측변인을 밝히려는 데 있다. 그들은 덴마크의 한 대학병원에서 알코올 관련 질환, 문제음주로 입원한 50명의 환자에 대해 MI를 실시한 단기개입집단과 통제집단에 무작위 할당하였다. 통제집단은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퇴원한 집단성원으로 구성되었다. 연구결과, 단기개입에 참여한 환자가 퇴원 후 2달 동안의 단주율이 더 높았다. 이를 통해 MI에 기초한 단기개입이 퇴원한 알코올중독자의 단주율을 높이는데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한편, 국내에서 실시된 알코올중독자에 대한 MI 효과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이정경(2013)은 알코올중독 진단으로 입원치료중인 환자 120명중 자발적으로 집단상담

에 동의한 28명을 MI를 실시한 실험집단에, 24명을 통제집단에 배치하여 사전사후추후 검사를 시행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변화 동기의 하위요인인 양가성(ambivalence)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인식 및 실천 수준에서는 유의하지 않았고, 실존적 영적 안녕감, 작업동맹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최근 연구로 강경화(2016)는 문제음주를 보이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동기증진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였다(8주 주1회, 실험집단 24명, 대조집단 23명). 연구결과를 보면 맞춤형 동기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한 후 실험집단의 긍정적 음주 결과기대( $p=.025$ ), 음주거절 효능감( $p=.015$ )의 점수가 대조집단보다 유의하게 증가되었다.

MI는 최근 청소년 대상 금연치료에서도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접근방법으로 알려졌다(Curry et al., 2009). Colby et al.,(2012)는 14-18세의 흡연 청소년( $N=162$ 명)을 학교, 의료기관, 지역사회 기관에서 표집하여 금연을 목표로 하는 MI 집단과 단기 상담집단에 무작위 배치하였다. MI 집단에서는 대면(face-to-face) 개별 세션이 이루어졌으며, 개입종료 1주후 전화 사후 세션과 간단한 전화 부모상담이 이루어졌고, 단기상담집단은 일반적인 금연교육으로 진행되었다. 사전, 사후, 1, 3, 6개월 후 추후조사를 실시한 결과, MI를 실시한 집단에서 사전과 1개월 후 추후조사에서 일일 흡연량이 의미있게 감소함이 나타났다.

## 2) 이중장애(정신건강, 가정폭력)

정신장애인의 과도한 알코올소비는 치료 및 재활에 문제가 되는데, 국내는 물론이고 국외에서도 음주문제를 가진 정신장애인, 즉 이중장애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한 개입 연구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Baker et al.,(2012)은 PubMed, PsycINFO 데이터베이스에서 체계적 검색을 시행하여 음주문제를 가진 정신장애인에 대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효과성을 살펴본 연구논문을 찾았다. 최종적으로 7개의 논문을 살펴본 결과, 사정(assessment) 인터뷰, 단기 동기적 개입, 장기 인지행동치료가 정신장애인의 알코올소비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2 세션의 단기개입이 10 세션의 장기 심리적 개입만큼 알코올소비의 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음주문제를 가진 정신장애인과 같이 이중장애를 대상으로 단계적 모델을 시행할 때, 1차로 MI에 기반 한 개입을 먼저 제공하고, 이후 집중적인 인지행동치료(CBT)에 기반 한 개입을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폭력과 음주문제 역시 자주 동시발생(co-occurrence)하는 이슈로서, 음주문제를 가진 가정폭력가해자 개입에서 MI를 적용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된 바 있다. 전통적으로 가정폭력가해자에 대해서는 여권주의관점에서 인지행동치료를 적용하여 폭력에 대한 이해, 스트레스 상황에서 대처기술의 습득에 초점을 두었다. MI는 여러 접근방법과 통합적으로 시행하기에 용이하므로(Hohman, 2012), 음주문제를 가진 가정폭력가해자 개입에서도 MI와 다른 모델을 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장수미(2004)는 보호관찰소에서 수강명령으로 의뢰된 음주문제를 가진 가정폭력가해자(총 27명)를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으로 나누고, 실험집단에는 1단계로 동기증진치료에 기반한 음주프로그램, 2단계로 인지행동치료에 기반한 폭력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한편 비교집단에는 폭력에만 초점을 둔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사전, 사후, 종결 3개월 후 추후조사를 실시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실험집단의 사전사후, 사전추후조사시의 언어폭력, 신체폭력의 정도가 비교집단의 수준보다 유의미하게 더 감소하였고, 음주문제는 사전사후 조사에만 유의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MI를 적용한 통합프로그램이 음주문제를 가진 가정폭력가해자의 폭력행동 감소와 단기간의 음주문제 감소에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 3) 만성질환

만성질환자의 적절한 자기관리를 위해서는 특정 영역의 행동 변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당뇨병은 일상생활에서 규칙적인 약물요법, 식이요법, 운동요법이 필요하다. 관련연구로 체중과 혈당관리 문제를 가진 2형 당뇨병에 대한 MI 적용사례를 찾을 수 있었다. West et al.,(2007)은 2형 당뇨병을 가진 과체중 여성 217명(평균나이 53세)을 무작위 할당하여 실험집단(MI), 통제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실험집단은 45분간의 개별 MI 세션을 실시하였다. 진행자는 MI 기법에 대해 매주 수퍼비전을 받았고, 개입 세션을 녹취하여 진행방법에 대해 피드백 받았다. 통제집단은 건강관리 교육자가 동일한 시간동안 일반적인 건강이슈에 관해 토론하였다. 두 집단 모두 체중감소와 혈당관리의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p < .02$ ), MI 집단이 더 유의미한 수준에서 변화하였다.

Bennett et al.,(2005)은 당뇨병, 폐질환, 심장병, 관절염 등의 만성질환을 가진 111명의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대하여 MI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실험집단은 1시간의 대면면접에 의한 MI 세션을 시행하였고, 6개월 동안 3-45분간 평균 7회의 전

화면담을 추가하였다. 실험집단의 평균연령은 71.2세(SD=7.8), 통제집단은 69.2세(SD=7.1)이었다. 진행자는 24시간의 MI 교육을 수료하였고 교육, 역할극 등을 개입에 활용하였다. 전화면담은 개입 초기에는 길게, 개입후기에는 상대적으로 짧게 진행되었다. 연구결과, 실험집단의 건강관련 고통 수준이 유의미하게 줄었다고 보고되었다( $P=.05$ ). 이상의 두 연구에서 주목할 것은 진행자가 단기간의 MI 교육을 통해서도 개입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내연구로서 MI를 당뇨병환자에게 적용한 연구가 있다. 김미옥(2015)은 MI가 공복혈당장애 환자의 건강증진 생활양식, 행동변화단계, 당화혈색소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공복혈당장애를 가진 실험집단(MI 집단) 27명과 대조군 33명으로 무작위 배정하였고, 결과를 보면 변화단계 점수에서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t=-20.224$ ,  $p=.000$ ) MI 개입의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되었다. 반면 건강증진 생활양식( $t=-1.297$ ,  $p=.200$ )과 당화혈색소( $t=.794$ ,  $p=.431$ )에 대해서는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실시한 MI 개입은 당뇨병환자의 행동변화단계를 숙고전단계에서 숙고단계로 변화하도록 하는데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 III. 결 론: 합의와 제한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MI의 유용성을 고려할 때, 앞으로 사회복지실천 및 교육현장에서 MI를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예비)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훈련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MI는 사회복지사가 주로 개입하게 되는 비자발적 클라이언트(involuntary client)나 자기관리를 위해 행동변화가 필수적인 클라이언트의 동기를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된다. 실제로 중독, 이중장애, 만성질환 등에 개입하는 사회복지 영역에서 MI 기반의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그 효과가 알려지고 있으며, 이외의 영역에도 그 적용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예컨대, 최근의 실천현장에서는 MI가 노인의 이슈를 다루는데도 효과가 있음이 나타났다(Cummings et al., 2009). 그동안 노인에 대한 사회복지실천에서는 주로 인지행동, 문제해결, 회상요법이 적용되었고 사회복지사가 이러한 접근방법에 대한 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Hooyman & Kiyak, 2008). 하지만 MI의 특성은 단기간동안 클라이언트의 삶에 변화를 초래하므로 병원이나 요양원 등에서 단기개입을 해야 하는 사회복지사에게 MI 학습과 훈련은 유용할 것으로 본다(Cummings et al., 2009).

MI를 배우는 것은 “단순하지만 쉽지 않다(Simple but not easy)”고 한다(Miller & Rollnick, 2013: 324). 사실 새로운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예전 것, 친숙하게 사용했던 것을 버리고 구체적인 새로운 기술로 대체하여야 한다(Barwick et al., 2009). 친숙한 것이 반드시 클라이언트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Collins(1990)은 사회복지 전공생들이 학습과정에서 “폐쇄형 질문을 사용하며, 너무 많은 질문을 던지며, 성급하게 조언을 하거나 문제를 해결해주려고 하며, 또한 문제를 축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면서, 이를 ”역기능적인 상담기술“이라고 하였다. 그는 학생들이 실제 클라이언트를 만날 때는 불안이 발생하는데, 이 불안은 역기능적인 행동을 더 증가시킨다고 하였다(Hohman et al., 2015 재인용), 따라서, 체계적인 훈련과정은 사회복지 전공학생이나 실무자들이 MI 정신을 이해하고 기술을 습득하는데 효과적임이 나타나 우리의 교육현장에서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Hohman et al., (2015)은 사회복지학부생을 대상으로 한 학기동안 MI를 가르치고 (MI의 개념, 배경, 정신, 구체적인 기법 훈련, 기록방법 등) 학생들의 기술습득 정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반영적 경청, 저항에 반응하기, 요약하기, 변화진술 이끌어내기 등에서 사전과 사후조사에 유의미한 기술의 습득이 있었음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국내 사회복지학 교육의 필수교과목인 『사회복지실천기술론』 등에서 MI를 소개하고 훈련시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학부교육에서 준비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사회복지실천에서 MI의 제한점을 살펴보면, Hohman(2012)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이채원 외 역, 2014: 40-41). 첫째, 대부분의 MI는 미시체계(개인)와 중시체계(가족과 집단)에 속한 클라이언트에 적용되고 있으며, 거시적 현장에서 MI 적용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둘째, MI 방법이 “환경속의 인간” 관점에 기반 하기 보다는 클라이언트 개인에 초점을 두는 “개별적 접근”이라는 데 실천가들의 우려가 있다. 즉 MI는 클라이언트가 상호작용하는 다양한 체계간의 관계보다 개인에만 초점을 두는 것인데, 예를 들어 폭력발생을 허용하는 문화보다 폭력생존자를 중심으로 개입한다는 것이다. 셋째, 언급한 바와 같이 MI 기술을 배우는 것이 쉽지 않은데, MI 훈련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수퍼비전, 코칭, 피드백이 중요하다. 이외에 Wahab(2005)이 지적한 기관의 정책과 관행이 MI 정신과 활용에 지지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MI가 적용되는데 제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새로운 정보와 기술에 허용적이며 장려하는 기관의 문화가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끌어올리고, 사회복지사의 역량강화에 일조할 것은 분명해보이기 때문이다.

## 참 고 문 헌

- 강경화(2016) 문제음주자를 위한 맞춤형 동기증진프로그램의 개발과 평가,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박사학위논문.
- 기선완, 노인숙(2001) 한국형 동기강화치료 프로그램 모형 개발.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 김미옥(2015) 동기강화면담이 공복혈당장애 환자의 건강증진생활양식, 행동변화단계, 당화혈색소값에 미치는 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11): 338-346.
- 신수경, 조성희(2015) 중독과 동기면담의 실제. 시그마프레스.
- 신수경, 조성희(2016) 알기 쉬운 동기면담. 학지사.
- 이정희(2001) 지역사회 문제음주자를 대상으로 한 동기화면접 적용 강점기반 사례관리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장수미(2004) 음주문제를 가진 가정폭력가해자 폭력행동 감소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 동기증진치료의 활용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6(1): 103-126.
- Bager, P., & Vilstrup, H., (2010) Post-discharge Brief Intervention Increases the Frequency of Alcohol Abstinence—A Randomized Trial, *Journal of Addictions Nursing*, 21: 37-41.
- Baker, A., Hiles, S., Thornton, L, Hides L, & Lubman D., (2012) A systematic review of psychological interventions for excessive alcohol consumption among people with psychotic disorders, *Acta Psychiatr Scand*, 126: 243-255.
- Barwick, M., Peters, J., & Boydell, K. (2009) Getting to uptake: Do communities of practice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evidence-based practice?, *Journal of the Canadi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18:16-29.
- Bennett, J. A., Perrin, N. A., Hanson, G., Bennett, D., Gaynor, W., Flaherty-Robb, M., et al. (2005) Healthy aging demonstration project: Nurse coaching for behavior change in older adults, *Research in Nursing & Health*, 28: 187-197.
- Brown, J., & Miller, W. (1993) Impact of Motivational Interviewing on residential alcoholism treatment, *Psychology of Addictive Behaviors*,

7(4): 211-218.

- Centre for Substance Abuse Treatment (1999, 2014). Enhancing motivation for change in substance abuse treatment. Treatment Improvement Protocol (TIP) series, Number 35. HHS Pub. No. (SMA) 08-4212. Rockville, MD: 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
- Colby, S., Nargiso, J., Tevyaw, T., Barnett, N., Metrik, J., Lewander, W., Woolard, R., Rohsenow, D., & Monti, P. (2012) Enhanced motivational interviewing versus brief advice for adolescent smoking cessation: Results from a randomized clinical trial, *Addictive Behaviors*, 37: 817-823.
- Collins, D. (1990) Identifying dysfunctional counseling skill behaviors. *Clinical Supervisor*, 8: 67-79.
- Cummings S., Cooper, R., & Cassie, K.,(2009) Motivational Interviewing to affect behavioral change in older adults, *Research on Social Work Practice*, 19(2): 195-204.
- Curry, S., Mermelstein, R., & Sorer, A., (2009) Therapy for specific problems: Youth tobacco cessation,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0: 229-255.
- Dart, M. A. (2011) Motivational Interviewing In Nursing Practice, 김성재, 주세진, 강경자, 장희경 역 (2013) 간호 실무에서의 동기강화상담, 정담미디어.
- Derezotes, D. (2000) Advanced Generalist Social Work Practice, Thousand Oaks, CA: Sage.
- Feldstein, S., & Forcehimes, A., (2007) Motivational Interviewing with Underage College Drinkers: A Preliminary Look at the Role of Empathy and Alliance, *The American Journal of Drug and Alcohol Abuse*, 33: 737-746.
- Herman, K., Frey, A., Shepard, S., & Reinke, W., (2014) Motivational Interviewing in Schools, 신성만, 김동일, 정여주, 신정미 역 (2015). 학교에서의 동기강화상담, 박학사.

- Hohman, M.,(2012) *Motivational Interviewing in Social Work Practice*, The Guilford Press. 이채원, 김윤희, 김은령, 임성철 역(2014) 동기면담과 사회복지실천, 학지사.
- Hohman, M., Pierce, P., & Barnett, E., (2015) Motivational Interviewing: An evidence-based practice for improving student practice skills, *Journal of Social Work Education*, 51: 287-297.
- Holder, H., Longabaugh, R., Miller, W., & Rubonis, A., (1991) The cost effectiveness of treatment for alcoholism: A first approximation,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52(6): 517-540.
- Hooyman, N., & Kiyak, H. (2008). *Social Gerontology* (8th ed.). Needham Heights, MA: Allyn & Bacon.
- LaBrie, J., Pedersen, E., Lamb, T., & Quinlan, T. (2007) Campus-based motivational enhancement group intervention reduces problematic drinking in freshmen male college students, *Addictive Behaviors*, 32: 889-901.
- Lundahl, B., Kunz, C., Brownell,C., Tollefson, D., and Burke, B., (2010) A Meta-Analysis of Motivational Interviewing: Twenty-Five Years of Empirical Studies, *Research on Social Work Practice*, 20(2): 137-160.
- Miller, W., & Rollnick, S. (2002, 2013) *Motivational Interviewing: Helping People Change*, Third Edition. 신성만, 권정옥, 이상훈 역(2015) 동기강화상담: 변화 준비시키기. 시그마프레스.
- Naar-King, S.,& Suarez, M. (2011) *Motivational Interviewing with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신성만, 권정옥(2014) 청소년을 위한 동기강화상담, 교보문고.
- Prochaska, J., & DiClemente, C. (1982) Transtheoretical therapy: Toward a more integrative model of change,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19(3): 276-288.
- Prochaska, J., & Norcross, J.. (2007) *Systems of Psychotherapy: A Trans-theoretical Analysis*. Thompson Books/Cole: New York.
- Project Match Research Group (1993) *Project MATCH: Rationale and methods for a multisite clinical trial matching patients to alcoholism*



- treatment, *Alcoholism: Clin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 17(6): 1130-1145.
- Rollinick, S., Bell, A. & Heather, N. (1992) Negotiating behavior change in medical settings: The development of brief motivational interviewing, *Journal of Mental Health*, 1(1): 25-37.
- Rollinick, S. & Miller, W. (1995) What is Motivational Interviewing?, *Behavioral and Cognitive Psychotherapy*, 23(4): 325-334.
- Scheafer, B., & Horejsi, C. (2007) Techniques and guidelines for social work practice(8th ed.) Boston: Pearson Press.
- Wahab, S. (2005) Motivational Interviewing and Social Work Practice, *Journal of Social Work*, 5: 45-60.
- West, D. S., DiLillo, V., Bursac, Z., Gore, S. A., & Greene, P. G. (2007). Motivational interviewing improves weight loss in women with type 2 diabetes. *Diabetes Care*, 30: 1081-1087.
- Ukachi, M. (2013) Motivational interview: Evidence based strategy in the treatment of alcohol and drug addiction, *IFE Psychologia*, special edition, 21(3-S): 174-196.

# Motivational Interviewing and Social Work Practice

Soo Mi Jang  
Dept. of Social Welfare  
Cheongju University

Motivational Interviewing(MI) has been proposed as the method of an Evidence-Based Practice(EBP) for facilitating clients' behavior change in the setting of Social Work practice. The spirit and principals of MI correspond with the value of Social Work practice and are well understood to social workers. Accordingly, the application of MI is expected to expand in various Social Work settings. This study defined and explained MI by presenting its definition, skills & techniques, essential spirit, principals, and the availability in the Social Work practice. Also,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iveness of MI intervention focused on the area of addiction, dual disorder and chronic disease by literature reviews. Lastly, implications and limitation of MI in the Social Work practice were discussed.

Key words: Motivational Interviewing(MI), Evidence-Based Practice(EBP), Behavior change, Social Work practice.

논문투고일 : 2016. 09. 09

심사개시일 :

게재확정일 :



한국사회과학연구  
제38권 1호  
2016년 8월호

## 인공지능과 법 -지능형 로봇 및 운영자의 형사책임에 관한 고찰\*

청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부교수  
이 주 희

### 국 문 요 약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과 함께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영역도 확대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시스템이 장착된 지능형 로봇은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보조자로서 제조업과 농업 뿐만 아니라 교통이나 군사 영역을 넘어 의학 분야에서도 점점 필수불가결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지능형 로봇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간과해서는 안 되는 문제가 있다. 바로 지능형 로봇으로 인해 형법적으로 중요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형사책임의 문제이다.

행위를 한 것도 그에 의한 결과를 발생시킨 것도 지능형 로봇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로봇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현행 형법의 책임귀속은 의사의 자유와 가치판단의 자유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유 및 자유의 행사는 육체와 정신을 소유한 살아있는 “인간”만이 누릴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 중심의 현행 형법에 의한 지능형 로봇의 형사책임은 지능형 로

\* 이 논문은 2015-2017학년도에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서 지원하는 학술연구조성비(특별연구과제)에 의해 연구되었음.

봇만을 위한 새로운 책임귀속의 구조를 만들어내지 않는 이상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지능형 로봇에 의해 발생한 형법적 결과를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은 채 불행한 사고 또는 우연이라고 치부해서는 안 된다. 지능형 로봇의 등장으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인공지능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형법적 결과에 대한 로봇 운영자의 형사책임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운영자의 형사책임은 고의범보다는 과실범과 관련하여 등장하게 될 것이다. 지능형 로봇의 투입으로 인한 형법적으로 중요한 결과는 의도치 않게 발생하는 경우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필요한 것은 지능형 로봇의 운영자에 대한 주의의무의 기준 설정이며, 이것은 지능형 로봇의 투입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효용의 크기 및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지능형 로봇과 결부된 위험을 가장 관범위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주제어: 인공지능, 지능형 로봇, 운영자, 형사책임, 자유, 고의범, 과실범

# I. 서론

최근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했을 뿐 이미 인공지능은 우리 삶의 여러 곳에서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군사영역에서 인공지능이 장착된 드론이 무인정찰 등의 목적으로 투입된 지 이미 오래되었으며, 항공기의 자동조종장치를 비롯하여 최근 미국 몇몇 주에서 상용화된 자율주행 자동차도 인공지능으로 인해 가능해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공지능의 발전 및 활용을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듯하다. 거기에는 무엇보다 기술의 발달로 인한 인간 생활의 편의 증대라는 기대심리가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의 미래를 묘사한 시나리오에 의하면 “정서적 반응”능력을 가진 기계가 병원 및 요양원에서 병자를 돌보고, 박물관 및 전시회에서 방문자 안내를 한다. 군사용 로봇이 보초를 서고, 자율주행 차량이 도로와 철로를 달리며,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인명구조를 위해 지능형 로봇이 투입된다. 영구적으로 이용가능한 가상 캐릭터 형태의 인공지능이 보조자로서 -예를 들어 핸드폰을 통해-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정보를 사전구성하며, 이용자의 의사소통행태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게 된다.<sup>1)</sup> 이처럼 누군가가 항상 우리 곁에서 일상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정서적 도움을 줄 수 있다니 얼마나 편리한가.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 긍정적인 면이 있으면 부정적인 측면도 있기 마련이다. 인공지능의 경우 오작동으로 인한 인간의 생명, 건강, 재산을 침해한다. 이러한 피해의 발생과 관련하여 도대체 누가 행위자이며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하는 문제가 등장하게 된다.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사용한 자, 즉 운영자인가, 아니면 인공지능이 장착된 시스템 그 자체인가? 본 논문은 인공지능의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의 문제를 형법적인 관점에서 지능형 로봇이라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

1) Susanne Beck, Brauchen wir ein Roboterrecht?, Ausgewählte juristische Fragen zum Zusammenleben von Menschen und Robotern, in: Japanisch-Deutsches Zentrum (Hrsg.): Mensch-Roboter-Interaktionen aus interkultureller Perspektive. Japan und Deutschland im Vergleich, Berlin, 2012, S.124.

## II. 지능형 로봇의 의미

지능형 로봇이란 대량의 정보를 수집할 뿐 아니라 특정한 패턴에 따라 정보를 해석하고 처리된 정보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지능형 로봇은 전자계산기와 같은 단순 정보처리 시스템이나 잔디깎기처럼 감지한 외부의 정보를 개발자가 만들어 놓은 규칙대로 이행하는 개방형 시스템과는 달리 수집한 다양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분석하고 이후 결정결차에서 독자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나아가 지능형 로봇은 수집된 정보를 체계화하고 주어진 목표를 가능한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일정한 패턴에 따라 처리할 뿐 아니라 (가장 광범위한 의미에서) 자신의 행동을 획득한 정보에 따라 조절하는 방식으로 “학습”할 수 있다.

이러한 지능형 로봇의 특징은 2008.3.28. 제정되어 같은 해 9.29. 시행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상의 개념정의에 잘 드러나 있다.<sup>2)</sup> 이에 따르면 지능형 로봇이란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장치를 말한다.<sup>3)</sup>

## III. 지능형 로봇의 형사책임

예컨대, 자율주행 자동차가 다른 도로사용자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러한 경우 자율주행 자동차를 현행 형법상 살인범죄 또는 상해범죄의 구성요건을 적용하고 처벌할 수 있을까?

### 1. 형법상 귀속구조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Verantwortlichkeit)을 지기 위해서는 자유(Freiheit)가 전제되어야 한다. 형법에 있어서도 다르지 않다. 형법상 책임을 지기 위

---

2) 본 법을 제정한 이유는 “첨단기술의 융합체인 지능형 로봇에 대하여 국가가 체계적으로 연구·개발하고, 초기시장의 창출과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으로 로봇랜드를 조성하며, 로봇품질의 인증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로봇윤리현장의 제정과 보급을 통하여 로봇이 반사회적으로 개발·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는 등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인 지능형 로봇을 미래 국가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

3)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2조 제1호.

해서는 인간의 자유가 전제되어야 한다. 자유는 경험적으로(실증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반면 형법의 논증 지평은 -규범학의 일부로서- 다른 부류에 속한다는 점에서 오로지 경험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규범학은 현실에 대해서가 아니라 당위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그러나 당위는 현실로부터 도출될 수 없으므로 규범적 접근을 필요로 하며, 따라서 결정주의(Determinismus)와 비결정주의(Indeterminismus)의 전통적인 대립과 반목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의 입장이 어떤 지점에서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사실상 이들은 완전히 다른 영역, 즉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

만약 현실 세계 뿐만 아니라 당위의 세계를 상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리고 이 세계가 인간 행동에 의해 더 발전된 또 다른 상태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는다면, 명령(Gebot)을 통해 바라는 방향으로 세계를 변화시키거나 금지(Verbot)를 통해 지금 이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함께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금지에 의한 현상 유지는 현재 상태가 그 자체로 보존할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규범적으로 판단할 때 유지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여질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의무를 부과하여 세계의 진행(Weltlauf)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또한 가치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의무대상자에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유지시킬 수도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점이다; 누구도 자신의 능력 이상의 의무를 부담할 수는 없다(*ultra posse nemo obligatur*).

지금까지 사용했던 자유 개념을 형법적 맥락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 왜냐하면 형법은 전통적으로 -이른바 (17-18세기 자연법론 및 이성법론에 그 정신적 기원을 두고 있는) 목적론적 행위론의 영향을 받아- 자유를 의사의 자유(Willensfreiheit)와 가치판단의 자유(Bewertungsfreiheit)로 분류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두 가지의 자유는 유책한 행위의 형법적 귀속을 두 단계로 나누는 역할을 한다. 그 중 하나는 사실의 귀속/객관적 귀속(imputatio facti)의 단계이며, 또 다른 하나는 법적 귀속/주관적 귀속(imputatio juris)이다. 오늘날 imputatio facti는 행위귀속 또는 구성요건해당성이라고 불리는 반면, imputation juris는 책임귀속이라고 부른다.

행위의 구성요건해당성에 관점에서 관건은 형법상 의미가 있는 결과-예컨대 살인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망-를 그 결과를 야기시킨 행위자와 결부시키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중요한 것은 살인행위의 귀속이며, 특히 이 행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bewerten)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 따라서 문제가 된 사건을 이후에

가벌적 행위로 평가하기 위해서는(bewerten) 행위자가 어떤 행위를 할 것인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행위자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무엇인가가 우연히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

그 결과 행위자에게는 달리 행위할 수 있는, 이른바 타행위가능성이 존재해야만 한다 -예컨대, 그가 원하지 않았다면, 살인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에 반하여 누군가가 절대적 폭력(vis absoluta)하에 있었다면, 그는 자유의사에 의해 행위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 폭력에 의해 강요당한 것이므로, 즉 타행위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그는 행위한 것이 아니다. 예컨대 누군가 타인에 의해 백화점 유리에 부딪혀 그것을 깬다 하더라도 이는 물건의 훼손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와 상관없이 또한 이것을 선한 것으로 평가할 것인지 아니면 악한 것으로 평가할 것인지와 상관없이 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객관적 귀속 내지 행위 귀속의 단계에서의 이러한 자유-우리는 이를 의사의 자유(Willensfreiheit)라고 부를 수 있다-는 형법적 책임비난과 관련된 자유와 구별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선 이를 위해서는 행위로서 귀속된 행동은 일정한 가치판단(Bewertung)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가치판단은 형법 영역에서는 형법이라는 법률에 근거하여 행해지고, 도덕의 영역에서는 도덕법칙에 근거하여 행해진다. 그러나 형법적 가치판단과 도덕적 가치판단은 구조적으로 동일하다. 왜냐하면 가치판단에서 관건이 되는 것은 문제가 된 행위의 규범적합성이기 때문이다. 자연법론적으로 말하자면 이에 대한 검토는 행위에 대한 법률 적용(applicatio legis ad factum)과 관련하여 이루어진다. 형법적 맥락에서 이러한 법률 적용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결론으로 귀결된다: 행위는 위법하다; 또는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 후자의 경우 해당 행위는 형법상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한다. 설사 다른 맥락, 예컨대 소설이나 연극의 소재로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반면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행위자는 법률을 위반한 것이 된다. 다만 행위자에게 이러한 법률위반을 귀속시킬 수 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귀속의 두 번째 단계인 imputatio juris, 오늘날 일반적으로 “책임귀속(Schuldzurechnung)”이라고 부른 단계를 살펴봐야 한다. 책임귀속은 -이런 점에서 첫 번째 귀속단계인 이러한 책임귀속은 첫 번째 귀속 단계, 즉 행위귀속의 단계와 마찬가지로 자유를 전제로 한다. 하지만 여기서 자유는 의사의 자유가 아니다. 이때의 자유는 적법과 불법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 말하자면 가치판단의 자유(Bewertungsfreiheit)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나이가 어려서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적법과 불법을 구별할 수 없는 자는 가치판단의 자유를 갖지 못한다. 그는 행위할 수 있고 따라서 그 행위 자체를 그에게 귀속시킬 수 그의 행위는 금지된 것, 즉 위법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행위에 대한 책임을 귀속시킬 수는 없다. 왜냐하면 나이 또는 질병으로 인해서 적법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자는 적법한 행위를 할 것인지 아니면 불법한 행위를 할 것인지 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나이 또는 질병과 상관없이 관련된 법률을 불가피한 사유로 알지 못하는 자 역시 책임이 부정되어 형벌로 처벌할 수 없다. 예컨대 공식적인 허가 없이 “임상심리전문가(Psychologischer Psychotherapeut)”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독일형법 제132조의 a에 의하면 범죄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이러한 착오를 회피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한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금지규범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임상심리전문가”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는 자의로 불법을 결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유추해 볼 때 형법은 자의로 불법을 결정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당한 압박, 예컨대 절박한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위법한 행위를 한 자는 자의로 불법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선박 사고 이후 다른 조난자를 구명정에서 밀어버린 자는 이것이 그에게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을 경우 유책하게 행위했다고 볼 수 없다. 그는 강제적 폭력(vis compulsiva) 하에서 행위한 것이고 따라서 법률에 의해 면책된다.<sup>4)</sup>

## 2. 지능형 로봇의 형사책임

지금까지 간략하게 형법적 귀속이론의 구조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로써 로봇이 형법상 책임을 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생각건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무래도 “아니요”가 되어야 할 것만 같다. 물론 언젠가 로봇은 자신들이 의사의 자유(Willensfreiheit)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자의로 행위 개시 여부에 결정할 수 있다는 인상을 우리에게 전달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지 우리가 로봇의 결정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인상일 뿐이며 그들이 진정 자유롭게 행위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사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우리는 의사의 자유에 대한 인상만을 가질 뿐, 인

---

4) Jan C. Joerden, Strafrechtliche Perspektiven der Robotik, Robotik und Gesetzgebung, in: Eric Hilgendorf/Jan-Philipp Günther (Hrsg.): Nomos, 2013, S.200ff.

간이 진정으로 자유로운지는 제3자적 관점에서 볼 때(Dritte-Person-Perspektive) 전혀 알 수 없다. 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인간의 의사의 자유로부터 출발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이를 로봇에게 적용해 본다면, 로봇은 우리 인간에게 그들이 자유롭게 행위(작위 또는 부작위)여부를 결정한다는 인상을 확고하게 전달해주는 튜링 테스트(Turing-Test)를 통과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상을 만들어내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한 결정은 단지 Yes/No-결정 모델에 의해 이루어지며, 왜 그렇게 결정했는지에 대한 근거설정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로봇을 설계할 때 로봇에게 의사의 자유를 부여할 수 있고 따라서 어느 정도 자신 있게 로봇이 가고, 서고, 달리고, 자고, 흠치고 살인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형법적으로 의미있는 행위를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인정한다면 살인을 하거나 도둑질을 한 로봇은 위법하게(rechtswidrig) 행위한 것이 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행위들은 형법상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로봇이 자의로 법을 위반했고, 따라서 유책하게(schuldhaft) 행위했다는 것을 장차 튜링 테스트를 통해 확인한다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적법 또는 불법에 대한 결정은 행위자가 왜 자신의 행동을 위법 또는 적법하다고 판단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즉 행위자는 자신의 행동이 금지된 것인지 허용된 것인지 판단해야 하며 또한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로봇은 이것(적법과 불법에 대한 가치판단)을 할 수 없으며 당분간은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견해를 설득력 있게 만들기 위해 다시 한번 튜링 테스트라는 사고 실험(Gedankenexperiment)을 해보자. 이 사고 실험에서 관건이 되는 것은 컴퓨터가 그와 의사소통하는 자에게 지금 인간과 소통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지 여부를 알아내는 것이다. 또는 요구수준을 조금 낮춘다면; 벽 뒤에 숨어있는 누군가와 의사소통을 하는 자가 자신과 소통하는 상대방이 인간인지 컴퓨터인지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을 경우, 컴퓨터는 지능적(intelligent)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세련되어진 것이다.

의사소통의 주제를 특정한 상황으로 한정한다면, 컴퓨터에 대한 튜링 테스트는 매우 성공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예컨대 체스 컴퓨터와 다음 수에 대해 의사소통하는 자는(다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다), 아마도 컴퓨터가 대부분의 경우 그 어떤 체스 선수보다 체스를 잘 둔다는 것 말고는 달리 컴퓨터와 인간을 구별할 수 있는 다른 기준을 찾기 힘들 것이다. 당대의 체스 챔피언이었던 Garri Kasparov는 체스 컴

퓨터인 “Deep Blue”와 대결을 벌여 패하고 나서 “신의 힘(Hand Gottes)”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의사소통이 다른 영역으로 확대될 경우, 예컨대 역사 또는 유머에 대한 설명 또는 가치판단에 대한 이해 등에 대해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경우, 이것은 컴퓨터에게 기본적으로 어찌면 영원히 풀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여기서 핵심적인 문제 역시 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 누군가 자의적으로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싶다면, 행위자가 법에 대하여 무엇을 알고 있는지(wusste)를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법적인 가치판단(rechtliche Bewertung)을 전제로 한다; (적용될 수 있는) 법률에 대한 인식조차도 단순히 0과 1이라는 이진법으로 처리가능한 지식함수(Wissensfunktion)가 아니며, 각각의 법조문에 대한 이해 및 법적 가치판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이해가 로봇 안에서 작동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은 상상하기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최소한 당분간은 자유 및 자유의 행사와 상관없는 새로운 책임개념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로봇에게 형법상 책임(Schuld)을 귀속시킬 수 있는 설득력있는 시나리오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sup>5)6)</sup>

## IV. 지능형 로봇 운영자의 형사책임

하지만 지능형 로봇이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더라도 그에 대한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은 불안감을 불러일으킨다; 또한 이러한 불안감은 점점 더 많은 지능형 로봇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독립적인 행위자로 등장하게 될수록 커질 수 밖에 없다. 전술한 바와 같이 현재 지능형 로봇을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제기되는 문제는 어떤 조건 하에서 기계 뒤에 있는 인간에게 지능형 에이전트의 오작동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앞에서 제시한 예시에서처럼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람을 살해 또는 상해한 경우 제작자나 판매자 또는 이를 투입하고 사용한 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저야 하는가? 이하에서는 지능형 로봇의 제작자, 프로그

---

5) Jan C. Joerden, Strafrechtliche Perspektiven der Robotik, Robotik und Gesetzgebung, in: Eric Hilgendorf/Jan-Philipp Günther (Hrsg.): Nomos, 2013, S.203ff.

6) 로봇의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로봇 형법”의 도입가능성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서는 김영환, 지능형 로봇의 법철학적·형사법적 쟁점, 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IV), 형사정책연구원, 2015, 315면 이하 참조.

래머, 설계자, 판매자, 사용자 등 지능형 에이전트와 관련하여 형사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자들은 모두 운영자라고 부르기로 한다.

## 1. 고의범으로의 처벌가능성

지능형 로봇이 형법적으로 중요한 결과를 초래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었다면, 그렇게 프로그래밍한 운영자의 형사책임은 문제될 것이 없다: 만약 지능형 로봇 제작자가 아무나 살상하도록 고의로 프로그램 하였다면, 제작자는 침해에 대한 원인제공자로서 상응하는 범죄구성요건에 의해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 그들은 -얼마나 지능적인지와 상관없이- 지능형 로봇을 자신의 의사 실현의 도구로 활용했기 때문이다. 이는 타인을 자신의 의사 실현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기계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조종한 자는 고의의 직접정범이 될 것이다.<sup>7)</sup>

## 2. 과실범으로의 처벌가능성

그러나 다수의 사례에서는 지능형 로봇의 투입이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발생시키게 될 것이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규칙에 따라 교차로에서 자전거 운전자의 선행권을 존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결과 자전거 운전자를 다치게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 문제시 되는 것은 운영자의 과실범 성립여부이다. 과실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운영자는 형법적으로 의미있는 결과(예컨대, 사람의 사망 또는 상해)를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 회피를 위해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어야 한다. 또한 운영자에게 결과발생이 귀속되어야 한다. 지능형 로봇의 투입과 관련하여 이 모든 요건에서 새로운 문제가 제기된다.

### (1) 예측가능성

과실의 구성요소인 결과발생의 예측가능성은 지능형 로봇의 제작 및 운영 단계에서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지능형 로봇은 주변 환경으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독자적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에 기초하여 인간적 개입 없이 대응함으로써 주어진 임무를 효

---

7) Sabine Gleß und Thomas Weigend, Intelligente Agenten und das Strafrecht, ZStW, 2014, S. 579f.

율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이다. 운영자가 복잡한 지능형 로봇의 (대응)행위를 지속적으로 관찰한다고 하더라도 로봇이 수집된 정보를 통해 인식하게 될 패턴이 무엇인지, 수집된 정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정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속속들이 예측할 수는 없다. 나아가 이러한 개방적 시스템에 입력된 결정규칙은 통상적으로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모든 생활상을 예측하여 알고리즘을 통해 시스템 행동지침으로 전환할 수 없으며, 개방적 시스템이 투입과정에서 스스로 독자적으로 학습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지능형 로봇의 예측불가능성 및 그로 인한 제3자에게 위한 위험은 “사전 설정된 것”이다. 예컨대 자율주행 자동차가 먼지 등으로 더러워진 “선행권(우선권) 양보” 교통표지판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결과 자전거 운전자의 선행권을 침해하여 그를 다치게 할 수 있다. 무인자동차의 운영자는 과실치상 혐의에 대하여 자동차가 수집된 정보를 자율적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이러한 오작동에 대해 예측할 수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은 두 가지이다: 일단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지능형 로봇의 운영자는 독자적인 정보처리에 기초한 기계의 침해행위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과실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이와는 정반대로 지능형 로봇을 운영하는 자는 “최악의 상황”, 즉 모든 종류의 침해를 기본적으로 예측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

첫 번째 결론은 설득력이 약하다; 왜냐하면 통제가 불확실한 지능형 로봇을 운영한 자는 손해발생을 야기하는 오작동을 단순히 예측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부인할 수 없다. 이것은 동물원 원장이 호랑이를 풀어놓고 호랑이에게 물린 피해자에게 예측불가능한 야수의 본성을 이유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것과 같다. 또한 예측불가능성으로 인한 과실 책임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규범적으로 감수할 수 없는 인간과 지능형 로봇 간의 책임감 분산이 발생함으로써 로봇의 오작동에 의한 침해에 대해서는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반면 운영자가 모든 침해의 결과를 예측가능하다고 본다면, 구성요건 실현에 대한 예측가능성이라는 요건은 지능형 로봇에 의한 침해가 발생한 경우 운영자의 포괄적인 과실책임을 인정하는 데 있어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sup>8)</sup>

## (2) 주의의무 위반

---

8) Sabine Gleß und Thomas Weigend, Intelligente Agenten und das Strafrecht, ZStW, 2014, S. 581f.

과실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 실현에 대한 예측가능성 외에 행위자의 주의 의무 위반이 인정되어야 한다. 통상적으로 의무위반은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근거로 하여 인정된다: 특히 잠재적 위험성이 큰 제품의 생산 및 판매에 대해 판례는 엄격한 주의의무 기준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준은 민사법 영역에서 발전되어 형법에 수용된 것이다. 그에 따르면 신중한 제조업자는 과학기술의 현황에 상응하는 안정성을 갖추고 충분한 테스트를 통해 검증된 제품만을 시장에 유통시켜야 한다. 또한 제품을 시장에 유통시킨 이후에도 제조업자는 소비자의 피드백을 받아 제품을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한다. 이때 예상치 못했던 결과나 위험이 발견되었다면, 제조업자는 소비자에게 경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품 회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sup>9)</sup>

이러한 제조물 책임에 관한 기본원칙은 원칙적으로 지능형 로봇과 같은 혁신적 제품에도 통용된다; 지능형 로봇의 경우에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험이 상당히 클 뿐만 아니라 통제가 곤란하다. 반면 형사책임에 대한 부담감은 통제불가능성으로 인해 (어쨌든 상당 수의) 지능형 로봇의 제조 및 판매를 어렵게 만들 수 밖에 없다. 그 결과 사회의 안전은 확보되지만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혁신적 기술의 사용은 위축될 것이다.

그러나 과실범으로의 형사처벌 가능성을 반드시 모험행위의 전면 금지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능형 로봇의 사용을 유가치 또는 더 나아가 필요하다고 본다면, 주의의무를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운영자에 의해 발생한 위험과 해당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용 사이의 비교형량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Gesellschaft)”는 혁신을 통해 이익을 취하면서 그와 결부되어 있는 불가피한 위험은 형법이라는 수단을 통해 운영자에게 전가시킨다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다.

한편 주의의무 위반이라는 비난에 대해 지능형 로봇의 운영자는 로봇 스스로의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예측 및 통제가능성이 제한된 기술을 발전·제공함으로써 사회적 필요에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결정적인 것은 사회가 전체적 효용의 증가를 위해 인간에게 미치는 지능형 로봇의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얼마나 되어있는가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답은 복잡한데, 왜냐하면 인간에 의한 완전한 통제를 배제시키는 동시에 효용 증가의 원인이자 사회경제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

9) 형법상 제조물책임에 관해서는 전지연, 형법상 제조물책임에서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법학연구 제18권 4호, 2008, 69면 이하; 박강우, 형법에서의 제조물책임, 법학연구 제15권 제1호, 2004, 625면 이하 참조.

바로 위험과 결부된 지능형 로봇의 독자적인 결정능력이기 때문이다.

명쾌한 해결책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으로 인간사회는 기계에 의해 조종되는 세계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중대한 위험-예컨대 통제를 벗어난 중무장 드론-을 발전의 대가로 수용하지도 않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지능형 로봇에 대한 공적 지원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최신 기술 투입에 대한 사회적 이익이 존재한다. 또한 지능형 로봇의 투입과 결부된 특정한 위험은 -예컨대, 검색장치에 의해 인터넷에 저장된 정보의 부정사용- 이미 일반적으로 용인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일반 대중이 새로운 기술과 더불어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한, 예상치 못한 지능형 로봇의 대응방식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예측가능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운영자는 아무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결론 또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손해발생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험이나 민법적 위험책임의 도입을 검토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예측가능한 손해에 대한 운영자의 포괄적인 형사책임은 결과적으로 부정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하여 예측하지 못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형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이 인정될 여지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인간 사회가 지능형 로봇과 관련된 특정한 잔여 위험(Restrisiken)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위험을 신중한 설계 및 프로그래밍, 철저한 실험과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서 가능한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지능형 로봇과 결부된 위험을 가장 광범위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요건설정이다. 요건 설정에 있어서 특히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지능형 로봇의 투입으로 인해 얻는 효용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이 얼마나 중대한지 하는 것이다. 예컨대 발생하는 위험이 중대하면 중대할수록 포괄적인 예방조치가 필요하며, 지능형 로봇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효용이 크면 클수록 일정한 개발 및 사용 위험은 감수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충분한 테스트를 거쳤다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예상치 못한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 갑자기 멈춰 선다고 하더라도 상용화가 허용될 수 있다. 무인 자동차는 개개인에게 유용할 뿐 아니라 일반적인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단순한 제품(예컨대 진공청소기나 자전거 등)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가 그리 크지 않은 지능형 에이전트(예컨대 게임 또는 전투용 드론 등)보다 관대한 기준이 적용될 것이다.

그러나 관련자의 보호 이익에 대한 주의의무는 지능형 로봇이 아무리 유용하다고 하더라도 위험을 가급적 최대한 배제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따라서 혁신 위험(혁신에

다른 위험)을 감수한다고 하더라도 생산자는 소비자에 대하여 경고 및 안내를 하고, 제품소비경험을 관찰하고, 피해신고가 있는 경우 즉시 대처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예컨대, 자율주행 자동차의 오작동이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 또는 잘못된 사용방식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자동차 판매를 중단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회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사용자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범죄구성요건에 의해 처벌된다. 운영자의 이러한 행위의무는 -제조물책임법의 적용을 받는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선행위험행위(Ingerenz)로부터 도출된다: 이와는 달리 사물의 속성상 완전한 통제가 불가능한 지능형 로봇의 도입 내지 투입을 통해 운영자는 (자기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에도) 일반 대중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킨 것이며 따라서 지속적인 제품감시 의무 및 (사후적으로) 알게 된 위험에 대한 책임부담 의무 또한 강화된다. 이러한 의무는 일종의 거래안전의무(Verkehrssicherungspflicht)이다. 이는 의무위반 또는 불법으로 인한 선행위험행위 책임이 아니라 증가된 위험의 적법한 수용으로부터 도출된다.<sup>10)</sup>

### (3) 객관적 귀속

지능형 로봇의 운영자가 전술한 조건 하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어서 제기되는 문제는 발생한 구성요건적 결과를 그에게 “객관적으로” 귀속할 수 있는지, 아니면 “기계의 잘못인지” 하는 것이다.

#### 1) 일반적인 생활위험으로서의 지능형 에이전트

우선 “소급금지(Regressverbot)이론”을 전제로 할 때 직접적인 원인제공자(즉 지능형 로봇)가 고의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지는 경우 발생한 결과를 운영자의 (주의의무위반)행위로 귀속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소급금지이론”은 오늘날 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서로 아무런 상관이 없는 두 명의 행위자에게 동일한 결과의 객관적 귀속이 가능한 경우에는 두 명 모두 해당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지능형 로봇에 의해 초래된 결과(예컨대 자율주행 자동차에 의한 사망 또는 상해)

---

10) Sabine Gleß und Thomas Weigend, Intelligente Agenten und das Strafrecht, ZStW, 2014, S. 582ff.



의 객관적 귀속을 조각시키는 또 다른 근거는 이러한 결과 발생을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일반적인 생활위험이 실현된 “자연적” 사건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지능형 로봇을 일상생활의 일반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누구나 그로 인한 위험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또한 미리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뿐만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도 손해발생의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지능형 로봇은 예외적인 현상으로 인식되어, 이를 상용화시킨 자는 (일반적으로 예측가능한) 오작동에 대해 과실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다만 인터넷 검색장치 또는 추천 시스템 등과 같이 도처에 존재하는 인터넷 상의 소프트웨어 에이전트는 그렇지 않다. 우리의 인격권에 대한 침해 가능성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인터넷 쇼핑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또한 우리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여 활용하는 것을 일반적 생활위험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므로 인터넷에서 소프트웨어 에이전트를 운영하는 자는 오늘날 단순히 일반적 생활위험을 현실화한 것에 불과하다. 이처럼 지능형 에이전트를 인간의 “통상적인” 대화상대방으로 간주하는 태도는 상대적으로 단순한 인터넷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외에 다른 생활영역으로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예컨대 자율주행 자동차 또는 자율주행 지하철이 통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잡게 될 경우, 이러한 자율주행 차량은 인간에 대한 “통상 위험(Normalrisiko)”이 되어 운영자는 일반적으로 예측가능한 오작동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회피가능한 설계 또는 프로그램 하자로 인한 결과발생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 2) 자율적으로 행위하는 제3자로서의 지능형 로봇

객관적 귀속은 자율적으로 행위하는 로봇의 “독자적인” 결정이 운영자의 행위와 형법상 중요한 결과발생 간의 귀속관계를 중단하는 경우 조각될 수 있다. 이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자율주행 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경우 어느 정도 설계자의 행위가 아니라 “자동차 자체”의 행위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는 위에서 인간의 자유 및 책임에 기초한 형법에 의한 지능형 로봇의 형사처벌은 현재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자율적으로 행위는 기술의 투입이 기계 배후에 존재하는 인간에 대한 결과 귀속에 있어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만일 지능형 로봇의 행위가 “직접 행위자”의 자율적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면, “배후행위자”(운영자)에 대한 귀속관계는 중단될 수

있다. 그러나 결과발생이 지능형 로봇의 자율적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로봇의 독자적인 범죄능력을 인정해야 한다. 현재 이러한 범죄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앞으로 과학기술이 발달되어 지능형 로봇이 “의식”을 가질 수 있고, 지적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자율적으로 행위와 결정을 할 수 있다면, 이러한 능력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범죄능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지능형 로봇의 형벌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한 과실있는 운영자에 대한 형법적 소급은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 피해자는 인간과 지능형 로봇 간의 책임감 분산(Verantwortungsdiffusion)이라는 불만족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sup>11)</sup>

## V. 결 론

지능형 로봇은 인간에게 새로운 차원의 발전가능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 동시에 그의 행동에 대한 법적 판단은 새롭고도 어려운 문제를 던져준다. 무엇보다 논란이 되는 것은 지능형 에이전트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다. 특히 지능형 에이전트에 의해 형법적으로 중요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예를 들어 인간이 살해당했다거나 다쳤다거나 또는 물건이 훼손된 경우, 형사책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전통적인 형법적 귀속이론만 가지고는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이 문제가 된 경우 책임을 적절히 배분할 수 없다. 예측가능한 미래에 대한 지능형 로봇의 형사처벌은 그저 하나의 가설일 뿐이다. 지능형 로봇은 -인간에게서 추체됨되는- 형벌감수성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과 결부된 윤리적 비난에 대한 이해력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능형 로봇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처벌은 의미가 없다.

지능형 로봇의 형사책임과는 달리 지능형 로봇에 의한 손해발생에 있어서 운영자의 개인적인 잘못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영자를 고의범 또는 과실범으로 직접 처벌할 수 있다. 지능형 로봇의 행위로 인해 형법적으로 중요한 결과가 발생하고 이때 운영자에게 지능형 로봇을 이용하여 구성요건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면, 운영자는 직접정범으로 처벌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경우 운영자는 발생한 결과를 기계 탓으로 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지능형 로봇의 활동 및 그로 인한 손해발생은 프로그램을 담당하거나 판매한 인간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운영자의 과실책

---

11) Sabine Gleß und Thomas Weigend, Intelligente Agenten und das Strafrecht, ZStW, 2014, S. 586ff.

임도 인정될 수 있다. 인간과 로봇 간의 책임감 분산 때문에 로봇의 오작동에 의한 침해에 대해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불합리한 상황이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운영자가 지능형 로봇의 투입으로 인한 모든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예측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지능형 로봇은 일정한 범주 내에서 자신의 행동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고 볼 수 있고 그 결과 결정에 대한 완전한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능형 에이전트의 오작동에 대한 운영자의 예측가능성이 의문시된다. 그러나 이러한 예측불가능성을 이유로 운영자의 과실책임을 부정하게 되면 인간과 로봇 간의 책임감 분산이 발생하게 되어 로봇의 오작동에 의한 침해에 대해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불합리한 상황이 초래된다. 따라서 운영자는 지능형 로봇의 투입으로 인한 모든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예측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지능형 로봇에 대한 완벽한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 만일 통제불가능한 위험을 이유로 지능형 로봇을 전면 금지시키려는 것이 아니라면, 형법적 과실책임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지능형 로봇의 투입과 결부된 위험 부담을 “사회”의 몫으로 돌려서는 안될 것이다. 오히려 필요한 것은 지능형 로봇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사회적 효용이 그와 결부된 위험의 수용을 정당화하는 만큼 형법의 적용을 자제하는 것이다. 이것은 융통성있는 일반조항의 도입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 예컨대 “개발위험”을 수용함으로써 운영자의 주의의무를 제한하거나 “사회적으로 상당한 지능형 로봇 투입”이라는 위법성조각사유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법률의 명확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지능형 로봇의 다양한 유형과 투입영역에 따라 허용된 위험의 판단기준을 규범화하는 수고스러운 방법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형사책임에 대한 두려움 없이 지능형 로봇을 투입하고자 하는 욕구와 지능형 로봇과 결부된 위험을 최대한 축소시키고자 하는 바람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하여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 참 고 문 헌

- 김영환, 지능형 로봇의 법철학적·형사법적 쟁점, 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IV), 형사정책연구원, 2015
- 박강우, 형법에서의 제조물책임, 법학연구 제15권 제1호, 2004
- 전지연, 형법상 제조물책임에서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법학연구 제18권 4호, 2008
- Jan C. Joerden, Strafrechtliche Perspektiven der Robotik, Robotik und Gesetzgebung, in: Eric Hilgendorf/Jan-Philipp Günther (Hrsg.): Nomos, 2013
- Sabine Gleß und Thomas Weigend, Intelligente Agenten und das Strafrecht, ZStW, 2014
- Susanne Beck, Brauchen wir ein Roboterrecht?, Ausgewählte juristische Fragen zum Zusammenleben von Menschen und Robotern, in: Japanisch-Deutsches Zentrum (Hrsg.): Mensch-Roboter-Interaktionen aus interkultureller Perspektive. Japan und Deutschland im Vergleich, Berlin, 2012

# Artificial Intelligence and Law

## -A Study on Criminal Responsibility of Robot and it's Operator

Lee, Joo-Hee  
Professor, Department of Law  
Cheongju University

Artificial Intelligence is utilized in various areas with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This makes our life convenient. However, there is a problem that should not be overlooked. It is the issue of criminal responsibility, if a robot commits a crime.

First,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the robot can be punished with penalties. But the punishment presupposes not only free will but also freedom of judgement. Unfortunately, it is only human that owns these freedoms. Therefore, criminal liability of the robot can not be accepted.

However, it is possible to punish the operator for the crimes of the robot. The operator can be punished because of a deliberate crime, if he uses the robot as a means of crime. In addition, he may be punished for negligent acts. The important thing is for the operator of robot to set the criteria for the duty of care. This criteria should be set to limit the risk the most efficiently and widely.

Key Words: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 Operator, Criminal Responsibility, Deliberate Offense, Act of Negligence

논문투고일 : 2016. 09. 10

심사개시일 :

게재확정일 :



한국사회과학연구  
제38권 1호  
2016년 8월호

## 국공립연구기관의 정부 R&D 투자성과 분석 및 개선과제 도출<sup>12)</sup>

청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부교수  
하 민 철

### 국 문 요 약

국공립연구기관은 우리나라 공공연구기관 중 가장 먼저 설립되어 연구개발(R&D) 활동을 시작하였다. 국공립연구기관은 약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1960년대 우리나라 과학기술 연구개발(R&D) 활동을 주도하였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 연구자들은 국공립연구기관의 R&D 활동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자들은 공공연구기관 중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 관심을 기울일 뿐, 국공립연구기관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가장 큰 이유는 국공립연구기관이 다른 공공연구기관에 비해 R&D 자금을 적게 배분받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사실 국공립연구기관은 여전히 매우 중요한 위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공립연구기관에 대한 정부 R&D 투자성과를 분석하고, 보다 효과적인 R&D 활동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그간 국공립연구기관에 대한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문헌연구를 실시하고, 국공립연구기관의 R&D

12) 이 논문은 2015-2016학년도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가 지원하는 학술연구조성비(특별연구과제)에 의해 연구되었음.

투자성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국공립연구기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국공립연구기관의 성과 제고를 위한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국공립연구기관, 연구개발(R&D), 투자성과

## I. 서론

미래창조과학부가 발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정부 R&D사업을 수행하는 주요 행위주체는 국공립연구기관<sup>13)</sup>,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기업(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정부부처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1990년대까지 국공립연구기관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우리나라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과학기술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본 연구의 대상인 국공립연구기관의 주요 임무는 농림·수산·축산 등 1차 산업분야와 환경보호, 건강과 같은 국민안전 분야에서 기초적인 시험, 조사, 검정, 기준 설정 등을 수행하는 데 초점이 있다. 국공립연구기관의 개념에 종종 ‘시험’이라는 개념이 삽입되어 ‘국공립시험연구기관’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국공립연구기관의 핵심 기능 중의 하나는 국민안전 등의 측면에서 국가가 규제기준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시험’ 혹은 ‘검정’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국공립연구기관은 우리나라 공공연구기관 중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역사는 1909년에 만들어진 ‘수출우검역소’와 1937년에 만들어진 ‘조선총독부 수산제품검사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외에도 1918년 ‘철도기술연구소’, 1918년 지질조사소, 1921년 국립수산진흥원, 1922년 임업시험장, 1937년 전매연구소 등이 설립되었다. 이들 연구기관들은 모두 식민지 시기 일제의 주도하에 설립되었다. 그리고 1945년 해방 이후 국립중축원(1947), 국립농산물검사소(1949), 국립생사검사소(1949), 국립동물검역소(1949) 등 1차 산업 분야의 연구소들이 본격적으로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6.25전쟁 이후인 1954~1959년 사이에

---

13) 국공립연구기관은 중앙정부가 설립한 국립연구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립연구기관으로 구분된다. 국공립연구기관은 정부의 기능이 확장되면서 필요에 따라 시험, 조사, 검정, 기준 설정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원예시험장, 가축위생연구소, 축산시험장 등이 설립되었다(과학기술부(현 미래창조과학부), 2008)

과학기술부가 2008년 펴낸 <과학기술 40년사>에 따르면, 과학기술의 불모지와 같았던 우리나라에서 ‘기술개발’ 개념을 정착시키는데 국공립연구기관이 공헌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공립연구기관들은 1960년대까지 우리나라 공공연구기관의 역사에서 매우 높은 위상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나라 주요 연구수행주체들의 연구인력 변화를 살펴보면, 국공립연구기관이 1960년대까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는가를 쉽게 알 수 있다.

<표 1> 연구수행주체별 연구인력 변화 (단위: 명)

구분	1967년	1975년	1985년	1995년	2005년
국공립연구기관	2,326	2,312	2,447	4,351	3,950
정부출연연구기관	-	774	4,707	10,656	11,551
대학	599	4,534	14,935	44,683	64,895
기업체	273	2,655	18,996	68,625	154,306
합계	3,198	10,275	41,085	128,315	234,702

자료: 과학기술부(2008). <과학기술 40년사>. p. 225.

1990년대 이후 대학과 기업 등 민간부문의 R&D 역량이 확충되면서 공공연구기관인 국공립연구기관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역할과 임무에 대한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동시에 국가 R&D사업의 투자 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모색이 이루어져 왔다. 정부와 많은 연구자들은 정부 R&D 투자의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고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항상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핵심적 연구수행주체로 설정하고 논의를 집중하여 왔다. 반면 국공립연구기관은 오랜 기간 동안 관련 연구자들로부터 관심을 얻지 못한 채 ‘무시된 영역(neglected area)’에 놓여 있었다. 이처럼 국공립연구기관들이 공공연구시스템에서 ‘무시된 영역’에 놓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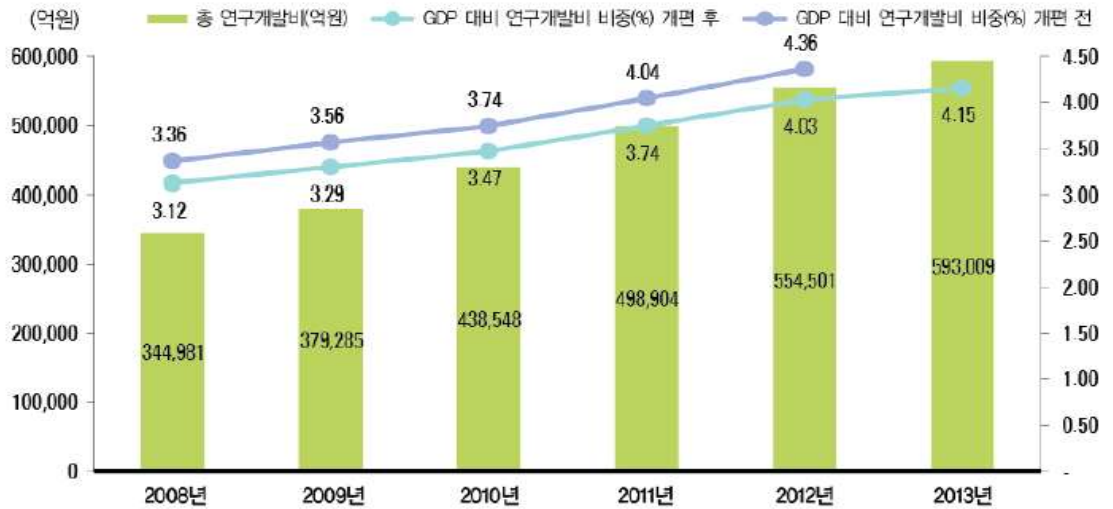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공립연구기관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제고하고 보다 나은 기관 운영을 도모하고 국가과학기술정책의 발전에 더 많은 기여를 하도록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II.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 현황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 왔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 역시 국가발전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 R&D 투자를 극적으로 확대시켜 왔다. 2013년도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국가연구개발사업과 민간부문의 연구개발사업을 모두 포함)는 59.3조원으로 집계되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투자비중은 4.15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국가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구개발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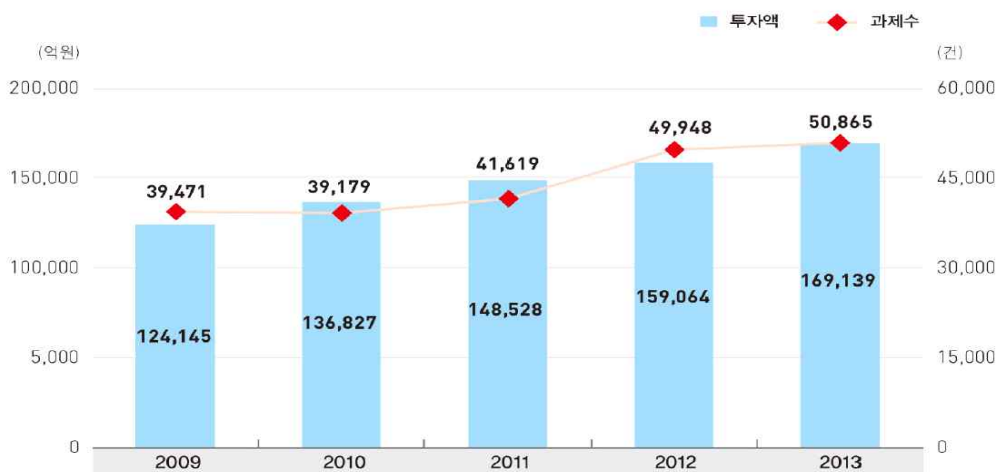
<그림 1> 우리나라 연구개발비 및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추이



자료: <2013 연구개발활동 조사보고서>.

한편 2013년 우리나라 전체 연구개발사업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총 투자액은 16조 9,139억 원으로 2012년 대비 6.3% 증가하였고, 최근 5년간(2009-2013년) 연평균 증가율은 8.0%로 나타났다. 이러한 증가율은 정부 총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이 3.7%인 점을 고려할 때 2배 이상 높은 것이다.

<그림 2>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액과 세부과제 수 변화 추이(2009-2013년)



자료: <201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보고서>.

한편 우리 정부의 R&D 예산도 2014년 17.8조원에서 2018년까지 20.4조원으로 지출규모를 확대할 계획으로 나타났다.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국가R&D 예산을 확대하려고 하는 것은 자원부족의 조건을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돌파하려는 정책적 지향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과거 970년대 이후 부족한 예산 조건 속에서도 정부의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는 상당한 수준을 유지해왔다. 이처럼 정부 R&D예산의 지속적인 지출규모 확대는 그만큼 국가R&D사업의 투자 효율성 제고와 성과분석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표 2> R&D 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연평균 증가율
정부R&D 예산	17.8조원	18.8조원	19.6조원	20.1조원	20.4조원	3.5%

자료: <2013 연구개발활동 조사보고서>.

한편 국가R&D 예산 중 연구수행주체별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정부가 어떤 연구수행주체에게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미래창조과학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4a).

<표 3> 연구수행주체별 R&D 예산 투자 추이(2009-2013) (단위: 억 원,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국공립 연구기관	6,683	5.4	7,090	5.2	7,319	4.9	7,701	4.8	8,198	4.8
정부출연 연구기관	49,718	40.0	55,113	40.3	57,099	38.4	64,286	40.4	69,923	41.3
대학	30,120	24.3	33,956	24.8	37,672	25.4	37,214	23.4	39,718	23.5
대기업	13,183	10.6	12,330	9.0	13,861	9.3	14,397	9.1	8,608	5.1
중견기업	-	-	-	-	-	-	-	-	6,608	3.9
중소기업	15,002	12.1	16,353	12.0	18,469	12.4	20,956	13.2	21,926	13.0
정부부처	1,007	0.8	3,024	2.2	3,744	2.5	4,280	2.7	4,477	2.6
기타	8,433	6.8	8,860	6.5	10,363	7.0	10,230	6.4	9,681	5.7
합계	124,145	100.0	136,827	100.0	148,528	100.0	159,064	100.0	169,139	100.0

자료: <201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보고서>. p.71.

위의 <표 3>을 보면, 국공립연구기관에 대한 예산 투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 정부 R&D 예산 중 5%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비 비중은 2009년 5.4%에서 2010년 5.2%, 2011년 4.9%, 2012년 4.8%, 2013년 4.8% 등으로 계속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예산은 꾸준히 증가함과 동시에 상대적 비중 역시 증가하고 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비 비중은 2009년 40.0%에서 2010년 40.3%, 2011년 38.4%, 2012년 40.4%, 2013년 41.3% 등으로 계속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정부 R&D 수행주체로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중소기업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연구수행주체별 과제당 연구비 규모의 추이를 살펴보면, 국공립연구기관의 과제 규모가 계속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의 <표 4>를 보면, 국공립연구기관의 과제 수는 2010년 1,858건에서 2013년 4,368건으로 약 2.4배 증가하였는데, 연구비 총액은 2009년 7,090억 원에서 2013년 8,198억 원으로 약 1.2배 증가하는데 그쳤다. 그것은 곧 과제당 연구비가 축소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즉 국공립연구기관의 과제당 연구비는 2010년 3.8억 원에서 2013년 1.9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그만큼 국공립연구기관들이 수행하는 과제들이 소규모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과제당 연구비는 2010년 9.4억 원에서 2013년 11.3억 원으로 오히려 과제 규모가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과제당 연구비 규모가 클수록 그만큼 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이 높아진다. 즉 연구 결과를 활용한 사업화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현재 국공립연구기관은 매우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4> 연구수행주체별 과제당 연구비 규모 변화 추이 (단위: 건, 억 원,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과제수	금액	과제당연구비	과제수	금액	과제당연구비	과제수	금액	과제당연구비	과제수	금액	과제당연구비
국공립연구기관	1,858	7,090	3.8	2,049	7,319	3.6	4,388	7,701	1.8	4,368	8,198	1.9
정부출연연구기관	5,838	55,113	9.4	5,774	57,099	9.9	6,092	64,286	10.6	6,183	69,923	11.3
대학	21,413	33,956	1.6	24,019	37,672	1.6	27,137	37,214	1.4	27,266	39,718	1.5
대기업	1,019	12,330	12.1	1,048	13,861	13.2	1,234	14,397	11.7	695	8,608	12.4
중견기업	-	-	-	-	-	-	-	-	-	732	6,608	9.0
중소기업	7,046	16,353	2.3	6,841	18,469	2.7	9,086	20,856	2.3	9,515	21,926	2.3
정부부처	97	3,024	31.2	82	3,744	45.7	83	4,280	51.6	57	4,477	78.5
기타	1,983	8,960	4.5	1,806	10,363	5.7	1,928	10,230	5.3	2,049	9,681	4.7
합계	39,254	136,827	3.5	41,619	148,528	3.6	49,948	159,064	3.2	50,865	169,139	3.3

자료: <201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보고서>. p.71.

### III.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개발(R&D) 성과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공동으로 펴내는 <201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연구개발성과를 크게 과학적 성과, 기술적 성과, 경제적 성과, 사회적 성과 등 4가지 유형의 성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런

데 이 중 사회적 성과는 인력양성 지원 성과와 연수지원 성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그 분석결과가 연구수행주체별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고, 3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 1. 국공립연구기관 R&D 투자의 과학적 성과: SCI 논문게재

미래창조과학부에 의해 매년 발간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국공립연구기관들의 SCI 논문게재 측면에서 볼 때,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연구수행주체별 SCI 논문 게재 현황 (단위: 편, %, 편/10억 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편수 (비중)	10억 원당	편수 (비중)	10억 원당	편수 (비중)	10억 원당	편수 (비중)	10억 원당	편수 (비중)	10억 원당
국공립 연구기관	724 (3.0)	1.1	745 (3.1)	1.1	745 (3.1)	1.0	693 (2.4)	0.9	697 (2.6)	0.9
정부출연 연구기관	3,535 (14.6)	0.7	4,055 (17.0)	0.7	3,936 (15.0)	0.7	4,612 (16.1)	0.7	5,440 (20.1)	0.8
대학	18,998 (78.6)	6.3	18,204 (76.1)	5.4	20,526 (78.1)	5.4	21,987 (76.8)	5.9	19,586 (72.4)	4.9
대기업	259 (1.1)	0.2	268 (1.1)	0.2	290 (1.1)	0.2	293 (1.0)	0.2	417 (1.5)	0.5
중소 기업	294 (1.2)	0.2	282 (1.2)	0.2	297 (1.1)	0.2	403 (1.4)	0.2	376 (1.4)	0.2
기타	364 (1.5)	0.4	362 (1.5)	0.3	488 (1.9)	0.3	625 (2.2)	0.4	536 (2.0)	0.4
합계/평균	24,174 (100.0)	1.9	23,916 (100.0)	1.7	26,282 (100.0)	1.8	28,613 (100.0)	1.8	27,052 (100.0)	1.3

자료: <201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보고서>. p. 121.

위의 <표 3>에 의하면, 국공립연구기관의 전체 SCI 논문게재 편수 자체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1/5에 불과하지만, 연구비 10억 원당 SCI 논문 게재현황을 보면, 상대적 성과가 더 우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공립연구기관의 경우, 2013년 기준으로 연구비 10억 원당 SCI 논문 게재편수가 0.9편인데 비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 10억 원당 SCI 논문 게재편수가 0.8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국공립연구기관의

SCI 논문 게재 성과가 정부출연연구기관보다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9년 이후로 줄곧 정부출연연구기관보다 10억 원당 SCI 논문게재 편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심으로 R&D 투자를 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국공립연구기관의 R&D 과학적 성과는 상당히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2. 국공립연구기관 R&D투자의 기술적 성과: 국내특허 등록

한편 R&D 투자의 기술적 성과인 국내특허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국공립연구기관의 성과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성과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3년 기준으로 국공립연구기관의 국내특허 등록 건수를 보면 449건으로 전체에서 3.2%에 머무르고 있다. 반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국내특허 등록 건수는 4,270건으로 전체에서 30.2%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투자 대비 비중을 확인할 수 있는 10억 원당 특허건수는 국공립연구기관은 0.5건이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은 0.6건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공립연구기관의 R&D 성과가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6> 연구수행주체별 국내특허 등록 현황 (단위: 건, %, 건/10억 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건수 (비중)	10억 원 당	건수 (비중)	10억 원 당	건수 (비중)	10억 원 당	건수 (비중)	10억 원 당	건수 (비중)	10억 원 당
국공립 연구기관	67 (1.5)	0.1	115 (2.5)	0.2	231 (2.9)	0.3	395 (3.6)	0.5	449 (3.2)	0.5
정부출연 연구기관	1,175 (25.6)	0.2	1,390 (29.9)	0.3	2,513 (31.5)	0.4	3,231 (29.1)	0.5	4,270 (30.2)	0.6
대학	1,819 (39.6)	0.6	2,051 (44.2)	0.6	3,630 (45.4)	1.0	4,505 (40.5)	1.2	5,420 (38.3)	1.4
대기업	342 (7.4)	0.3	259 (5.6)	0.2	471 (5.9)	0.3	539 (4.9)	0.4	869 (6.1)	0.6
중소 기업	1,086 (23.6)	0.7	700 (15.1)	0.4	817 (10.2)	0.4	1,882 (16.9)	0.9	2471 (17.5)	1.1
기타	110 (2.4)	0.1	127 (2.7)	0.1	328 (4.1)	0.2	562 (5.1)	0.4	671 (4.7)	0.5
합계	4,599 (100.0)	0.4	4,641 (100.0)	0.3	7,990 (100.0)	0.5	11,114 (100.0)	0.7	14,150 (100.0)	0.8

자료: <201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보고서>. p. 146.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공립연구기관에 대한 정부의 R&D 투자가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비해 SCI 논문 게재 및 국내특허 등록 성과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볼 때, 국공립연구기관의 R&D 성과는 투자 대비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 3. 국공립연구기관 R&D 투자의 경제적 성과1 : 기술료 징수

최근 정부는 정부 R&D 투자의 성과분석에서 기술개발 및 기술사업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정부가 예산을 투입한 R&D 성과가 실제 산업현장으로 기술이 이전되거나 사업화로 연계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정부의 R&D 정책의 초점을 단순히 SCI 논문 게재나 특허등록에 그치지 않고, 개발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로 전환한 것은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국공립연구기관의 기술료 징수액과 기술사업화 성과는 어떠한가?

먼저 기술료 징수건수를 살펴보면, 국공립연구기관의 기술료 징수건수는 2009년 339건에서 2013년 712건으로 2.1배 증가하였다. 반면 정부출연연구기관은 2009년 772건에서 859건으로 1.1배 증가하는데 그쳤다. 기술료 징수건수 자체로만 본다면,



2013년도의 국공립연구기관의 기술료 징수건수 상당히 높아진 반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료 징수건수는 정체되어 양자 사이의 차이는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연구수행주체별 기술료 징수건수 (단위: 건,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국공립연구기관	339	5.7	398	7.5	457	10.1	360	6.5	712	13.5
정부출연연구기관	772	13.0	587	11.1	623	13.7	690	12.5	859	16.3
대학	820	13.8	354	6.7	319	7.0	785	14.2	411	7.8
대기업	186	3.1	275	5.2	254	5.6	313	5.7	279	5.3
중소기업	3,706	62.5	3,566	67.3	2,809	61.8	3,268	59.0	2,908	55.1
기타	109	1.8	121	2.3	84	1.9	124	2.2	112	2.1
합계	5,932	100.0	5,301	100.0	4,546	100.0	5,540	100.0	5,281	100.0

자료: <201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보고서>. p. 174.

기술료 징수건수에서 국공립연구기관과 정부출연연구기관 사이에는 상당히 격차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료 징수액을 살펴보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국공립연구기관의 기술료 징수액은 2013년 기준으로 12.7억 원(전체 기술료 징수액 중 0.5% 비중)에 불과하여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국공립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에 대한 유상이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무상이전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료 징수액은 2013년 기준으로 637.7억 원(전체 기술료 징수액 중 27.7% 비중)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왜 국공립연구기관의 기술료 징수액이 미약한 이유, 즉 왜 개발된 기술의 무상이전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는가? 그것은 국공립연구기관에게 부여된 임무와 관련되어 있다. 주요 국공립연구기관들의 설립목적은 대부분 정부의 기능 확장에 따라 국민 건강 및 보호를 위해 시험, 조사, 검정, 기준 설정 등과 같은 업무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물론 일부 국공립연구기관들 중에는 기술 개발을 통해 그것이 산업의 진흥에 기여하는 목적을 가진 연구기관들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 국공립연구기관들은 시험, 조사, 검정 업무 등을 기본적으로 수행하면서 동시에 농림, 축산, 수산 등 1차 산업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는데 초점이 있다. 즉 국공립연구기관은 개발한 기술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보다는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무상으로 기술이전을 하기 때문에 기술료 징수액이 낮게 나타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인 셈이다.

<표 8> 연구수행주체별 기술료 징수액 현황 (단위: 억 원,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국공립연구기관	7.9 (0.4)	11.4 (0.5)	12.8 (0.6)	14.8 (0.5)	12.7 (0.5)
정부출연연구기관	595.5 (30.2)	577.3 (24.0)	422.4 (18.2)	383.5 (13.4)	673.7 (27.7)
대학	160.3 (8.1)	110.0 (4.6)	93.9 (4.0)	230.4 (8.0)	102.4 (4.2)
대기업	452.7 (23.0)	780.5 (32.5)	834.0 (35.9)	1,100.7 (38.4)	674.4 (27.8)
중소기업	715.6 (36.3)	835.8 (34.8)	923.7 (39.8)	1,093.7 (38.1)	927.8 (38.2)
기타	38.8 (2.0)	89.7 (3.7)	34.8 (1.5)	44.3 (1.5)	39.5 (1.2)
합계	1,970.9 (100.0)	2,404.8 (100.0)	2,321.6 (100.0)	2,867.5 (100.0)	2,430.6 (100.0)

자료: <2013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보고서>, p. 175.

#### 4. 국공립연구기관 R&D 투자의 경제적 성과2 : 기술사업화

국공립연구기관의 R&D 투자의 기술사업화 건수를 살펴보면, 2009년 1,212건에서 2013년도 2,058건으로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 건수와 비교하면, 국공립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 건수의 성과는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3년의 경우 정부출연연구기관은 480건으로 국공립연구기관의 2,058건의 23%에 불과하다. 이처럼 기술사업화 건수로만 본다면, 국공립연구기관의 성과가 훨씬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9> 연구수행주체별 사업화 건수 현황 (단위: 건,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국공립 연구기관	1,212	14.7	1,584	16.6	2,056	28.4	2,278	15.7	2,058	13.4
정부출연 연구기관	156	1.9	153	1.6	147	2.0	441	3.0	480	3.1
대학	797	9.6	1,189	12.5	1,057	14.6	2,692	18.6	2,526	16.5
대기업	396	4.8	249	2.6	169	2.3	210	1.5	290	1.9
중소기업	4,772	57.8	5,305	55.7	3,077	42.5	7,462	51.6	9,010	58.9
기타	929	11.2	1,041	10.9	741	10.2	1,381	9.5	941	6.1
합계	8,262	100.0	9,521	100.0	7,247	100.0	14,464	100.0	15,305	100.0

자료: <2013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보고서>. p. 201.

그러나 기술사업화 성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른 결과가 도출된다. 기술사업화 형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2,058건 중 기술보유자의 직접사업화는 단 20건에 불과하고, 기술이전에 의한 기술사업화가 2,038건(98.9%)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기술이전에 의한 사업화 역시 창업 5건, 기존 업체에서 상품화 3건, 그리고 나머지 2,030건은 기존 업체에서 공정개선을 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반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 기술보유자의 직접사업화가 316건(65.9%)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기술이전에 의한 사업화는 164건(34.1%)으로 나타났다. 즉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기술사업화 건수 자체는 국공립연구기관의 23%밖에 되지 않지만, 기술사업화의 내용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국공립연구기관보다 그 성과가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10> 2013년 연구수행 주체별 기술사업화 형태(단위: 건, %)

구분		기술보유자의 직접사업화			기술이전			소계
		창업	기존업체 상품화	기존업체 공정개선	창업	기존업체 상품화	기존업체 공정개선	
국공립 연구기관	건수	0	20	0	5	3	2,030	2,058
	비중	0.0	1.0	0.0	0.2	0.1	98.6	100.0
정부출연 연구기관	건수	26	199	91	12	123	29	480
	비중	5.4	41.5	19.0	2.5	25.6	6.0	100.0

자료: <2013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보고서>, p. 205.

그렇다면 이처럼 국공립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 성과가 취약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국공립연구기관의 기술이전이나 사업화를 전담하는 부서가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2012년 기술이전·사업화 조사분석자료집>에 따르면, 2011년 조사에 응답한 국공립연구기관 51개 기관 중 기술이전·사업화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은 24개(47.1%)에 머무르고 있으며, 기술이전·사업화 전담부서를 설치한 연구기관은 13개(25.5%)만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인력과 활동·운영비 총액 역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특정연구기관 등과 비교할 때 매우 미약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국공립연구기관들의 정부 R&D 투자 성과에서 기술료 징수나 기술사업화 수준에서 취약한 것은 국공립연구기관들의 기관 고유의 임무(기능)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국공립연구기관들 중에는 신기술개발과 같은 전형적인 R&D 활동에 초점을 맞춘 연구기관들도 있지만 정부의 규제 등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험, 조사, 검정 및 기준설정 등의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들도 상당 수 있다. 국공립연구기관의 R&D 투자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부여된 고유의 임무에 비추어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국공립연구기관들의 정부 R&D 투자 성과 분석의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연구기관의 임무(기능)에 따라 적합한 지표개발이 필요하다.

국공립연구기관 중 정부 R&D 예산을 많이 사용하는 상위 연구기관들은 대체로 농림, 수산, 축산 등 1차 산업 분야 및 환경보호, 건강 등 국민의 안전에 대한 R&D 활동에 초점을 두고 있다. 부처별로 소속 국공립연구기관의 정부 R&D 예산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농촌진흥청(46.8%), 해양수산부(12.2%), 산림청(9.2%), 환경부(8.3%) 등 주요 10개 부처가 국공립연구기관 전체 R&D 예산의 96.5%를 사용하고 있다. 특

히 농림, 수산, 축산 등 1차 산업 분야에 대한 R&D 활동은 국공립연구기관의 특화 분야에 해당하며, 국공립연구기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기업들이 담당하지 않는 영역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농림, 수산, 축산 등 1차 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국민 안전 분야가 강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국공립연구기관의 R&D 투자 현황 및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 IV.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성과 제고를 위한 R&D 활동 개선방안

현재 국공립연구기관이 R&D 활동을 수행하는데 몇 가지 제약요인들을 안고 있다. 먼저 제약요인들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한다.<sup>14)</sup>

### 1. 국공립연구기관의 R&D 활동 제약요인

첫째, 국공립연구기관은 만성적인 연구인력 부족의 문제를 겪고 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매우 오랜 문제로 거의 모든 국공립연구기관에 공통적 현상으로 존재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 및 상급기관의 인력규모 통제에 따른 연구직 인력의 부족이 심각하며, 이는 연구 성과의 창출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부분적 완화를 위해 많은 수의 비정규직 연구인력을 채용하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 해결방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정부부처 정책지원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연구개발 활동이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국공립연구기관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정부 정책에 대한 전문성 지원이다. 정부기관의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학적·전문적 지식을 제공하고, 문제의 원인분석과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전문성 지원 기능이 점점 더 강화되면서 연구기관 고유의 임무인 연구개발 활동의 수행에 제약요인으로

14) 국공립연구기관의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본 연구자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지원 아래 2015년 수행한 <국공립연구기관의 R&D 투자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에서 일부 발췌하여 수정보완한 것임을 미리 밝힌다.

작용하는 것이 현실이다.

셋째, 국공립연구기관에 부여된 임무 때문에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어려움을 안고 있다는 점이다. 국공립연구기관은 새로운 기술의 연구개발 및 이전이라는 임무와 시험·조사·검정의 임무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다. 물론 개별 국공립연구기관마다 지향하는 임무에 다소 차이는 있지만 국공립연구기관 소속의 연구 인력은 물론 연구기획 담당자의 58%는 기관 고유 미션을 시험·조사·검정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국공립연구기관 고유의 특성은 신기술개발 및 이전 노력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넷째, 연구개발 과제 선정 및 R&D수행에 있어 연구기관 및 연구자의 자율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공립기관은 정부부처의 정책기조 변화 및 새로운 사회적 이슈의 발생에 따른 정책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 제약은 연구기관의 고유한 장기적 연구개발 계획 및 과제 수행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다섯째, 국공립연구기관들이 R&D 활동을 직접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연구과제 관리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것은 바로 인력부족의 문제와 연계되어 적지 않은 국공립연구기관이 자체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기 보다는 외부 기관에 위탁하고 연구수행을 관리하는 역할에 머물고 있다. 예를 들어 일부 연구기관은 자체연구비 지출에 대한 외부위탁연구 지출의 비중이 200%를 초과하기도 하며, 적지 않은 기관들의 외부 위탁 비율이 40-50%에 이르고 있다.

여섯째, 국공립연구기관은 R&D 성과를 기술이전하거나 사업화하는데 있어서 지원 체계가 너무 취약하다.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개발 성과를 이전하거나 사업화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제도적·기술적 지원 기반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국공립연구기관이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나 전문 인력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일부 국공립연구기관에 한하여 그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특정 법인이 설립·운영되고 있지만 그것을 인지하거나 활용하는 연구 인력의 비율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개발 과제 및 성과에 대한 시장성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활동 및 그것을 지원하는 기능이 미흡한 실정이다. 그리고 연구 인력은 연구개발 성과를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에 따라 사업화가 부족한 상태이다.

## 2. 국공립연구기관의 R&D 활동 개선방안

첫째, 장기적 관점에서 우수한 연구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개발 인력의 역량과 사기는 연구개발 성과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인력부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있다.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 인력은 연구직 공무원으로 임용된다. 공무원 임용에 따라 보수 수준 및 성과 인센티브 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우수 인력의 확보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연구인력 규모의 부족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여 연구기관 전체의 성과향상을 통한 효율성 강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공립연구기관의 만성적 인력부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할 때, 무엇보다도 연구직 인력의 확충 비중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국공립연구기관의 인력확충은 연구직 인력의 확충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부처의 정책 지원기능을 수행하고, 모든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개발 기획 및 조정 부서가 연구직 공무원이 배치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면 우수한 연구직 인력의 확충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즉 연구직 인력의 행정(기획)부서 배치에 따른 연구개발 수행 인력의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연구직 공무원의 충원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셋째, 연구개발 성과평가에 따른 보상체계의 연계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수준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보상 수준 보다 매우 낮은 편이다. 연구개발 실적과 보상 수준의 연계를 강화하는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개별 연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는 조직 구성원 간의 갈등이나 불화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강화된 인센티브가 동기부여 및 사기진작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특허 등록 및 기술이전에 따른 통상 실시권 수입 등에 대한 보상 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연구개발 실적에 대한 기관, 연구그룹 및 연구자 개인에 대한 평가와 그에 상응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즉, 실적 평가에 따라 기관 전체, 연구팀 및 개별 연구자에 대한 보상 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보상체계의 강화는 실적이 낮은 기관, 연구팀 및 연구자에 대한 상대적 불이익의 제공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연구개발 과제의 선정 및 수행에 있어 연구기관 및 연구자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 정책기조의 변화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새로운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와 문제해결 대안의 탐색 등을 통해 정부정책에 대한 전문성

지원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공공기술의 현장지향성과 고유 연구개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자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관고유의 연구개발 과제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장기적 계획의 수립을 유도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화형 기술의 비중이 높은 국공립연구기관은 사업화 전담팀이나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사업화 분석 등을 통한 역량의 강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실용화 기술의 비중이 높은 기관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 같은 공동의 전담지원조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공동전담지원기관의 개방성 및 역량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공기술의 비중이 높은 기관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조직을 설립하도록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공립연구기관이 스스로 시장성이 높은 기술을 발굴하고 산업계와 공동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업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중요한 원천기술 및 시료 등을 확보하고 정보화를 강화하여 활용의 용이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개발 성과는 다양한 민간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복수의 기업이나 주체에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정부예산과 관련하여 국공립연구기관에 적합한 예산 운용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공립연구기관의 정체성 및 기술유형에 적합한 연구개발 예산의 편성이 가능하도록 유연성을 확대하고 그것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연구직 인력이 연구개발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을 정립하고 운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공립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장기 또는 기초 연구조사는 자율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장기적 과제에 대한 자율성 강화는 예산 운용의 자율성을 포함한다. 장기적 과제에 적합한 예산의 지원과 책임을 담보하는 자율성을 인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소명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연구활동과 연구역량 강화에 필요한 연구경비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연성을 인정하고 연구개발 성과에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과학기술부(2008). <과학기술 40년사>.

미래창조과학부·KISTEP(2014a). <2013 연구개발활동 조사보고서>.

미래창조과학부·KISTEP(2014b). <201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보고서>.

미래창조과학부·KISTEP(2014c). <201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보고서>.

미래창조과학부·KISTEP(2015). <광복 70년 과학기술 대표성과 70선 사례집>.

안승구 외 (2015). <정부 R&D 투자 효율화를 위한 중장기 이슈분석 및 정책기반 구축>.

하민철(2015). <국공립연구기관의 R&D 투자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 Analysis of R&D Investment of National & Public Research Institutes and Searching Improvements

This research analyzed the performances on investment of national and public research institutes which have been located in 'neglected area'. This report tries to suggest approaches and implications to improve efficiency of government R&D investment. To achieve the purpose, such contents are included in the study as ① an overview on R&D investments and performances overseas, and ② an analysis of the problems on efficiency of public R&D investment. This report provides several ways and implication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public R&D investments. It is necessary to set up directions of R&D investment following the classification of the research institutes. It is inevitable to reinforce talented researchers through upgraded recruitment system and to increase autonomy in their own selecting research areas. This is because it is expected to increase efficiency of R&D investment for the long term with respect to institutes' missions and characteristics of researchers the research institutes hold. Five major suggestions in detail to improve R&D investment system are listed in the report.

Key Words: public research institute, research and development(R&D),  
performance on investment,

논문투고일 : 2016. 09. 11

심사개시일 :

게재확정일 :



한국사회과학연구  
제38권 1호  
2016년 8월호

## 필지의 유형 및 특성에 관한 연구<sup>15)</sup>

청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적학과 교수  
김영학

### 국문 요약

필지는 독특하고 유사한 법률적 관계가 구별되는 내에 토지의 연속하는 지역을 의미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토지의 등록단위이자 토지에 대한 물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라는 것이다. 이러한 필지의 중요성에 반하여 필지의 유형과 각 유형이 갖고 있는 특성에 대한 연구는 다소 소홀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필지를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입각하여 필지의 유형을 파악하고 그 유형의 개별적 특성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연구범위는 필지의 유형 및 특성에 한정하고, 조사방법은 문헌조사에 기초한 2차 자료를 수집하여 이론적 토대 및 유형 및 특성을 파악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연구의 접근방법은 기술적 접근방법 및 체제론적 접근방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특히 기존의 연구가 필지의 개념 및 현황에 치우친 연구 성향을 고려하여 필지의 유형 구분에 초점을 두고 정보환경의 변화상에 부합하는 특성을 조명하고자 한다.

주제어: 필지, 등록단위, 필지유형, 필지구성요소

15) 이 논문은 2015-2016 학년도에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가 지원하는 학술연구조성비(특별연구과제-기본과제)에 의해 연구되었음.

# I. 서론

필지는 토지를 관리하는 등록단위로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물권이 미치는 범위이자 공적 장부의 가장 중요한 등록실체라 할 수 있다. 일필지는 토지의 좋은 정보원으로서 더 나은 토지행정을 수행하고 더 나은 토지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하고, 이러한 과정의 원활한 순환적 체계는 양질의 토지정보가 보다 나은 토지정책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이는 곧 보다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실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토지 관리의 중요한 요소에도 불구하고 필지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과 특성에 한정하여 접근 및 파악하는 경향이 있어 다양한 기준에 입각한 필지의 유형이 다양할 수 있고 각 기준에 의한 유형별 필지의 특성이 다를 수 있다는 것에 소홀한 접근과 미미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필지의 개념을 토지관리 및 물권의 범위차원으로 접근하고 있어 필지의 유형에 따른 개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필지의 개념 및 특성은 무엇인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지의 유형을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또한 필지의 유형을 파악하기 위한 기준에 따른 개별 필지의 특성은 어떤 모습일까? 마지막으로 도출된 필지의 유형 및 특성을 어떻게 일반화하고 학술적 가치를 높일 수 있을까? 등의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필지를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입각하여 필지의 유형을 파악하고 그 유형의 개별적 특성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토지필지의 유형 분류의 기준을 적용하여 세부적인 필지유형을 파악하고 개별 필지유형이 다른 유형과 다른 특성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연구범위는 필지의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과 이에 따른 필지의 유형으로 한정하고, 각 산업혁명의 위치인식을 비교하기 위한 기준은 산업혁명의 주요 비교요인을 참고로 연구대상을 설정하고자 한다. 이는 4차 산업혁명까지에 나타난 위치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을 통하여 위치인식의 진화과정을 검토 및 도출하기 위하여 범위로 설정한 것이다. 조사방법은 문헌조사 및 인터넷조사를 통하여 각 산업혁명의 위치인식 관련 주요내용을 토대로 1차 및 2차 자료를 수집하고자 한다. 접근방법은 연구방법에 따라 기술적 접근방법(descriptive approach)과 연구의 유용성에 따라 체계론적 접근방법(systematic approach)을 병용하여 적용하고자 한다.

## II. 필지의 토대 및 접근 틀

### 1. 필지의 개념

일필지는 소유권의 단위인 동시에 경영의 단위이며, 독특하고 유사한 관계가 구별되는 내에 토지의 연속하는 지역을 말한다. 따라서 지적의 일필지란 독특하고 유사한 법률적 관계가 구별되는 내에 토지의 연속하는 지역으로 그것은 일정한 선과 독특한 번호에 의해 지적도 위에 나타난다. 필지의 정의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고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토지등록단위, 지적활동의 단위, 토지정보의 단위, 토지의 지역단위, 토지소유권의 단위 등의 개념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우선 토지의 등록단위의 차원에서 언급되는 필지의 정의는 “토지를 등록하는 단위로서 소유자가 동일하고 지반이 연속된 동일 성질의 토지로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최소 등록단위”을 의미한다.(류병찬, 2006 : 73, 강태석, 2000 : 1) 지적 및 토지활동의 단위의 필지 정의는 “지표면을 인위적으로 구획한 단위구역으로 토지소유권의 한계점들을 연결한 폐쇄공간의 토지”를 의미하고(이범관, 1996 : 201; Moyer, 1973) 토지정보의 단위로서 필지는 “토지의 등록과 공시의 기본단위로서 지번·경계·면적·지가·소유자 등의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는 토지정보의 기본단위”라는 것이다.(최인호, 2000 : 182-183) 토지의 지역단위로서 필지는 “지표면을 인위적으로 구획한 단위구역으로 토지소유권의 한계점들을 연결한 폐쇄공간의 토지”를 의미하고(이범관, 2007 : 169, Henssen, 1995) 토지소유권의 단위로서의 필지는 “소유권의 단위인 동시에 경영의 단위이며 독특하고 유사한 관계가 구별되는 내에 토지의 연속하는 지역”을 의미한다.(김영학, 2015 : 311-312, NRC, 2007)

따라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필지는 자연적인 토지의 구획단위가 아니고 지적측량에 의하여 연속되어 있는 모든 영토를 인위적으로 구획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하나의 지번을 부여한 토지의 소유권의 단위이자 토지의 등록단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하나의 필지가 성립되기 위한 조건은 지반이 연속되고, 지번부여지역이 동일하며, 지목 및 소유자가 동일하여 하고 축척이 동일하여야 한다. 또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가 동일하고 등기여부가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필지의 특성은 관점의 차이를 고려하여 물리적으로는 비가시성, 이질성, 유연성, 유한성, 공간적 제약성을 띠다고 보았고, 인위적으로는 등록의 불가피성, 폐쇄성, 비정형성, 가변성, 이용상의 법적 제약성등을 언급하고 있다.(이현준, 2008 : 129-130)

## 2. 필지의 구성요소 및 유형 기준

토지필지는 토지행정제도를 위한 기본적인 공간단위로 1필지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구성요소가 충족되어야 한다. 즉 필지의 구성요소는 독특한 식별자(지번), 면적, 경계, 지목, 토지기준(Geo-reference), 기원과 역사(Origin and History) 등의 핵심요소로 구성되고 부수적인 요소로 소유권, 권리, 이용 등이 해당된다.(PCC EU, 2007 : 3)

독특한 식별자<sup>16)</sup>는 일반적으로 어떤 대상을 유일하게 식별 및 구별할 수 있는 이름을 의미하고(김영학, 2011 : 36), 면적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필지의 경사면 혹은 입체면상의 넓이가 아니라 수평면상의 넓이를 의미한다. 경계는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고정된 선을 의미하고, 토지기준은 국가좌표기준계를 토대로 해당 필지의 기준을 의미하며, 기원과 역사는 필지의 법적 관계, 과거변화, 특히 토지 이용 및 피복 등 공적 장부에 등록된 사항을 말한다. 또한 이러한 핵심요소 이외에 소유권은 공적 장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필지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처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권리는 필지에 관하여 어떤 일을 행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하여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하며, 이용은 국토의 이용실태 및 특성으로 도시 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용도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용도지역제 혹은 지목으로 표기된다.

한편 필지의 구성요소의 성격 혹은 특성으로 식별자는 토지 관리의 식별자로 활용되고 면적은 점진적으로 수평면상의 넓이에서 입체면상의 넓이로 변화되고 있으며, 경계점은 선의 굴곡점으로 도해 혹은 좌표로 표기 및 등록된다는 것이다. 토지기준은 국가좌표기준계에 기반 한 경계점 좌표로 공적 장부에 등록되고, 기원 및 역사는 권원(Title)관리를 이행하는 국가에서 주로 표기 및 등록되고 이는 핵심요소와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소유권은 여러 사람이 소유하는 경우 그 지분을 공적 장부에 등록하며, 권리는 지적제도의 핵심요소인 3R 중 하나로 토지 관리의 근간을 이룬다. 마지막으로 이용은 토지의 용도에 따른 용도지역제(zoning)에 따라 관리된다는 것이다.

필지의 유형구분의 기준은 바라보는 시각과 접근방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나 학자들의 분류기준을 토대로 볼 때 지적제도의 발달 기준에 의한 분류, 다목적 이용에 의한 분류, 3차원 지적의 객체에 의한 분류, 필지의 분리(spilts)에 의한 분류, 토지의

---

16) 식별자의 유형은 구분하는 학자 및 기관에 따라 다소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즉 필지식별자의 종류를 위치식별자(location identifiers), 이름 관련 식별자(named-related identifiers), 수문자 식별자(alphanumeric identifiers) 등으로 구분하거나(IAAO, 2003 : 83-84) 식별자의 종류를 지적식별자(cadastral identifiers), 건물식별자(building and apartment identifiers), 지적도면(cadastral plans), 도로명 주소 및 우편번호 식별자(street address and postcodes), 지리 기준계(geographic references)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UNECE, 2004 : 31-43).

차원에 의한 분류 등이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Inan & Aydinoglu, 2010 : 408-411, Carl, 1986 : 25-32, Donnelly & Evans, 2008 : 230-240) 즉 지적제도 발달의 기준은 지적의 발달단계에 필지가 적용되는 목적에 따른 분류를 의미하고, 다목적 이용에 의한 분류는 토지의 이용에 따른 필지의 분류를 의미한다. 3차원 지적 객체에 의한 분류는 실제 가시적인 필지와 불가시적인 필지를 구분하는 것을 의미하고, 필지의 분할에 의한 분류는 분할전의 필지와 분할 후의 필지를 구분하는 것을 말하며, 토지의 차원에 의한 분류는 필지가 저차원에 적용하는지 고차차원에 적용하는지에 따른 분류를 의미한다.

<표 1> 필지의 핵심 구성요소

핵심요소	요소의 주요 내용	기 타
식별자 (Identifier)	어떤 대상을 유일하게 식별 및 구별할 수 있는 이름	토지 관리는 지번이 식별자 역할
면적(Area)	공적 장부에 등록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	3D 토지 관리는 입체면상 넓이
경계점 (Boundary Point)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 점	도해 또는 좌표로 등록
경 계 (Boundary)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공적장부에 등록된 선	연속 폴리곤
토지기준 (Geo-reference)	국가좌표기준계에 토대한 필지의 기준	경계점좌표
기원·역사 (Origin & History)	필지의 법적 관계, 과거변화, 특히 토지이용 및 피복 등 공적 장부에 등록된 사항	다른 요소와 밀접하게 연계 됨
소 유 권 (Ownership)	공적 장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필지에 대한 사용·수익·처분 할 수 있는 권리	공유토지의 경우는 그 지분을 등록
권리(Rights)	필지에 관하여 어떤 일을 행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힘	3R 중 하나로 토지 관리의 근간
이용(Use)	국토의 이용실태 및 특성으로 도시 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용도	용도지역제 (zoning)

자료 : PCC EU, 2007; 김영학, 2015; 김영학, 2011. 참고작성.

### 3. 선행연구 및 접근 틀

필지에 관한 선행연구는 필지의 본질 및 태양, 필지이동에 따른 토지의 변동, 필지의 데이터관리 등에 대하여 상당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여러 기준에 따른 필지의 유형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선행연구를 필지의 본질과 태양, 필지의 이동, 필지의 데이터관리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필지의 본질과 태양에 관한 연구이다.(이범관, 1996; 이현준, 2008; MGCGI, 1997) 즉 필지의 본질을 지적활동의 단위, 토지등록의 단위, 토지정보의 단위, 토지소유권의 단위 등으로 보았고 태양을 파악하기 위해 구성요소의 변화를 보았고, 이를 통해 필지의 태양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필지의 특성에 관하여 통상적인 부동산의 특성과 대별되는 내용을 개별적으로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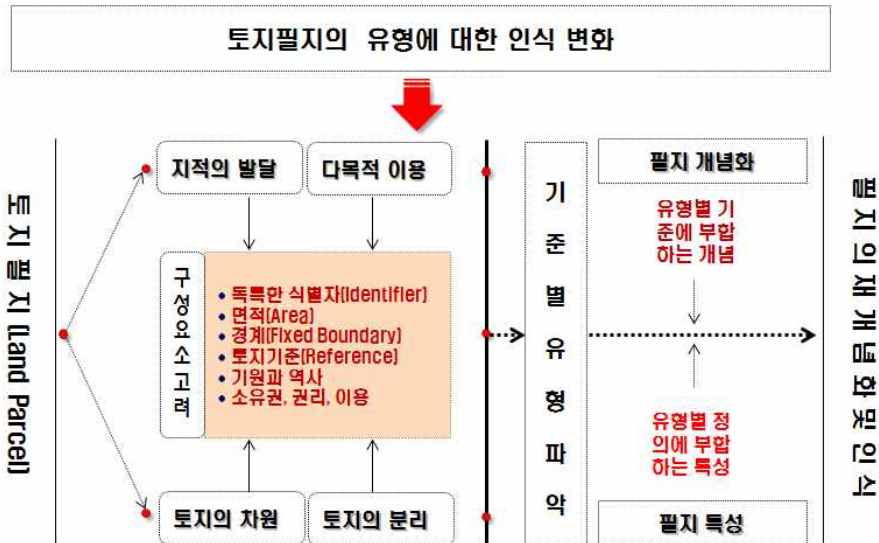
둘째, 필지의 이동 및 제한에 관한 연구이다.(최인호·김영모, 2002; 김홍택 외, 2007; Pinzon Bermudez & Quintero Rincon, 2005; Kilgore et.al, 2013) 즉 필지이동에 따른 공간특성을 분석하여 인과관계를 찾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변화에 따라 토지이용 제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필지이동의 대표적인 사례로 분할과 합병을 언급하고 이로 인한 필지의 면적, 지번, 형상, 지가, 소유자 등의 변동을 유발하고 궁극적으로는 도시공간의 변화를 야기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도시공간의 형성과정은 도시공간 형성의 기본요소인 가로와 필지가 먼저 형성되고 그 후 필지이동 중 분할과 합병을 거치면서 충전요소인 건축물이 들어서게 됨으로써 도시공간이 형성되고 변화되며 도시공간의 특성을 내재하게 된다는 것이다.

셋째, 필지의 데이터관리에 관한 연구이다.(Dawes, Cook, Helbig, 2006; PCCEU, 2007; Donnelly & Evans, 2008) 필지의 데이터관리에 관한 연구는 자료의 수집 및 저장, 자료의 포맷, 자료 관련 비용, 필지 자료를 활용한 의사결정, 필지의 구성요소들의 자료관리 및 변화 예측 등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자료 관리와 도시 및 농촌의 공간구조변화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필지 데이터의 변화를 통해 각종 부동산 및 도시정책의 근간으로 활용됨을 강조하고 미래 사회의 모습을 찾고자 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에 나타난 한계는 필지를 하나의 개념으로 동일한 선상에서 접근하고 있어 필지 유형의 각각 개념과 용도를 배제하고 있어 본 연구는 필지의 유형 각각의 목적과 쓰임을 기반으로 개념과 그 특성을 파악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적용할 수 있는 접근 틀이 요구됨에 따라 접근 틀은 우선적으로 필지의 유형을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을 적용하여 각각의 필지 유형을 파악하고 각각의 개념과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자 한다. 따라서 분석의 틀은 필지에 대하여 기준을 적용하여 그에 따른 필지 유형을 파악하고 각 유형의 쓰임에 따라 개념을 재정립하고 특성을 파악하는 과정으로 설계하고자 한다. 즉 필지를 바라볼 수 있는 기준은 지적체도의 발달, 다목적 이용, 토지의 차원, 토지의 분리(splits) 등 4개로 적용하고, 이런 기준을 적용하고 필지의 핵심구성요소를 고려하여 유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특히 궁극적으로는 필지의 유형에 따른 개념을 정립하고 획일적인 필지에 대한 인식을 기준 및 목적에 맞는 인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접근 틀을 설계하였다.



[ 그림 1 ] 토지필지의 유형 분류 접근 틀(framework)

### Ⅲ. 필지의 기준 별 유형 파악

필지의 유형 및 특성은 앞 장에서 설계한 접근 틀에 입각하여 파악하게 된다. 즉 필지의 유형을 검토할 수 있는 기준인 지적제도 발달, 다목적 이용, 토지의 차원, 토지의 분리(splits) 등을 적용하여 각 유형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각 유형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필지의 핵심요소를 파악하지는 않지만 기본 관념으로 고려하여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 1. 지적제도 발달에 따른 필지 유형

지적제도의 발달의 기준은 지적의 진화차원에서 고려하는 것으로 지적의 진화는 봉건시대의 경우 과세 부과에 토대를 두고 토지는 곧 부의 원천으로 보았으며, 이에 따라 패러다임은 토지평가와 과세에 치중하게 되었다. 산업혁명시기에는 소유권에 역점을 두고 토지를 상품으로 인식하였으며 이에 따라 패러다임은 토지시장에 모아지게 되었다. 전후(post war) 재건시기에는 토지 관리의 중요성에 역점을 두게 되어 토지를 부존자원으로 인식하고 지적에 대한 패러다임을 모색하게 되었다. 정보혁명시기에는 지적의 형태가 다목적(multipurpose)으로 전환되면서 토지를 공유부존 자원으로 인식하게 되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속가능한 발전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각되었다.(Enemark, 2001) 이러한 지적제도의 발달 기준에 따른 필지의 유형은 과세필지, 소유필지, 일반필지 등이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과세 필지(tax parcel)는 “납세의 의무를 위한 토지의 연속 지역”을 의미하고 일반적으로 납세의 의무와 소유권은 매우 유사한 개념이지만 개념상의 단절성이 발생하며, 소유권과 세금의 관계가 어떻게 다루어지는가에 관한 문제는 토지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 구조에 관한 필수적 부분이라 할 수 있다.(Moyer & Fisher, 1973) 한편, 과세 필지는 토지가 평가되고 정부 기능을 지원하기 위하여 과세가 되는 지역에서의 소유권 과세 제도에서 기인한다.(Meyer et.al, 2001: 32) 또한 과세 필지는 다양한 과세 필지 내에서 소유 필지의 과세 구역 경계에 의해 구분될 수 있으며, 역사적으로도 독립된 납세의 의무는 소유 필지 내에서 확실한 이용 지역들을 위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Hessen, 1974 : 12)

둘째, 소유 필지(ownership parcel)는 공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적으로 소유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양도할 수도 있으며(Cook, 1973), 이는 비필지 기반의 권익을 토대

로 한다. 따라서 소유 필지는 “다양한 권리를 수반하는 하나의 소유권에 관한 토지의 연속 지역”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소유 필지는 모든 토지의 완전한 일련의 권리 (complete bundle of rights) 혹은 동일한(homogeneous) 일련의 권리 내에 포괄되며, 관습법상에서의 소유 필지는 현재 혹은 미래의 무조건적 토지 상속권(fee simple)을 보유하는 토지의 연속 지역으로 이해할 수 있다.(McLaughlin, 1976)

셋째, 일반 필지(Generic Parcel)는 “토지의 공간적 특성을 포함하는 추상적 단위 지역”을 의미한다. 사용자들은 소유권, 이용 그리고 물리적 속성과 같은 다양한 특성 내에서 모든 토지 데이터를 획일적으로 기록하기 위해서 기본적(fundamental)이고 기초적(primitive)인 단위를 찾게 된다. 만약, 실세계에서 토지의 추상적 단위(abstract unit)와 같은 일반 필지를 정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이는 매우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다.(Moyer & Fisher, 1973) 간단히 말해 토지 속성의 공간적 배분(spatial distribution)에 존재하는 수많은 단절성(discontinuities)이 존재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공간적 단절은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Clawson & Charles, 1965) 즉 분리된 두 소유 필지 상에 한 가지 작물을 재배하는 농부 혹은 임대된 여러 필지 상에 하나의 건물을 건설하는 빌딩 개발업자의 사례 등은 이용의 공간적 범위를 초월하는 사례이다.

## 2. 다목적 이용에 따른 필지 유형

사회가 발달하고 그 기능이 복잡하게 분화됨에 따라 토지에 대한 세금의 징수나 토지소유자를 보호하는 법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토지에 관한 각종 정보관리가 필요하게 되었고 토지 관련 정보의 종합적 기록유지와 공급을 해주는 종합적인 토지정보시스템에 관련된다.(NRC, 1980 : 13) 또한 다목적 이용은 공간범위의 확대를 의미하고 이를 관리하는 필지도 의미한다. 따라서 다목적 이용에 따른 필지는 정보필지(Information Parcel), 지적필지(Cadastre Parcel), 해양필지(Marine Parcel) 등의 유형이 포함된다.

첫째, 정보필지(Information Parcel)는 “하나의 필지가 전산화일 형태로 가상공간에 등록된 토지정보단위”를 의미한다. 정보필지는 토지 및 지적활동과정에서 획득·생성되어 필지단위로 체계적으로 축적·가공·유통·활용되는 제반 지식, 자료 또는 메시지를 담는 그릇을 의미하고 활동의 주체 및 객체의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위하여 이용될 수 있는 내용을 말한다. 또한 정보필지는 의사결정과 계획을 지원하고 내용은 토지관련 자료와 그 자료를 관리하는 기법이며, 기반은 공간기준계와 데이터의 연계에 두고 있

다.(Raymond, 1986 : 111-134)

둘째, 지적필지(Cadastre Parcel) 권리 및 권익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토지정보를 유지관리 하기 위한 기본 구축 단위(basic building block)가 되고, 이상적인 구축 단위는 위치 및 경계로 알려져 있으며, 유지되는 지표면의 일부 및 토지 정보를 위한 일반적·자연적 참조(reference)라고 할 수 있다.(NRC, 1980 : 54-55) 따라서 지적 필지는 “법적으로 인식되는 권리와 권익 내에서 분명하게 결정된 토지의 단위”이기 때문에 법적 권익의 역사를 수반하는 토지의 연속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McLaughlin & Clapp, 1977 : 53-73) 한편, 다목적 지적의 관점에서 지적 필지는 토지를 관리하는 대상이고 특별하고 완전한 일련의 권리를 위한 토지 단위이다. 즉 지적필지는 하나의 표현으로 설명되는 또는 공·사적으로 소유하거나 개별적으로 소유하는 토지의 획지 중 하나로서 개별적으로 읊기는 것이 가능한 토지의 연속된 지역이다.(Moyer & Fisher, 1973)

셋째, 해양필지(Marine Parcel)는 3차원의 바다공간으로 “명확한 바다 경계(좌표)·면적·권리·이용 상태를 나타내는 해양공간정보의 등록단위”를 의미한다. 또는 해양필지는 일반적으로 해양의 명확한 경계 혹은 좌표의 설정(delineation), 해양의 용량(quantity)에 관한 설명, 해양 권리의 선언(declaration) 그리고 해양의 이용에 관한 성명(statement) 등에 의해 입증되는 해양의 3차원적 공간을 의미 한다.(Tamtomo, 2006) 해양필지는 지적의 기본 공간 단위로서의 필지와 유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해양 자체가 3차원이라는 환경을 띠고 있어 육지의 필지와는 뚜렷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해양관리의 근원이 되는 해양필지는 바다에 존재하지 않은 보유권(Tenure)의 개념, 근해 경계설정의 고전적 수단의 활용 불가능, 주로 토지의 경우 2차원인 반면 해양환경은 3차원 중심으로 고전적 2차원으로는 불충분, 해양의 경우 한 지역 내에 존재하는 다목적 권리가 존재, 많은 해안의 경계에 관련된 기준선의 모호성 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Coller, Leahy, willamson, 2001)

### 3. 토지의 차원에 따른 필지 유형

토지의 차원에 따른 유형분류는 입체관리와 맥을 같이 하며, 입체관리는 토지의 이용이 다양화됨에 따라 토지의 경계·지목 등 지표에 관한 물리적 현황과 3차원 토지 관리를 의미하게 된다. 즉 도시화, 산업화, 건축기술의 발달, 토지의 부증성 등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용이 복잡·다양화, 입체화되어 이용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입체적 토지이용은 토지의 가격이 높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용되

고 있으며 갈수록 그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토지의 차원에 따른 필지 유형의 파악이 중요시 되고 대체로 입체필지(Solid Parcel), 물리적 토지필지(Physical Land Parcel), 법적 필지(Legal Parcel) 등이 유형으로 검토할 수 있다.

첫째, 입체필지는 “평면필지를 기준으로 지상공간과 지하공간을 연결하는 입체공간의 단위”를 의미한다. 즉 일정공간까지를 범위로 하는 필지에 대한 권리공간을 담고 있는 공간단위지역을 의미한다.(서울특별시, 2011 : 132-133) 공간은 수평적 관리의 2차원과 입체적 관리의 3차원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수평적 관리에서 토지의 이용이 다양화·입체화됨에 따라 지표에 관련된 물리적 현황뿐만 아니라 지상과 지하에 설치된 시설물 등을 수직적·수치적으로 등록·관리하거나 시설물관리를 지원하는 입체적 관리로서 입체필지를 고려하게 된다. 입체관리는 일필지를 기준으로 하나의 필지 내에 존재하는 토지 관련 정보를 그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둘째, 물리적 토지필지(Physical Land Parcel)는 “실세계에 존재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실제 차지하고 있는 공간단위”를 의미한다. 이는 법적 필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며, 주로 지하시설물과 지상시설물로 구성된다. 지상시설물은 대상 필지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지하철선로, 지하역사, 지하상가 등의 지하 공간 시설물의 공간을 의미하고 지상시설물은 일필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 고가도로, 터널, 지상철도, 통시시설 등의 공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입체 물리적 필지의 대상은 지표, 지상, 지하에 위치한 입체시설로 지하연결통로, 터널, 지하철 역사, 지하철 선로, 지상건물연결통로, 지하상가, 도시개발사업지구 입체시설물, 송전철탑 및 송전선로 등이 된다.(서울특별시, 2011 : 42)

셋째, 법적 필지(Legal Parcel)는 “일필지 내에 위치하는 물적 객체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생성된 권리공간단위”를 의미한다. 법적 필지내의 권리객체는 입체용익물권, 입체담보물권, 입체소유권 등이 포함되고 입체권리공간은 권리, 책임, 제한과 같은 3R을 허용한다.(Karki, McDougall, Thompson, 2010) 한편 입체소유권은 소유자가 법률의 범위 내에 토지를 자유롭게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고, 입체용익물권은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을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특히 3차원 토지 관리는 지표면인 2차원 필지를 둘러싼 공간의 소유권과 지표면의 지상·지하까지 확대된 3차원 필지에 존재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 같은 물적 객체에 설정된 권리공간을 등록·관리하는 객체를 의미한다.(서울특별시, 2011 : 251, 정동훈, 김영학, 장우진, 2013 : 139)

## 4. 토지이동(분할)에 따른 필지의 유형

토지분리(이동)에 따른 필지의 유형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토지이동에 따라서 발생하는 필지의 유형을 의미한다. 특히 토지를 분리하는 분할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분할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맥락에서 토지분리에 따른 필지의 유형은 부모필지(Parent Parcel)와 자식필지(Child Parcel)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부모필지(Parent Parcel)는 하나의 필지를 작은 필지로 분할하는 경우 원래의 지번을 갖고 있는 토지단위를 의미한다. 즉 부모필지는 더 작은 필지로 세분화되는 경우 세분된 필지 중 큰 필지(원래의 지번)를 의미한다. 이러한 활동이 발생하게 되는 근거는 일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되는 경우, 소유권이전·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이용 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즉 토지이용의 고도화 및 복잡화, 도시화 및 산업화 등으로 인하여 토지의 용도가 다양해짐에 따라 그 용도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발생하게 된다.

둘째, 자식필지(Child Parcel)는 하나의 필지를 작은 필지로 세분하는 경우 새로이 생성되는 필지를 의미한다. 즉 자식필지는 더 작은 필지로 세분화되는 경우 세분된 필지 중에서 작은 필지(본래의 지번이 아닌 새로 부여된 지번)를 의미한다. 이러한 자식필지가 요구되는 것은 하나의 필지가 세분화되고 새로운 토지용도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다만 자식필지의 제한은 최소대지면적 이하의 토지규모 일 때는 세분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 IV. 필지 유형의 재 개념화 및 특성 도출

필지 유형의 재 개념화 및 특성 도출은 앞 장에서 설계한 접근 틀에 입각하여 기준별 필지의 유형을 토대로 그 개념을 재해석하고 각 유형별 필지의 특성을 도출하는 것이다. 즉 필지 유형의 재 개념화는 필지 유형 기준인 지적제도 발달, 다목적 이용, 토지의 차원, 토지의 분리(splits) 등을 적용하여 도출된 각 유형의 개념을 정립하고 각각의 유형에 대한 특성은 중요성을 감안하여 도출하는 것이다.

필지에 대하여 일반적이고 종합적인 개념으로 받아드리는 개념은 지번부여지역안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동일하고 지반이 연속되는 토지를 기준으로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은 필지의 유형의 개별적인 개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필지의 유형분류 기준에 입각하여 도출된 유형별 재 개념과 특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지적제도의 발달에 따른 필지의 유형에 대한 재 개념화 및 특성이다. 과세필지는 “과세부과를 위한 토지의 연속지역”으로 재 개념화 할 수 있고, 이는 필지의 가치에 기반을 두고 토지의 경제성과 형평성에 토대를 두고 있으며, 특징은 과세부과단위를 위한 필지로 지적발달 단계로 볼 때 과세지적에 해당되며, 소유필지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는 것이다. 소유필지는 “다양한 권리를 수반하는 소유권 토지의 연속지역”으로 재 개념화 할 수 있고, 이는 필지의 권리에 기반 한 공시성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특징은 토지등록단위를 위한 필지로 지적발달 단계로 볼 때 법 지적에 해당되며, 3R(권리·책임·제한)를 중요시 한다는 것이다. 일반필지는 “토지의 공간적 특성을 포함하는 추상적 단위지역”으로 재 개념화 할 수 있고, 이는 다양한 특성의 기본적인 기초적인 단위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특징은 토지등록단위를 위한 필지로 지적발달 단계로 다목적 지적에 해당되고 공간적인 단절성을 내포한다는 것이다.

둘째, 토지이용에 따른 필지의 유형에 대한 재 개념화 및 특성이다. 정보필지는 “하나의 필지가 전산화일 형태로 가상공간에 등록된 토지정보단위”로 재 개념화 할 수 있고, 이는 데이터관리의 단위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특징은 토지정보단위를 위한 필지로 관리대상 및 이용으로 볼 때 가상공간(정보화)에 기반을 두고 행정주체에 의사결정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지적필지는 “법적 권익의 유래를 수반하는 토지의 연속지역”으로 재 개념화 할 수 있고, 이는 권리와 권익내의 토지등록단위에 토대를 두고 있으며, 특징은 토지소유권단위를 위한 필지로 관리대상 및 이용으로 볼 때 육지지적에 해당되며 하나의 표현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해양필지는 “해양상태를 나타내는 해양공간정보의 등록단위”로 재 개념화할 수 있고 이는 해양의 자체적인 3차원 공간단위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특징은 해양활동단위를 위한 필지로 관리대상 및 이용으로 볼 때 해양지적에 해당되며 해양자체가 3차원을 보인다는 것이다.

셋째, 토지차원에 따른 필지의 유형에 대한 재 개념화 및 특성이다. 입체필지는 “평면필지 기준으로 지상·지하공간을 연결하는 입체공간단위”로 재 개념화 할 수 있고 이는 토지의 입체적 관리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특징은 입체정보단위를 위한 필지로 최근 언급되고 있는 정보지적에 해당되며 토지의 수직적·수치적 관리를 보인다는 것이다. 물리필지는 “사실세계에 기반 한 시설물의 공간단위”로 재 개념화할 수 있고

<표 2> 필지 유형별 재 개념 및 특성

기준	유형	재 개념	특성
발달	과세필지 (Tax P.)	과세부과를 위한 토지의 연속지역 (필지의 가치에 기반 한 경제성 및 형평성)	과세부과단위 과세지적 소유필지와 관련
	소유필지 (Ownership P.)	다양한 권리를 수반하는 소유권 토지의 연속지역(필지의 권리에 기반 한 공시성)	토지등록단위 법 지적 3R의 토대
	일반필지 (Generic P.)	토지의 공간적 특성을 포함하는 추상적 단위지역(다양한 특성의 기본적·기초적 단위)	토지정보단위 다목적 지적 공간적 단절성
이용	정보필지 (Information P.)	하나의 필지가 전산화일 형태로 가상공간에 등록된 토지정보단위(DB관리의 단위)	토지정보단위 가상공간(정보화) 의사결정 지원
	지적필지 (Cadastré P.)	법적 권익의 유례를 수반하는 토지의 연속지역(권리와 권익내의 토지등록단위)	토지소유권단위 육지지적 하나의 표현설명
	해양필지 (Marine P.)	해양상태를 나타내는 해양공간정보의 등록단위(해양의 3차원 공간단위)	해양활동단위 해양지적 해양자체의 3D
차원	입체필지 (Solid P.)	평면필지 기준 지상·지하공간을 연결하는 입체공간단위(토지의 입체적 관리)	입체정보단위 정보지적 수직·수치적 관리
	물리필지 (Physical P.)	사실세계에 기반 한 시설물의 공간단위(지상·지하시설물의 실체적 등록단위)	실체등록단위 시설지적 입체시설물 관리
	법적필지 (Legal P.)	일필지 내 물적 객체에 따라 생성된 권리 공간단위(입체권리의 추상적 등록단위)	권리보호단위 권리의 안전성 입체권리 공시성
분리	부모필지 (Parent P.)	토지분리에 따른 본래 지변을 갖는 등록단위(토지의 변화유래기반)	지변부여단위 토지의 변화기점 큰 필지 우선
	자식필지 (Child P.)	토지분리에 따른 새로이 생성되는 지변의 등록단위(토지이용의 다양화 및 세분화)	지변부여단위 토지의 변화시점 작은 필지 중심



이는 지상·지하시설물의 실체적 등록단위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특징은 실체등록단위를 위한 필지로 지적의 유형 중 시설지적에 해당되며 입체시설물관리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다. 법적 필지는 “일필지 내 물적 객체에 따라 생성된 권리공간단위”로 재 개념화할 수 있고, 이는 입체권리의 추상적 등록단위에 토대를 두고 있으며, 특징은 권리보호단위를 위한 필지로 권리 및 권원의 안전성을 중요시하며 입체관리공시성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넷째, 토지분리에 따른 필지의 유형 및 특성에 대한 재 개념 및 특성이다. 부모필지는 “토지분리에 따른 본래 지면을 갖는 등록단위”로 재 개념화할 수 있고, 이는 토지변화의 유래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특징은 지면부여단위를 위한 필지로 토지의 변화기점을 알 수 있고 큰 필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이다. 자식필지는 “토지분리에 따른 새로이 생성되는 지면의 등록단위”로 재 개념화 할 수 있고 이는 토지이용의 다양화 및 세분화에 기인하고 있으며, 특징은 지면부여단위를 위한 필지로 토지의 변화 시점을 알 수 있고 작은 필지를 중심으로 고려한다는 것이다.

## V. 결 론

필지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행정편의 중심의 법률에 정의된 내용을 맹목적으로 믿고 따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즉 필지유형분류 기준에 입각하여 도출된 다양한 필지의 개념과 쓰임이 상이함으로 인한 인식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여 필지의 개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출발하였다. 특히 필지의 유형별 개념 및 특성, 이러한 개념 및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기준 및 내용, 도출된 필지의 개념화 및 특성의 일반화 및 학술적 가치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필지의 토대 및 접근 틀은 필지의 일반적인 개념을 검토하였고 필지의 구성요소 및 유형기준은 일필지내에 파생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요소를 파악하고 유형기준은 지적제도의 발달, 다목적 이용, 토지의 차원, 토지의 분리 등을 도출하였다. 특히 접근 틀은 필지에 대하여 기준을 적용하여 그에 따른 필지유형을 파악하고 각 유형의 쓰임에 따라 개념을 재정립하고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둘째, 필지의 기준별 유형파악은 지적제도 발전에 따른 유형으로 과세필지, 소유필지, 일반필지 등을 도출하였고, 토지의 다목적 이용에 따라 정보필지, 지적필지, 해양필지 등을 도출하였으며, 토지의 차원에 따라 입체필지, 물리적 필지, 법적 필지 등을 도출하였다. 또한 토지분리에 따른 필지 유형은 부모필지와 자식필지로 도출하였다. 특히 지적제도 발전에 따른 유형은 단위의 용도에 초점을 두고 파악하였고 토지의 차원에 따른 유형은 입체지적을 고려하여 3차원적 관점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셋째, 필지유형의 재 개념화 및 특성의 도출은 설계한 접근 틀에 입각하여 기준별 필지의 유형을 토대로 그 개념을 재해석하였고 각 유형별 필지의 목적 및 쓰임을 토대로 특성을 도출하였다. 즉 필지 유형의 재 개념화는 필지 유형 기준인 지적제도 발달, 다목적 이용, 토지의 차원, 토지의 분리(splits) 등을 적용하여 도출된 각 유형의 개념을 정립하였고 각각의 유형에 대한 특성은 중요성을 감안하여 도출하였다. 지적제도의 발달에 따른 유형으로 과세필지는 과세부과를 위한 토지의 연속지역으로 재 개념화하였고 특징은 과세부과단위, 과세지적, 소유필지와 밀접한 관계를 보인다는 것이다. 소유필지는 다양한 권리를 수반하는 소유권 토지의 연속지역으로 재 개념화하였고 특징으로 토지등록단위, 법 지적, 3R의 토대 등을 도출하였다. 일반필지는 토지의 공간적 특성을 포함하는 추상적 단위지역으로 재 개념화하였고 특징으로 토지정보단위, 다목적 지적, 공간적 단절성 등을 언급하였다.

## 참 고 문 헌

- 강태석, 2000, *지적측량학*, 서울 : 형설출판사.
- 김영학, 2011, “지번과 건물번호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지*, 제27권 제2호, 한국지적학회.
- 김영학, 2015, *지적학*, 서울 : 화수목.
- 김홍택, 이범관, 이현준, 2007, “필지 분할제한의 유형과 기능 연구”, *한국지적학회지*, 제23권 제1호, 한국지적학회.
- 서울특별시, 2011, 입체지적 시범단지 구축사업 완료보고서.
- 유병찬, 2006, *최신 지적학*, 서울 : 건축출판사.
- 이범관, 1996, “필지의 태양과 변동 연구”, *지역사회개발연구*, 제21권 제2호, 한국지역개발학회.
- 이현준, 2008, “필지의 본질 연구”, *한국지적학회지*, 제24권 제1호, 한국지적학회.
- 정동훈·김영학·장우진, 2013, “국민밀착형 3차원 지적정보서비스 활성화 방향”, *한국위기관리논문집*, 제9권 제4호,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 최인호·김영모, 2002, “필지이동에 따른 도시공간특성 분석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제37권 제1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Clawson Marion and Stewart Charles L., 1965, *Land use information: A critical survey of U.S. statistics including possibilities for greater uniformity: Baltimore, Md.*, The Johns Hopkins Press for Resources for the Future, Inc.
- Coller P. A., Leady E. J. and Williamson Ian P., 2001, “Defining Marine Cadastre for Australia”, 2001-A Spatial Odyssey : 42<sup>nd</sup> Australian Surveyors Congress, Brisbane, 25-28 September 2001.
- Cook R. N., 1973, *Comment: Parcels, Establishments and Land Title Records*. In D.D. Moyer and K.P. Fisher (Eds.), *Ladn Parcel Identifiers for Information Systems*, Chicago : American Bar Foundation.
- Dawes Sharen S., Cook Meghan E., Helbig Natalie, 2006, “Challenge of Treating Information as a Public Resource : The Case of Parcel Data”, *Proceeding of the 39<sup>th</sup> Hawaii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ystem Science*.
- Donnelly Shanon, Evans Tom P., 2008, “Characterizing Spatial Patterns of Land Ownership at the Parcel level in south-central Indiana,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Vol.84.

- Enemark Stig, 2001, "Land Administration Infrastructur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patial Inform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Nairobi, Kenya, 2-5 October 2001.
- Henssen J. L .G., 1974, "Cadastrals and Land Registration on the European Continent in Connection with Topographical and Cadastral Problems of Urbanization", *OICRF International Conference on Land Data Records*, The Hague, Holland.
- Henssen, J. L. G., 1995, "Basic Principles of the Main Cadastral Systems in the World", In proceedings of the one-day seminar on Modern Cadastrals and Cadastral Innovations held during *the annual meeting of Commission 7 of the FIG*, Delft, The Netherlands, 16 May 1995.
- Inan Halil Ibrahim, Aydinoglu Arif Cagdas, Yomralioglu Tahsin, 2010, "Spatial Classification of Land Parcels in Land Administration Systems", *International Conference SDI 2010*, Skopje, 15-17 September 2010.
-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Assessing Officers, 2003, Standard on Digital Cadastral Maps and Parcel Identifiers.
- Karki Sudarshan, McDougall Kevin, Thompson Rod, 2010, "An Overview of 3D Cadastre from a Physical Land Parcel and Legal Property Object Perspective", *FIG Congress 2010*, Sydney, Australia, 11-16 April 2010.
- Kilgore M. A., et. al. 2013, "Challenges in Characterizing a Parcelized Forest Landscape : Why metric, scale, threshold, and Definitions Matter",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Vol.110.
- McLaughlin J .D., Clapp James L., 1977, "Toward the Development of Multipurpose Cadastral Systems", *Journal of the Surveying and Mapping Division*, Vol.103. No.1.
- McLaughlin J. D., 1975, "The Nature, Design and Development of Multipurpose Cadastre, Ph.D. Thesis, 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
- McLaughlin J. D., 1976, "Notes and Materials on Cadastral Surveying", Vol.1, Fredericton, New Brunswick: University of New Brunswick.
- Meyer Nancy Von and Oppmann Scott and Grise Steve and Hewitt Wayne,

- 2001, *ArcGIS Parcel Data Model Version 1*, ESRI Press.
- Minnesota Governor's Council on Geographic Information, 1997, Identifying Land Parcels.
- Moyer, D and Fisher, K, *Land Parcel Identifiers for Information Systems* , American Bar Foundation, Chicago, 1973.
- NRC, 1980, *Need for Multipurpose Cadastre*, Washington D. C. : National Academy Press.
- NRC, 2007, National Land Parcel Data: A Vision for the Future.
- PCCEU, 2007, THE Cadastral Parcel in NSDI's and in INSPIRE.
- Raymond G., 1986, "Land Information System in Canada", *The Canadian Surveyor*, Vol.40. No.2.
- Tamtomo Johannes P., "A Method to Assess the Financial Value of the Sea Parcel and the Economy of the Coastal and Marine Area within a Marine Cadastre Framework", *XXII FIG Congress*, Munich, Germany, 8-13 October, 2006.
- UNECE, 2004, ECE Guidelines on Real Property Units and Identifiers.
- UNECE, 2004, Guidelines on Real Property Units and Identifiers.

# A Study on the Type of Land Parcel and Its Characteristic

Young Hag Kim  
Department of Land Management  
Cheongju University

A parcel is the continuous area in land where the distinctive and similar legal relations are distinguished. In particular, it is not only a unit of land registration but also a range where the effect of real rights is valid, which is of paramount importance. In spite of the importance of the parcel, the research about the type of the parcel and its characteristics has been carried out neglectfully. For this reason, this study reviews the type of the parcel based on the logical and rational criteria, and draws its characteristics. In order to achieve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the range is limited to the type of the parcel and its characteristics. In addition, the research was conducted through collecting the secondary data by literature review, which contributes to deeply understanding the theoretical foundation, the type and its characteristics. A descriptive and systematic approach method is applied concurrently. Especially, given that the previous research tended to focus on the concept and current state of the parcel, this study intends to review characteristics which correspond to changes of information environment, concentrating on the classification of the type of the parcel.

Key Words: Parcel, Registration Unit, Type of Land Parcel, Structural Elements of Parcel

논문투고일 : 2016. 09. 12

심사개시일 :

게재확정일 :

##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운영위원

운영위원장	윤기택 교수 [청주대 사회과학대학장]
운영위원	박승두 교수 [청주대 법학전공]
	심재승 교수 [청주대 행정학전공]
	김윤기 교수 [청주대 지적학전공]
	양병기 교수 [청주대 정치안보국제학전공]
	조창희 교수 [청주대 사회학전공]
	나동석 교수 [청주대 사회복지학전공]
	최영준 교수 [청주대 신문방송학전공]
	이재록 교수 [청주대 광고홍보학전공]
감사	홍성언 교수 [청주대 지적학전공]
편집위원장	박승두 교수 [청주대 법학전공]
편집위원	심재승 교수 [청주대 행정학전공]
	김윤기 교수 [청주대 지적학전공]
	양병기 교수 [청주대 정치안보국제학전공]
	조창희 교수 [청주대 사회학전공]
	나동석 교수 [청주대 사회복지학전공]
	최영준 교수 [청주대 신문방송학전공]
	이재록 교수 [청주대 광고홍보학전공]
	조종혁 교수 [한국외국어대 언론학전공]
	민수홍 교수 [경기대 경찰행정학전공]
	차동필 교수 [신라대 광고홍보학전공]
편집간사	이수아 조교 [사회과학대학 조교]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한국사회과학연구」 학술지 운영 규정집**

## 1. 논문제출 규정

「한국사회과학연구」(Korean Journal of Social Science)는 사회과학 이론(Theories)과 실무(Practices)에 관련된 학문영역 및 학제간 연구(Interdisciplinary Studies) 개발에 공헌하고자 출간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학술지는 사회과학과 관련된 이론적 연구(Theoretical Study), 경험적 실증 연구(Empirical Study), 기술적 연구(Descriptive Study) 및 사례 연구(Case Study)를 수록한다. 투고된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서 심사중이거나 발간된 논문이어서는 안 되며, 개별 논문으로서의 독창성을 지녀야 한다.

### 1. 응모논문 접수

- 1) 수시로 응모 가능하다.
- 2) 논문제출 규정에 맞게 제출된 원고만 심사의 대상이 되며, 논문제출 규정에 맞지 않으면 저자에게 반환된다.
- 3) 본지에 게재를 원하는 투고자는 사회과학연구소 e-mail로 보내거나 디스켓을 사회과학연구소로 우송한다.

우28503 충북 청주시 청원구 대성로 298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한국사회과학연구] 편집위원회 전화: 043) 229-8231  
E-mail : iss@cju.ac.kr

- 4) 우송된 내용의 확인을 위해 접수 후 접수확인 메일을 발송한다.

### 2. 논문 작성

논문은 APA(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의 최신판 출판 지침서에 준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하의 논문 작성 규정은 국어 용어 논문 작성 시 준수해야 할 기준 및 APA 양식 중 중요하고 많이 사용하는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 1) 일반적인 고려사항

- (1) 파일형태는 반드시 아래아한글로 작성한다.
- (2) 분량은 A4용지 20매 내외로 한다(참고문헌 포함)



### (3) 파일 포맷

- 위아래 여백은 A4용지 기본설정대로 한다.
- 줄 간격은 180%로 1페이지 분량이 33-38행 내외로 한다.
- 제목/하위제목은 1. 1). (1). 가. 의 형식으로 표기한다.
- 페이지번호는 반드시 붙일 것
- 모든 표 및 그림은 일련번호와 제목 또는 설명을 선명하게 붙이고 본문 중에 원하는 위치에 삽입한다.
- 각주는 최소화하되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오른쪽 상단에 일련번호를 붙여 표시하고 그 내용은 각 면 아래에 작성한다.
- 참고문헌은 저자의 성에 따라 가나다순 혹은 알파벳순으로 정리한다.

(4) 논문 첫 페이지(Cover Page)에는 제목, 논문의 성격(이론연구, 실증연구, 기술적 연구, 사례연구), 저자명 및 저자신상(소속, 직위, 주소, 전화번호, e-mail)을 기재하고 특히 공동연구의 경우 제1저자를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편집 시 첫 번째 저자를 제1저자로 한다).

(5) 모든 연구논문은 한글요약, 영문요약 및 한글 및 영문 키워드를 별도 페이지에 작성, 제출한다.

## 2) 인용

- (1) 본문 내에서의 인용은 괄호를 이용하여야 하며, 저자의 이름과 출판 연도가 기재되어야 한다(예. Smith, 2003; 홍길동, 2000). 만일 본문에서 저자의 이름을 밝혔다면 이름 옆에 연도만 표기한다 (예. 홍길동(2001)은...).
- (2) 특정 페이지나 단락, 공식이 인용되면 페이지 번호를 붙인다(예. 홍길동, 1997, p. 20).
- (3) 저자명이 두 명에서 여섯 명 이하인 경우, 본문에 인용문이 처음 나타났을 때 모든 저자의 이름을 기입하고, 그 다음 인용부터는 첫 번째 저자의 이름 다음에 "등" 또는 "외" (영어로는 et al.)를 써서 나타낸다. 6명 이상의 저자가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의 내용을 인용할 경우에는 모든 저자의 이름을 인용하지 않아도 된다.
- (4) 동일 저자에 의해 작성된 두편 이상의 저작물들은 출판연도순으로 배열한다. (예. 홍길동, 1996, 1999). 만일 동일 저자의 2개 이상의 작업이 동일한 출간 연도 일 경우 (Smith, 1981a, 1981b)로 표기한다.

## 3) 참고문헌

- (1) 참고 문헌에는 저작물의 준비나 연구물에 사용되었던 자료들만을 포함시켜야 하며, 따라서 참고문헌에 기입된 저작물은 본문의 어느 한 부분에 인용되어 있는 것이라야 한다.
- (2) 내국인 먼저 첫 번째 저자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배열하고, 영문으로 표기된 저

자들은 알파벳순으로 정렬한다. 괄호 안에 출간 연도를 기재한다.

- (3) 정기간행물의 경우 저자명, 출간 연도, 논문 제목, 간행물 제목, 권호, 페이지 번호 등이 들어가야 한다. 예를 들어,

윤각, 김회훈, 윤정아. (2002). 잡지광고에 투영된 여성의 역할과 이미지에 관한 연구. **한국 사회과학 연구**, 10(2), 207-224.

Schegloff, A. (1987). Analyzing single episodes of couple interaction. *Journal of Human Communication*, 35(April), 73-82.

- (4) 단행본의 경우

강진령(1997). **APA 논문작성법**. 서울: 양서원

Knapp, R. M., and Bangelisti, E. A. (1996). *Interpersonal Communication and human relationship(3rd ed.)*. London: Allyn and Bacon.

- (5) 편집된 단행본의 경우

한규석 (1997). 사회심리학에서의 문화비교연구. 한국 심리학회(편), **심리학에서의 비교문화 연구**. 서울: 성원사

Gibbs, J. T., & Huang, L. N. (Eds.). (1991). *Children of color: Psychological interventions with minority youth*. San Francisco: Jossey-Bass.

### 3. 부칙

본 규정은 2005년 2월 28일 개정하여 3월1일부터 시행한다.

## II. 논문심사규정

### 1. 심사방법

- (1) 논문의 심사는 편집위원회가 위촉하는 3인의 심사위원에 의해 이루어진다.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성격(실증 연구, 기술적 연구, 사례 연구)에 따라, 편집위원과 심사위원단 중 해당 분야의 전문연구자로 선정한다. 단, 적절한 심사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심사위원단에 속하지 않은 회원들 중에서 임시 심사자를 선정할 수 있다.
- (2) 편집위원으로부터 심사를 요청 받은 심사위원은 심사규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심사마감일까지 이메일로 편집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3) 투고된 논문은 3인의 심사위원에 의해 익명 심사를 받는다. 즉, 심사위원에게는 논문 저자의 이름을 익명으로, 논문저자에게는 심사위원의 이름을 익명으로 한다.
- (4) 심사 결과는 「무수정 게재」, 「부분수정 후 게재」, 「대폭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 (5) 심사위원 3인의 심사결과에 대한 최종판정은 '다수결 원칙'에 따라 (6)항~(9)항과 같이 처리한다.
- (6) 심사 결과, 심사위원 2명 이상의 「무수정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선입고' 순서에 따라 게재하도록 한다. 다만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 3인이 지적한 내용을 연구자에게 수정·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7) 심사 결과, 심사위원 2명 이상의 「부분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장은 투고자의 수정을 거친 후, 해당 심사위원의 확인을 받고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8) 심사 결과, 심사위원 2명 이상의 「대폭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장은 투고자에게 대폭수정을 하도록 요청하고, 차기 편집위원회에서 재심사 위원을 선임한다. 다만, 연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1차 심사를 담당했던 심사위원들에게 재심을 의뢰할 수 있다.
- (9) 심사 결과, 심사위원 2명 이상의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장은 해당 투고자에게 게재불가로 판정을 통보한다.
- (10) 원고가 표절, 기타의 사유로 게재가 불가하다고 판정될 때에는 심사결과에 구애됨 없이 편집위원회가 심의하여 결정한다.
- (11)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들의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이를 투고자에게 신속하게 알린다.

### 2. 심사 기준

각 논문의 분야별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이론 연구(Theoretical Study)

- ① 연구주제의 중요성(이론적, 학문적 기여도)
- ② 이론적 주장의 논리성
- ③ 기존 이론들과의 연계성 및 차별성(논제의 독창성)
- ④ 연구 결과의 해석 및 논의 전개적 적절성
- ⑤ 학문적 공헌도 및 시사점
- ⑥ 내용/문장의 명료성

(2) 실증 연구(Empirical Study)

- ① 연구주제의 중요성(이론적, 실무적 및 교육적 기여도)
- ② 가설 및 연구문제 도출의 논리성
- ③ 연구방법의 타당성
- ④ 연구 결과의 해석 및 논의 전개적 적절성
- ⑤ 학문적 공헌도 및 시사점
- ⑥ 내용/문장의 명료성

(3) 기술적 연구(Descriptive Study)

- ① 연구주제의 중요성(이론적, 실무적 및 교육적 기여도)
- ② 내용 전개적 논리성
- ③ 내용 정리, 분류의 체계성 및 이론의 타당성
- ④ 연구방법의 타당성
- ⑤ 학문적 공헌도 및 시사점
- ⑥ 내용/문장의 명료성

(4) 사례 연구(Case Study)

- ① 사례분석 내용의 중요성(이론적, 실무적 및 교육적 기여도)
- ② 내용 전개적 논리성
- ③ 내용의 참신성
- ④ 학문적 공헌도 및 시사점
- ⑤ 내용/문장의 명료성

### 3. 심사절차

순서	항 목	내 용
1	논문접수	사회과학연구소 또는 편집위원회 이메일로 접수하되 수신자는 편집위원장으로 한다
2	접수통지	저자에게 접수확인 사항을 e-mail로 통지한다.
3	편집위원회 소집	분기별 논문마감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한다.
4	편집위원회 개최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 명단 중에서 가장 적합한 3인의 심사위원을 선임한다. ② 임시 심사자의 경우는 편집위원회가 본인의 승낙을 받은 후, 심사를 의뢰한다.
5	논문심사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편집위원장(추후공지)에게 심사마감일까지 발송한다.
6	게재여부 결정	편집위원장은 3인의 심사결과를 합산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7	결과통보 및 수정요구	① 편집위원장은 심사결과에 대해 저자에게 통보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심사결과가 “부분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의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접수하여 다시 해당 심사위원에게 수정확인을 의뢰한 후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③ 대폭수정후 재심사 논문은 차기 정기 편집위원회에서 다시 심사위원을 선임하여 심사한다(이때, 연구자가 요청할 경우 1차 논문심사자들에게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 4. 편집 방침

- (1) 논문의 게재 순서는 게재확정 순서에 따르나, 학술지의 구성을 위해 편집위원회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2) 논문투고자는 소정의 심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3) 논문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집필자가 진다.
- (4) 게재된 논문의 판권은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가 소유한다.
- (5) 투고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는다.
- (6)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편집위원회에 보고하거나,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5. 부 칙

본 규정은 2005년 2월 28일 개정하여 3월1일부터 시행한다.

### III. 「한국사회과학연구」 학술지 편집위원회 규정

#### 1. 목적

이 규정은 「한국사회과학연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의 활동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위원회

「한국사회과학연구」의 편집, 발행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편집위원회를 구성한다.

##### 1) 자격

위원회 위원의 선정은 본 연구소의 연구위원 및 국내외 사회과학 연구자 중에서 연구업적이 탁월하고, 특히 전국규모의 학회지 및 국제 학술지에 논문을 다수 발표하고 대내·외적 학술활동이 많은 자로 한다.

##### 2) 조직

위원회는 12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1인과 편집간사 1인을 포함한다.

##### 3) 편집위원의 위촉 및 임기

###### (1) 위원회의 위촉

편집위원은 각 분야별 학문적 연구업적과 전공영역을 고려해 선임함을 원칙으로 하며, 편집위원과 편집위원장은 사회과학연구소장이 선임한다.

###### (2) 위원의 임기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또한 논문심사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정기적인 위원 교체 시 전체위원 정족수의 50%까지만 교체할 수 있다.

##### 4) 임무

위원회는 우수 연구논문 발굴 및 「한국 사회과학 연구」에 게재될 논문의 심사, 외부심사위원 선정, 그리고 편집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한다.

##### 5) 회의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재적위원 중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불참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다른 위원에

게 본인의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 3. 논문심사

- 1) 논문의 심사는 편집위원회가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 중에서 위촉한 해당 분야의 전문연구자가 담당한다. 단, 편집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 2) 편집위원회는 각 분야별 학문적 전문성과 경력을 고려하여 총 20인 이내의 심사위원을선임한다.
- 3) 심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4) 논문심사를 위촉받은 위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의견서를 작성,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5) 논문의 심사결과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외비로 한다.

### 4. 기 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편집위원회에 보고하거나,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5. 부 칙

- 1) 본 규정은 2005년 2월 28일 개정하여 3월1일부터 시행한다.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한국사회과학연구』 학술지 논문 투고 안내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의 공식 학술지인 『한국사회과학연구』는 2011년까지 연간 2회(6월, 12월)발간하였으나 2012년부터 연간 3회를 발간하고 있으며, 2015학년도는 7월, 11월, 1월 발간합니다. 그동안 사회과학 연구주제의 급증과 학계의 연구 열의가 고조됨에 따라 연구기회를 더 보장하기 위해, 정해진 기간에 투고논문을 접수하는 형식에서 탈피하여 연간 상시논문을 접수 받고 각 분기별 논문 마감 일자에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선입고 선출판” 방침에 따라 심사에 통과된 논문이 많을 경우, 차기 호에 게재하여 우수한 논문이 탈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1. 논문주제 : 자유 (단, 사회과학 현상과 관련된 논문)
2. 원고분량 : A4 사이즈 (글자크기 10P, 행간180% 기준)로 20페이지 내외, 원고분량 준수)
3. 신청내용 : 원고는 본 학술지 “논문제출 규정”에 맞추어 **호**글로 작성하여 편집위원회나 연구소 간사 교수님께 그룹웨어로 발송
4. 원고 접수처  
우 28503 충북 청주시 청원구 대성로 298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한국사회과학연구』 편집위원회 ☎ (043)229-7911, FAX : 229-8233
5. 제출된 논문은 반드시 본 연구소가 규정한 논문의 제출 규정에 일치하여야 함.

## □ 『한국사회과학연구』 발간 목적

『한국사회과학연구』 (Korean Journal of Social Science) 의 발간 목적은 사회과학 이론(Theories)과 실무(Practices)에 관련된 학문영역 및 학제간 연구(Interdisciplinary Studies)에 공헌하는 것입니다. 본 학술지는 사회과학과 관련된 이론적 연구(Theoretical Study), 경험적 실증 연구(Empirical Study), 기술적 연구(Descriptive Study) 및 사례연구(Case Study)를 수록하며, 투고된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서 심사 중 이거나 발간된 논문이어서는 안되며, 개별 논문으로서의 독창성을 지녀야 합니다. 사회과학의 하위분야로서 법학, 행정학, 도시계획학, 정치외교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광고홍보학, 사회복지학, 지적학 등과 같은 영역의 세부 주제 및 학제 간 연구를 장려합니다.



---

2015년 7월 30일 인쇄

2015년 7월 31일 발행

발행인 : 윤 기 택

발행처 :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8503) 충북 청주시 청원구 대성로 298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TEL. 043-229-7911, FAX. 043-229-8233

인쇄처 : 미 래 사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213번길 1

TEL. 043-221-5256, FAX. 043-221-5258

---